

연구보고 95-6

北韓法律用語의 分析(I)

- 憲法編 -

1995.12

研究者 : 朴 相 哲(首席研究員)
金 昌 奎(先任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發 刊 辭

저희 연구원에서는 통일법제연구 및 북한법제분석을 위하여 개원 이래 지금까지 『남북통일을 위한 대처방안과 법적문제』(1992), 『북한법제관련문헌목록집』(1993) 등과 『독일통일에 따른 공법의 통합에 관한 연구』(1994),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과 전망』(1994) 등의 통일법제부문 그리고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1994), 『북한의 헌법개정과 입법동향』(1994),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1995),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1995) 등 북한법제분석부문 등을 연구, 발간하였으며, 지난 12월 14일에는 『남북통일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헌법·민사법·형사법·경제법·사법제도 등 5개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의 남북한 분단상황을 단순한 '역사의 상흔'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오히려 통일과정의 충분한 준비기간으로 상정하여 이를 법제적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려는 노력입니다. 통일법제연구와 북한법제의 분석은 북한사회의 '살아있는 법'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실상 파악과 남북한 통일방안 마련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올해 통일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북한법률용어의 분석』을 채택하여 제1차년도(1995년)에는 헌법편, 제2차년도(1996년)에는 민·형사법편, 그리고 제3차년도(1997년)에는 기타 법령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한법제의 법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용어는 북한사회의 언어습관과 습속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적 현실대 및 지향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법률용어를 단순히 비교·고찰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의 체계화까지 시도한다면 이는 곧 통일법제준비와 직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법률용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북한법연구의 실제화에 이바

지하게 되고 나아가 통일법제 마련에 있어서 법률용어의 갈등으로 인한 법률의 통합지연 내지 실패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이 연구사업은 통일헌법안 및 각 분야별 통일법안 마련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북한헌법용어의 개념규명에 있어서 단순한 사전적 정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법의 체계 내지 구조에서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헌법용례를 비교·설명하는데 유의하였으며, 북한헌법용어의 강한 정치성과 이질적인 규범적 의미를 감안하여 북한헌법용어를 분단지향성·체제유지성·체제고유성·언어이질성 등을 반영하는 용어군으로 분류하여 그 실질적 의미를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북한법을 연구하는 분이나 통일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귀중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라마지 않으며, 이 방대한 작업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은 특수법제연구실의 박상철 수석연구원과 김창규 선임연구원에게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 12월 30일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白南辰

目 次

第1章 序 論	11
I. 北韓法律用語 分析의 必要性과 方向	11
II. 北韓의 言語政策과 法律用語의 特徵	13
III. 北韓法을 보는 方法	18
第2章 北韓法制의 體系 및 特徵과 展開	25
I. 北韓法制의 體系分類	25
1. 北韓法制體系의 分類方法	25
2. 北韓法制分類의 限界	28
II. 蘇軍政과 北韓의 法的 土臺形成	30
III. 1948年の 北韓憲法과 下位法令現況	36
1. 1948年の 北韓憲法의 制定 및 改正과 主要內容	36
2. 憲政關係分野	40
3. 行政關係分野	42
4. 民事 및 刑事關係分野	43
5. 經濟 및 社會關係分野	45
IV. 1972年の 北韓憲法과 下位法令現況	47
1. 1972年の 北韓憲法의 主要內容과 特徵	47
2. 憲政關係分野	51

3. 行政關係分野	53
4. 民事 및 刑事關係分野	54
5. 經濟 및 社會關係分野	55
V. 1992年の 北韓憲法과 下位法令現況	56
1. 1992年の 北韓憲法の 主要內容과 特徵	56
2. 憲政關係分野	63
3. 行政關係分野	63
4. 民事 및 刑事關係分野	64
5. 經濟 및 社會關係分野	64
第3章 北韓의 憲法用語의 概念糾明	69
I. 北韓憲法用語의 特徵과 概念糾明의 原則	69
II. 根本原則編	72
1. 概要	72
2. 分斷指向性을 反映하는 用語	73
3. 體制維持性을 反映하는 用語	84
4. 體制固有性을 反映하는 用語	125
5. 言語異質性을 反映하는 用語	199
III. 公民權編	215
1. 概要	215
2. 分斷指向性을 反映하는 用語	215
3. 體制維持性을 反映하는 用語	217
4. 體制固有性을 反映하는 用語	221
5. 言語異質性을 反映하는 用語	262

IV. 國家機構編	264
1 國家機構關聯 憲法用語	264
2. 其他	333
第4章 結論：南北韓憲法用語의 體系化 檢討	337
I. 北韓憲法研究의 統一指向性	337
II. 北韓憲法에서의 立憲性	339
1. 北韓憲法의 根本原則과 立憲性	340
2. 北韓憲法의 公民權과 立憲性	343
3. 北韓憲法의 國家機構와 立憲性	344
III. 統一憲法典의 展望	346
부록 I：大韓民國憲法과 北韓의 憲法	349
○ 大韓民國憲法	351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1948)	375
○ 1948年 北韓憲法의 第1·2·3·4次 改正部門	391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1962) ...	393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1972)	407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1992)	427
부록 II：北韓憲法用語 索引	451

第1章

序

論

第1章 序 論

I. 北韓法律用語 分析의 必要性和 方向

현 단계에서 남북한이 갑작스러운 통일을 달성한다면 이것은 과거의 집념이나 기존 이데올로기의 승리일 뿐, 결코 통일을 미래지향적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 경우 어느 누구도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 등의 모든 측면에서 원하지 않는 '혼란스런 통일한국상'이 초래되어 통일을 지향하여온 그 동안의 충분한 분단과정은 아무런 의미없는 세월로 간주되어 단순한 역사의 상흔(傷痕)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분단상황을 단순히 통일 이전의 단계로 간주하고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만 사로잡혀서는 아니된다.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더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 지금의 한국적 상황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법제를 분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북한 현행법의 파악을 통하여 북한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가 향후 통일시기를 전후한 남북한간의 법문화 및 법체제의 갈등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법제적 차원의 통일준비작업을 하는 것에 해당된다. 북한법제의 분석은 북한사회의 '살아있는 법'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실상 내지 실체를 접근하기에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한 나라의 법제에는 약간씩 상이한 양상을 띠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의 모든 현실과 가치관이 대체적으로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법제의 법문장(法文章)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용어는 북한사회의 언어습관과 습속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적 현실태 및 지향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법제연구와 통합 내지 통일지향성의 목적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법률용어의 경우 단순한 정치적·학술적·생활상의 용어나 단어와는 달리 법규범성을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논리성 및 정합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어서 단순한 남북한법률용어의 비교·분석만으로도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요소와 통합적인 요소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법률용어를 단순히 비교·고찰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의 체계화까지 시도하게 된다면 이는 곧 통일법제준비와 직결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법제의 연혁과 법원(法源), 법률용어의 법사회학적 의미, 입법과정 및 입법형식 그리고 양법체계 등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남북한법률용어를 체계화하는 작업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기존의 연구성과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북한의 일상용어 및 전문용어의 특수성을 소개한 기초자료집으로 『북한용어대백과』(국민방첩연구소편, 1976), 『북한용어해설』(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처, 1982), 『북한용어해의』(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82), 『북한특이용어해설집』(국군보안사령부, 1986), 『북한의 상용어 및 전문용어해설』(치안본부, 1990), 『북한용어 250선집』(내외통신사, 1992) 등이 있을 뿐이다. 북한법률용어에 대한 표기의 특성과 남북한 차이점을 비교한 최근의 연구실적으로는 법제처 신각철 연구관의 『북한법률용어 표기의 특성과 남북한 차이점 비교』(법제처, 1994)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실적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남북한법률용어의 분석과 체계화의 시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남북한법률용어의 체계화를 완성할 수는 없다. 순수한 의미에서 남북한법률용어의 체계화는 곧 통일헌법전 내지 각 분야별 통일법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남북한법률용어의 체계화검토는 체계화의 전단계로서, 북한법률용어의 개념규명에 있어서 그 용어의 법적 성격과 효력 등을 북한법체계내에서 정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법체계나 법률용어와의 이동(異同)을 규명하는 작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작업이 북한헌법을 비롯한 각 분야별 법제마다 망라적으로 완성될 경우 이 작업을 통하여 남북한법률용어의 체계화작업은 매우 용이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과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전에 통일헌법안 및 통일법안을 마련하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법률용어의 분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¹⁾

1) 현재 본원에서는 통일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북한법률용어의 분석』을 채

II. 北韓의 言語政策과 法律用語의 特徵

북한언어정책의 목적은 언어를 사고(思考)의 도구로 인식하는 언어도구관²⁾의 관점에서 전체주의·집단주의·주체사상·개인우상화 및 권력에의 복종 등을 강화하는 언어 및 문장을 규범화함으로써 사회통제적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단정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북한의 언어정책은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노골화되었는데, 이는 '언어'에 대한 북한의 사전적(辭典的) 정의에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출 처	정 의
현대조선말사전(1968)	언어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상을 나타내며 서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민족어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복무한다."
조선문화어사전(1973)	언어란 "사상을 나타내며 사람들이 교제하는데 쓰이는 수단.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복무한다."
현대조선말사전(1981)	언어란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써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복무한다."

북한언어정책의 도구성과 목적지향성은 1964년과 1966년에 있었던 김일성 교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 언어학자들과 하신

택하여 제1차 연도(1995년)에는 헌법편, 제2차 연도(1996년)에는 민·형사법편, 그리고 제3차 연도(1997년)에는 기타 법령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인간의 사고와 언어의 기능관계에서 언어관을 살필 경우, 크게 언어도구관·언어사상일체관(언어를 인위적이 아닌 자연발생적인 하나의 활동으로 봄)·언어사상형성관(언어를 사상의 상위개념으로 봄) 등으로 구분되는데, 언어도구관과 언어사상형성관은 북한언어정책의 인식근거가 되고 있다(장경모, "남북한 언어변동에 관한 연구", (통일원, 『북한의 경제·사회·문화분야』, 1993), 213면).

담화(1964.1.3)」,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펴 나갈데 대하여 -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1966.5.14)」 등을 통하여 북한언어의 단선적인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서울」·「개성」 중심의 '표준어'를 지양하고 「평양」중심의 '문화어'를 독립된 규범적 언어로 제정한 데 있었다.

이는 남북한의 공통된 언어와 민족어를 더욱 이질화시켰고, 언어도구관에 입각한 북한의 언어정책과 상호작용하면서 철자법·띄어쓰기·표준발음·한글자모의 이름과 순서 등에 있어서도 남북한간의 언어규범³⁾의 분화를 촉진시켰으며, 더 나아가 어휘의미의 분화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어휘의미의 분화현상은 향후 남북한 주민간의 어의전달 내지 의사소통마저 부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을 예고하게 되는데 1981년판 「현대조선말사전」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수 양 : 왜곡된 낱은 것을 반대하고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사상 투쟁.
(비 교 : 몸과 마음을 닦아 인격을 높임)
- 예 수 교 : 기원 1세기에 중근동 지역에서 발생한 예수를 믿는 종교. 낱은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우고 합리화하여 허황한 <천당>을 미끼로 하여 지배계급에게 순종할 것을 인민들에게 설교함.
(비 교 :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하나님으로 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그리스도의 속죄와 신앙과 사랑의 모범에 추종하여 영혼의 구원을 따름)
- 세 포 : 당원들을 교양하고 당원들의 사상을 단련하여 그들의 일생생활을 지도하는 기본조직.
(비 교 : 생물체의 기본적 구성단위. 세포질, 원형질막, 세포

3) 북한의 언어규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영순, “남북한의 언어문화와 그 극복방안에 대하여”(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주최 『김일성 사후의 북한』, 1994)을 참조.

핵으로 되어있음)

- 지 주 : 많은 땅을 빼앗아 가지고 땅을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어 지대의 형태로 농민들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기생적으로 살아가는 자.
(비 교 : 토지의 소유자)

- 상징주의 : 19세기말~20세기초에 프랑스, 독일 그 밖의 서구화된 자본주의 나라들의 문화예술분야에 퍼진 퇴폐적인 반동적 부르조아 문화예술사조의 하나. 현실세계는 가상적인 외형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인 세계는 인간의 외성으로서는 인식할 수 없는 그 어떤 신비한 저승이며 이 알 수 없는 저승세계에 침투하여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문화예술의 사명이라고 설교한다. 오늘 여러가지 반동적 부르조아 퇴폐주의문예사조와 그 류파들의 뿌리로 되고 있다.
(비 교 : 19세기말 이래 현실주의, 자연주의의 반동으로서 불란서, 백야의 등지에 일어난 문예상의 태도, 경향, 외적 경험과는 별도로 내면적이고 신비적인 깊은 세계를 상징으로서 암시적으로 표현하게 함.)

이와 같은 남북한간의 어휘의미의 분화는 남북한법률용어에 적극 반영되는데, 특히 북한에서 법의 '하부구조의 물질적 토대가 반영된 상부규정성'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법률용어나 법령문은 범규범을 함축하거나 문장화한 것이므로 문학작품이나 학술서 등에 비추어 그 의미나 문장구조에 있어서 논리성·추상성·간결성·명확성·유형성 등 많은 특색을 갖는 것이⁴⁾ 일반적이지만, 북한 법률용어의 경우 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유지 및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성이 강하다. '영광스러운 혁명투쟁',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붉은기쟁취운동', '위대한 주체사상', '혁명의 꽃', '숨은 영웅들', '조국통일의 위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4) 한국법제연구원, 『법률용어에 관한 연구』(1995), 28면.

둘째, 복합어의 빈번한 사용을 통한 집단주의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혁명독재’, ‘혁명작품’, ‘혁명예술’, ‘혁명문학’ 등과 같은 하나의 말뿌리로 이루어진 표현방식이 그 예이다.

셋째, 적개심을 유발시키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대분자’, ‘계급적 원썩’, ‘미제’, ‘살인마’ 등의 표현이 있다.

넷째, 개인우상화의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이다.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최고사령관 동지’, ‘김정숙녀사의 숭고한 충정심’ 등을 법률용어로서 꺼림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위와 같은 분단지향적이고 체제유지적인 법률용어외에 1960년 후반이후 북한의 단선적인 언어정책의 전개는 일반적인 수사방식이나 표현에 있어서도 고유성과 특수성이 강화되어 남북한법률용어의 이질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즉, ‘알곡증산(식량증산)’, ‘빌리기계약(임대차계약)’, ‘새끼회사(자회사)’, ‘놓고있는 돈(유휴자금)’, ‘부림집승(가축)’, ‘산원(산부인과)’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북한의 인위적인 언어도구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북한의 언어사용도 세계적인 공통어사용의 조류에 조금씩 편입되면서 부분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92년에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의 ‘언어’에 대한 개념규정이 1960년대 초반의 언어개념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반증이다.

출 처	정 의
조선말대사전(1962)	언어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상을 표현하며 호상 이해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말.”
조선말대사전(1992)	언어란 “민족문제와 관련되고 국가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이며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

대표적인 사례로서 '얼음보송이'가 '아이스크림'으로 바뀌고, '불산'이 '화산'으로, '해논 옷'이 '기성복'으로, '떼섬'이 '군도'로, '돌이판'이 '로타리' 등으로 환원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양상은 북한의 입법형식이나 법률용어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프롤레타리아 독재', '위대한 수령동지' 등의 용어가 입법목적이나 기본원리 부문에서 자주 반복되지 않거나 사라지는(1990년대의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령, 1994년의 「민사소송법」, 1995년의 「환경보호법」 등이 그 예에 해당함)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법률용어 있어서 표현방식의 변천이 곧 북한법제의 본질적 변화와 직결되지 않는 현상적인 것에 불과함은 다음의 '북한법을 보는 방법'에서 확인된다.

Ⅲ. 北韓法을 보는 方法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총체적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법제와 그 법률용어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북한법연구에 있어서 통일지향적인 목적을 착오없이 추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북한법과 그 용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북한법을 연구·분석하면서 통일지향적 목적을 아무리 확고히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입법형식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고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법은 제정주체나 효력발생요건 내지 그 범위가 우리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며, 특정법의 연혁을 살펴보게 되면 해당 법령의 제정이 없는 입법부재의 상태에서도 유사한 규범력이 발휘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사회주의법의 대체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북한법의 존재형식의 독자성에서 연유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북한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개별법령으로서는 1994년에 개정된 민사소송법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연혁·효력범위 및 한계와 경과규정 등은 북한법을 이해하기에 매우 적합한 법령이다.

북한의 민사소송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해방직후에 마련된 총 310개조의 「민사소송법초안」은 채택되지 않고, 「인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법의식(초안 제2조)」에 따른 인민재판제도와 관련 사법제도 및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이후 이혼소송에 한정된 「리혼사건처리에 관한 규정(1962년)」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통폐합한 민사규정의 기본규범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 1976년 1월 10일에 비로소 제정되었다.

이를 개정한 1994년 5월 25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 현행 북한의 민사소송법이다. 그러나 현행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이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규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입법계획을 염두에 두고 삭제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추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령의 연혁과 경과조치는 북한법 전반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이다.

최근에 개정된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기본원칙부문에서 민사소송법의 목적 중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상당히 세련된 입법형식과 법률용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민사소송법의 입법목적이나 운영방향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의 제146조는 개정전 구법 제148조와 동일하게 ‘제2심재판에서는 상소, 항의자료와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의 김일성대학 발간 ‘민사소송법(1987)’은 「수령의 교시·지도자 동지의 말씀·당의 방침」을 제2심재판의 기준으로서 그 최고법규성을 인정하여 법과 증거를 오히려 그 하위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식의 법규해석이 지속되는 한 개정 민사소송법의 한계도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쳐 법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경과에 따른 합리적·정비적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법을 개정하였을 때에 그 법에 대하여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 변화와 기본원리의 수정을 찾으려는 자세는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북한헌법(1992)은 제101조 제3호에서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 현행법령의 해석권을 부여하고, 제120조 제3호에서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으로 사법사업(司法事業)을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존중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152조에서 재판소의 판결을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도록 명문화하여 사법적용의 이념배제적 기능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의 기본원리가 변하지 않는 한

북한에서의 개별법령의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으며, 문구상 그러한 뉘앙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입법기술적인 차원의 어구수정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의 민사소송체계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검사가 민사재판진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인데, 우리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제도이다. 북한법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서 규제의 범위가 동일한 법분야 내지 법률용어라고 할지라도 그 운영이 우리와 다를 경우에는 올바른 접근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북한법의 개별법령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관련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임하는 자세가 요구되어진다. 우리의 민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은 소송당사자의 철저한 동반자로서 인식되나 북한의 경우에는 공화국 변호사를 '개인영리업자'로 보지 않고 변호사의 활동을 변호사회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제도적 특수성을 간과하게 되면, 북한법제의 해석에 있어서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을 대표적인 예로 삼아 '북한법을 보는 방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북한법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북한법'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는 것 보다는 북한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북한법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진정한 초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북한법연구 문헌(특히 북한헌법연구)들 중 연구수단으로서 김일성의 저작선집이나 북한의 중앙방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분하였다. 그러나 이는 마치 북한의 정책노선이나 그 방향에 직접 대응하거나 몰두하는 것으로서 분단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북한법연구가 담당하거나 기여하여야 할 구체적인 실적을 남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세가 필요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에서 북한법연구의 임무와 목적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법연구는 북한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북한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실적이 공허한 상태에서 통일한국을 지향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다리없이 지붕에 올라가고자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에 북한법제연구에 있어서 북한의 법률용어를 연구한다

는 것은 북한법연구의 실체화에 이바지하게 되고 나아가 통일법제 마련에 있어서 법률용어의 갈등으로 인한 법률통합지연 내지 실패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리라 확신한다.

第2章

北韓法制的體系 및 特徵과 展開

第2章 北韓法制的 體系 및 特徵과 展開

I. 北韓法制的 體系分類

1. 北韓法制體系的 分類方法

북한법률용어의 분석이 사전적 의미의 해설을 넘어서려면 북한법제분류의 체계화가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법제를 헌법제정 및 개정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①소군정기의 법령(1945.8.15~1948.9.7), ②1948년의 북한헌법과 하위법령(1948.9.8~1972.10.27), ③1972년의 북한헌법과 하위법령(1972.10.28~1992.4.8), ④1992년의 북한헌법과 하위법령(1992.4.9~현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법의 발전방향과 시기별 분류기준에 대하여는 국내의 법학자 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학자까지도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문헌으로는 북한법에 대한 소련과 중공의 영향을 중심으로 ①소련의 영향이 우세하던 시기(1945년~1958년)⁵⁾ ②중공의 영향이 점증하던 시기(1958년~1960년) ③북괴 독자적인 것의 추구기(1960년 이후)로 나눈 것⁶⁾과 북한정세의 실질적 변화에 입각하여, ①8.15해방 직후의 시기 ②1948년 헌법의 제정·실시시기 ③6.25한국전쟁기 ④전후의 경제건설기 ⑤1972년 헌법의 제정·실시시기 등으로 분류한 것⁷⁾이 있다. 이와 같은 북한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시기별 분류방법은 북한법제의 실질적 입법배경을 고려한다는

5) 강구진 교수는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①제도의 형성기(1945년~1948년) ②1948년 9월 9일의 헌법기 ③한국동란기(1950년~1953년) ④사회주의에의 매진기(1953년~1958년)로 구분하고 있다(강구진, 북괴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 국토통일원, 1975).

6) 강구진, 북괴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 국토통일원, 1975.

7)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1.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북한법제의 전반적인 분류체계와 입법동향을 파악하는 근거를 헌법에 두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이러한 기준은 북한의 법학자들이 북한에서의 법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는 방법⁸⁾과 유사하여 시기별 북한법제의 고유성 내지 특수성을 밝히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 북한법이 지향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법제의 전개과정을 소군정기, 1948·1972·1992년의 북한헌법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헌법에 근거한 북한법제의 동향을 살피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법제의 시기별 분류에 이어 북한법령의 분야별 분류와 해설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북한법의 분야별 분류는 북한의 사회상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북한법의 시기별·분야별 특성을 전반적으로 잘 표현하는 법령군(法令群)을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북한의 법체계를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그 법령이

8) 북한의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확정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1980년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법의 발전단계를 사회주의건설과정에 맞추어 ①민주주의적 법건설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시기(1945년까지) ②민주개혁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독창적인 법의 제정집행시기(1946년~1953년) ③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인 법의 제정집행시기(1954년~1971년) ④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주체적인 법의 제정실시시기(1972년 이후)로 구분한 것(서창섭, 법건설 경험,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84), ①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시기(1930년~1945년) ②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시기(1945년~1947년) ③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시기(1947년~1950년) ④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1950년~1953년) ⑤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1954년~1961년) ⑥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1962년~1972년) ⑦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1972년 이후)로 구분한 것(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1986) 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형사법제와 관련하여 ①반제반봉건민주혁명시기(1947년까지) ②사회주의에의 과도기단계(1947년~1950년) ③조국해방전쟁시기(1950년~1953년) ④전후복구건설시기와 공업화단계(1953년~1972년) ⑤사회주의의 완전승리기(1972년 이후)로 구분하는 것이 있다(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刑事法制, 日本論評社, 1988).

규제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통일원의 ①헌법 ②행정법 ③토지법 ④민법 ⑤가족법 ⑥형법 ⑦민사소송법 ⑧형사소송법 ⑨국제법 등의 분류⁹⁾, 법제처의 ①헌법 ②형법 ③형사소송법 ④민법 ⑤가족법 ⑥민사소송법 ⑦토지법 ⑧노동법 ⑨인민보건법 ⑩어린이보육교양법 ⑪환경보호법 ⑫경제법 등의 분류¹⁰⁾, 대륙연구소의 ①헌법 ②법원·법무 ③행정일반 ④지방행정 ⑤치안 ⑥군사 ⑦재정·금융 ⑧농업·수산 ⑨양정 ⑩산업·건설·상업 ⑪교통·체신 ⑫교육·문화·과학 ⑬노동 ⑭보건·사회 ⑮사법·기타 등의 분류¹¹⁾, 고려대학교 최달곤 교수의 ①헌법 ②행정법 ③경제법 ④노동법 ⑤협동조합법 ⑥민법 ⑦형법 ⑧민사소송법 ⑨형사소송법 ⑩국제법 등의 분류¹²⁾, 서울대학교 최종고 교수의 ①헌법분야 ②행정법분야 ③토지법분야 ④협동조합법분야 ⑤군사법분야 ⑥민법분야 ⑦가족법분야 ⑧상법분야 ⑨경제법분야 ⑩노동법분야 ⑪사회보장법분야 ⑫조세법분야 ⑬형법분야 ⑭소송법분야 ⑮조세법분야 등의 분류¹³⁾가 있다. 이와 같은 분류방법은 모두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의 분류방법과 큰 차이는 없지만, 1993년에 본원에서 발간한 『북한법제관련문헌목록집』¹⁴⁾의 분류체계에 따라 북한법령을 크게 7개 분야의 대분류와 부문별 소분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즉, (1) 헌정관계는 ①헌법일반(근본원칙·법규범일반) ②기본권 ③권력구조(선거·인민회의·행정기관·군사기관 등의 구성·개폐) ④통일문제 등으로, (2) 국제·외무관계, (3) 행정관계는 ①행정일반(상훈·경축일의 제정 등) ②내무(중앙행정·지방행정의 집행, 행정구역의 변경 등) ③국방(동원·조달 등) ④재무(재정·조세·금융·전매·예산 등) ⑤농림수산(농업·임업·축산·수산·식량공급·현물세수납 등) ⑥건설 ⑦교통 ⑧체신 ⑨문

9) 통일원, 북한법에 관한 개괄적 연구, 1978.

10)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1.

11)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1990.

12) 최달곤, "북한법의 체계", 북한법 40년과 그 동향(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13)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3.

14) 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제관련문헌목록집, 1993.

교(교육·학술·문화·체육) ⑩과학·기술 등으로, (4) 민사관계는 ①민법 일반 ②가족법 ③민사소송법 등으로, (5) 형사관계는 ①형법일반 ②형사소송법 ③법원·법무 등으로, (6) 경제관계는 ①경제(산업일반·도량형·천연자원 이용 등) ②상사(상업·가격 결정 등) ③교류협력 ④토지 등으로, (7) 사회관계는 ①사회보장(보건·사회보장 일반) ②노동 등으로 분류·정리한다. 이 분류체계는 북한의 실정법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북한법에 대한 국내의 연구경향과 분야에 따랐다는 점에서 위의 분류방법들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우리의 법체계인식과 북한실정법의 체계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남북한법률용어 비교분석에 적합하며 향후 남북한 법제의 통일 내지 통합안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2. 北韓法制分類의 限界

북한법 체계의 분류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는 북한법의 입법형식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북한법은 헌법과 우리의 법률 내지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령의 형식을 빌어 제정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령·결정·규칙·규정·포고·지시·비준 및 당의 지침·방침 등의 다양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형식적 입법 보다는 실질적 입법에 주목하지 않으면 중요한 법규를 간과할 수 있다. 북한의 다양한 입법형식으로 나타난 법규정들의 제정주체를 살펴보면, 헌법을 포함한 법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령은 주석 내지 국방위원회가, 정령은 중앙인민위원회가, 결정은 정무원이, 지시 등은 여러 국가기관에서 그 입법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양한 입법형식이라기 보다는 입법의 형식과 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엄격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규약이 헌법보다 우선하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국가의 특수한 입법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법제의 분류는 특정한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실질적 효력에서 우리나라의 법령 중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규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그 제정배경이 성문화된 법규를 선택하여 채택된 법률용어의 법사회학적 의미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자신의 법령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북한법의 법체계분류는 그 대상 법령의 입수에서 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법령명을 입수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세부규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여 북한의 입법동향 내지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¹⁵⁾

15) 본 보고서에서 북한법제체계의 분류를 위한 대상법령의 입수는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였다. 해방이후 북한지역에 소군정이 본격화되면서 1945년 8월 26일에 발표된 소련극동군 제25군 사령관인 치쓰짜꼬프(Ivan M. Chistiakov) 대장의 포고문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정·시행된 북한의 법령들은 대륙연구소의 『북한법령집』에 수록된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이후(1989년1월1일~현재)의 법령에 대하여는 한글판인 북한의 정부기관지인 『민주조선』·조선노동당의 당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일본판인 조선문제연구소의 『월간 조선자료』·(주) 조선통신사의 『일간 조선통신』에 게재된 법령들을 수집·정리하여 활용하였고, 또한 통일원·무역협회 등에서 발간된 북한 개별법령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II. 蘇軍政과 北韓의 法的 土臺形成

1948년 8월 15일 해방이후 한반도에는 매우 심각한 정치 및 행정공백 현상이 초래되었다. 특히 일제식민지하에서 항일독립투쟁을 하면서 성장해 온 다양한 민족해방진영이 공동의 목표아래 연합세력을 구축·규합하지 못함에 따라 해방과 동시에 38선 남북지역에 진주한 미·소 양군에 대처할 수 있는 구심적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못하였다.¹⁶⁾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극동군 제25군 사령관인 치쓰짜코프(Ivan M. Chistiakov)는 1945년 8월 26일의 첫 포고문에서 '조선사람은 해방되었으며 그들의 장래의 행복은 조선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지만 이는 북한지역의 정권수립과정에서 소련군의 직접적인 군정의 형태를 배제하는 의미¹⁷⁾는 결코 아니며, 오히려 남한지역에 미군 총사령관인 맥아더(D. McArthur)장군이 1945년 9월 7일에 군정실시를 취지로 한 포고 제1호보다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있다. 소련 원수였던 I.M 와시리에브스키와 N. G 레베데프 소장의 증언¹⁸⁾대로 소련군의 대일전쟁 돌입시기(1945. 8.9)부터 일본수비대 제3일본군 사령관의 서면명령형식의 항복 때(1945.8.26)까지 북한지역에서 소군정의 주요임무는 민정의 형태를 띤 소련공산당 추종세력을 정하여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하는데 있었다. 당시 북한의 정치세력은 김일성의 갑산파 공산세력, 박헌영의 소련파 공산세력, 김두봉·무정의 연안파 공산세력, 현준혁의 국내파 공산세력, 조만식의 우익민족주의 세력 등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결국 갑산파 중 김일성중심의 공산세력이

16) 해방 직후 한국의 정치적 소용돌이(the vortex)의 상황을 G.Henderson은 『Korea-The Politics of the vortex』(Cambridge, Havard Univ. Press, 1968)의 360~376면에서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합의가 없는 측면(non political concensus)에서 진단, 설명하고 있다.

17) 서대숙 교수는 「"정권수립과 변천과정",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58면 이하」에서 북한의 정권수립과정을 소련 점령군과 김일성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파악한다.

18) 국토통일원, 조선의 해방(1987. 8), 3면~84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¹⁹⁾

이 과정에서 소군정기간 동안 북한지역의 법적 토대형성은 크게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과 김일성중심의 권력구조추구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 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은 포고 제1호 「치쓰짜꼬프대장의 포고문」, 포고 제2호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20개조정강」 등으로 그 기초와 골격을 형성하고, 통일적인 중앙주권기관의 수립을 역설하면서 구성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²⁰⁾는 김일성중심의 권력구조를 갖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두갈래의 시도는 1946년 「조선로동당」의 강령 및 규약이 채택되고, 「조선인민군」의 창설(1948.2)과 함께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수립·공포됨으로써 종료하였다.²¹⁾

이러한 북한의 정권수립과정에서 탄생한 최초의 입법은 1945년 11월 16일에 북조선사법국 포고 제2호로 나온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으로서,²²⁾ 해방이후 북한에서 효력을 상실한 일본제국주의의 법령 가운데 그 성질상 정권수립과 조선인민들의 고유한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 및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은 새로운 법령의 제정·공포 이전까지는 그 효력을 존속시켜 법령의 공백을 해소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²³⁾ 또

19) 박헌영 중심의 소련파 공산세력의 완전숙청은, 6.25 한국전쟁을 계기로 완성된다.

20) 이 당시 '임시'라는 용어는 북한지역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 보다는 남북한 통일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된다는 장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21) 북한의 정권수립과정에 관한 주요 논저로는 서대숙, "정권수립과 변천과정",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김창순, 북한오십년사, 지문각, 1961;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양동안, "남북한 정부수립과정비교연구 I·II·III", 현대사회(제33·34·35호), 현대사회연구소; 김동운, 해방전후의 조선진상, 돌베개, 1984; 장복성, 조선공산당파쟁사, 돌베개, 1983;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6·1947·1948;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81 등이 있다.

22) 북한의 문헌에서는 북한법의 연원을 1932년 말부터 1933년 초에 김일성이 두만강 연안에서 만들었다는 「인민혁명정부」의 법으로까지 소급하여 설명하고 있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1986, 9면).

23) 동 포고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朝鮮에서 其效力을 喪失한 法令中 性質上 朝鮮新國家建設 及 朝鮮固有의 民情과 條理에

이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시도는 사법제도의 개혁에서 시작되어 「裁判所組織에關한件(1945.11.23)」·「檢察所組織及設置에關한件(1945.11.27)」·「辯護士의資格監督및登錄에關한件(1945.11.28)」 등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밖에 재정·경제부문에서는 「연초전매법(1945.11.16)」·「산업국 임시조치시정요강(1945.12.8)」·「산업국 임시행정조치요강(1945.12.29)」·「산업국 임시행정조치요강에 관한 시행세칙(1945.12.29)」·「인삼배상 가격결정에 관한 건(1946.1.4)」·「축산자금특별회계규칙(1946.2.4)」·「시·군축산사업특별회계규칙(1946.2.5)」, 농림수산부문에서는 「랑곡접수 및 보관에 대한 추가지시(1946.1.26)」, 교통부문에서는 북조선 각도의 소관인 교통·운수에 관한 행정과 접수소속기관의 운영·관리사업의 일체를 북조선교통국에 인수관리하도록 한 「교통국 포고 제4호(1946.1.13)」, 형법부문에서는 「벌금액 개정에 관한 건(1946.1.1)」·「체형과 벌금병과에 관한 건(1946.1.1)」·「결정·지령·명령등 위반에 관한 건(1946.1.26)」·「농산물매상불응등 처벌에 관한 건(1946.1.26)」, 사회보장부문에서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를 강화할 데 대하여(1945.6.23)」·「전염병원직제 공포에 관한 건(1946.1.7)」 등이 제정·공포되었다.

그러나 북한 입법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46년 2월 8일에 북한 전지역에 지배력을 가진 통치기구로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조직되면서 부터이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정부의 각료에 해당하는 14명의 국·부장을 모두 공산당원이나 공산당의 간부 또는 친공산주의자로 구성²⁴⁾하고 「친일적이며 반민주적 요소를 내포한 지방행정기구의 숙청, 산업·무역·교통의 정상화 회복, 재정제도의 개혁, 수공업의 발전·강화,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와 공장위원회의 창설, 교육제도의 개선, 반일적이며 진정한 민주정신을 인민들 사이에 함양하는 교양교육의 확장」 등을 당면과제로 하였다.²⁵⁾

符合치 않는 法令及條項을 除外하고 其餘의 法令은 新法令을 發布할 時까지 各各 其 效力을 存續함”(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제1권, 1990, 171면).

24) 김창순, 북한오십년사, 지문각, 1961, 192면.

25)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12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사회개혁추진의 기초이자 각 분야의 프로그램인 「20개조정강(1946.3.23)」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통치의 잔재숙청, 파쑈적·반민주주의적 정당·단체와 개인의 활동금지, 언론·출판·집회·신앙의 자유보장, 민주주의적 정당·로동조합·농민조합 및 기타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의 보장, 일반적·직접적·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한 참정권의 보장, 평등권의 보장, 공민의 재산권과 소유권보장, 민주적 재판기관의 구성, 공업·농업·운수·상업의 발전을 통한 인민의 복지향상, 대기업소·운수기관·은행·광산·산림의 국유화, 개인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보장·장려, 일본인·일본국가·매국노·소작지주의 토지를 몰수, 소작제의 철폐, 몰수토지의 농민에 무상분배, 관개업시설의 국가관리, 생활필수품에 대한 시장가격의 제정을 통한 투기업자·고리대금업자의 단속, 공정한 세납제 제정을 통한 루진적 소득세제의 실시, 하루 8시간의 노동과 최저임금제 보장,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고용금지, 13~16세의 소년들에 대한 6시간 노동제 실시, 로동자 등의 보험제 실시, 전반적 의무교육 실시와 인민교육제도의 개혁, 문화·과학·예술의 보호 및 인재의 육성, 국가병원의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의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⁶⁾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20개조정강」의 구체화로서는 「남녀평등권에 대한법령(1946.7.30)」·「도·시·군·면·리인민위원회에관한규정(1946.9.5)」·「도·시·군·면·리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 실시요강(1946.9.5)」·「임시인민위원회의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등의국유화에관한법령(1946.8.10)」·「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46.10.4)」·「토지개혁법령 실시결산에 대한 결정서(1946.4.13)」·「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 대한 결정서(1946.6.24)」 등의 법령을 예시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노동자 및 사무원에 관한 노동법령, 중요산업의 국유화 법령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정강에 기초하여 제정·공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북조선토지

26)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제5권, 1990, 2~3면.

개혁에 대한 법령」은 일제, 친일파·민족반역자들의 소유지, 지주(5정보 이상 소유)의 토지, 소작을 주고 있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도록 규정하고 산림·관개시설·과수원 등과 경작이 어려운 토지를 국유화하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의 토지개혁은 북한지역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근절,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조선로동당규약(1946. 8. 30)」이 제정되는데, 이는 향후 실질적으로 북한사회를 통치하는 최고규범이 된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그후 1947년에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계승되었고 법령시행이 법령의 공포일 즉시 발효되도록 「법령시행기일에 관한 결정서(1947.2.3)」를 제정하여 보다 신속한 입법과정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이 당시에 만들어진 주요한 입법으로서는 「도·시·군·면·리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 실시요강 및 정원에 관한 결정서(1947. 3.24)」·「行政機構 及 定員檢閱委員會組織에 관한 決定書(1947.11.12)」·「지방행정구역변경에 관한 결정서(1947.11.12)」·「국영생산기관, 국영상업기관, 국영운수기관 및 소비조합들의 거래세 및 이익금 기타 국고납부금확보에 관한 결정서(1948.5.4)」·「비료배급에 관한 결정서(1947. 10.27)」·「인민위원회 정치교원양성소설치에 관한 결정서(1947.6.20)」·「인민위원회 각국·부소속간부양성소규정(1948.7.10)」·「기술교육진흥에 관한 결정서(1947.6.20)」·「고무제품 및 면직물검사규정(1948.6.14)」·「도량형에 관한 임시규칙(1947.9.2)」·「지하자원, 삼림지역 및 하천수역의 국유화에 관한 결정서(1947.12.22)」·「보건일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1947.8.29)」·「인민위원회 로동국 사회보험물자관리소 규칙(1947. 10. 14)」·「기업소, 사무소 내부정리규칙(1947.8.20)」·「로동보호에 관한 규정(1948.2.4)」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소군정기간 동안 북한의 입법은 향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토대를 형성할 주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형식에 있어서 소군정의 포고문형식 보다는 「인민위원회」의 형태를 빌어 마치 이 시기에 의형상 군정이 아닌 민정이 이루어진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는

소련이라는 외국군의 주둔이 명확하고 군정 포고문의 효력이 그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방전 북한지역의 소군정시기는 민정이라는 외형적인 명분과 공산세력 중 소련추종세력²⁷⁾이 권력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과정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27)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은 소련파로 분류되지만, 이는 활동근거지나 인맥형성이 그 지역적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지 '소련추종세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Ⅲ. 1948年の 北韓憲法과 下位法令現況

1. 1948年の 北韓憲法の 制定 및 改正과 主要內容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은 1948년 9월 8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동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성립되었다.

1947년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부터 계승·개편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헌법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31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한반도 전체에 적용될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이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작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 제출하여 그 초안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이 1948년의 북한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이다.

1948년의 북한헌법은 사회주의적 발전단계 중 초기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인정과 토지·중소상공업의 소유 및 상속을 허용하는 제8조의 조항에서 나타나듯이 아직은 사회주의헌법으로 향하는 과도기적 헌법에 해당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북한사회가 사회주의로의 발전과정에서 완전한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에서 비롯된 현상으로서 마르크스가 예정한 공산혁명의 사회적 기반인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사회'의 단계가 전제되지 않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혁명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마치 러시아혁명 후 공산혁명의 사회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최초의 사회주의헌법(1918. 1. 12)이 레닌의 독자적인 국가 및 법이론의 탄생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처럼 북한의 이 헌법도 처음부터 김일성주의라고 불리우는 주체사상과 수령론 및 유일체계에 근거한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으로 이어지는 운명을 안고 있었다. 1948년의 북한헌법은 이러한 사회주의 발전단계론적 특성외에도 정치현실에 있어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정치적 헤게모니의 다툼

이 있었다. 당시 북한에는 김일성중심의 갑산파와 중국공산당 또는 소련군과 운명을 같이한 연산파 및 소련파, 그리고 국내의 조선공산당파가 각각의 세력을 형성하여 1948년의 북한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북한사회를 보는 그들의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특히 「토지소유제한의 범위」·「중소상공업의 허용여부」 등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있었다. 그 당시에 소련파는 부르조아가 다시 등장할 여지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조선공산당파와 김일성의 갑산파는 소련의 경우는 부르조아를 청산하는 사회주의혁명의 단계에 있지만 조선의 현실은 친일파와 같은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고 봉건제도의 유습을 청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제도를 정착시키야 할 필요한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1948년의 북한헌법은 대체적으로 조선공산당파와 김일성의 갑산파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초기형태의 사회주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과 더불어 반(半)봉건적·반(半)자본주의적·반(半)사회주의적 요소가 혼합된 헌법이 되었다.²⁸⁾

1948년의 북한헌법은 총 10장 10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의 북한헌법은 제1장에서 「근본원칙」으로서 10개조의 총칙적인

28) 이와는 다소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1948년의 북한헌법은 1918년의 러시아 헌법(레닌헌법)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구조를 어느 정도 같이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1936년 12월 5일에 제정된 소련의 이른바 사회주의헌법(스탈린헌법)을 거의 모방하고 있다는 견해(김운용, “북한헌법질서의 이론과 실제”, 북한법률체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1972. 36~37면, 전광석, “북한헌법상통치조직의 변천-1992년 개정북한헌법상의 통치조직”, 북한연구(1993년 여름호, 제4권 제2호), 대륙연구소, 110면)와 당시를 풍미하던 조류에 따라 1948년의 북한헌법은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사회는 해방후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미숙한 상황에서 나타난 「인민민주주의단계의 헌법」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단계의 헌법인 1936년의 소련헌법(스탈린헌법)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는 견해(최송화, “헌법과 통치구조”,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36면)가 있으며, 북한사회가 사회주의로의 발전과정에서 완전한 혁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봉건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헌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견해(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년~1993년), 1994, 492면)가 있다.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체(國體) 및 정체(政體)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밝히고(제1조), 주권은 명목상이나마 인민에게 있음을 명시하되 그 주권의 행사는 인민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하고(제2조), 주권대표기관의 선거는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제3조),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 자기사업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선거자는 대의원의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4조), 생산수단의 소유는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법인에게 인정하며(제5조), 법령이 규정한 일부 개인소유(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기업, 기업소, 중소기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와 그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공민의 기본권부문으로서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서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제11조), 선거연령은 만 20세 이상으로 하며(제12조),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행위의 자유를 가진다(제14조)고 규정하고 있다.

권력구조부문에 관하여는 제3장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최고인민회의(제32조~제46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제47조~제51조)를 두고,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으로서 내각(제52조~제62조)·성(제63조~제67조)을 두며, 제5장 지방주권기관으로서 각급 인민위원회를 두고 있다(제68조~제81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이며 입법권을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제32조) 국가대표권을 가진 합의제국가의 원수의 지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그 기능을 행사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권력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법제도부문에 관하여는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에서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하되(제82조), 재판소의 구성은 최고재판소의 경우 최고인민회의에서, 도·시·군재판소의 경우 비밀투표로 각급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특별재판소의 경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제83조), 검찰소의 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으로 하며(제92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3조).

이 밖에 기타 사항으로 제7장 「국가예산(제95조~제99조)」·제8장 「민족보위(제100조)」·제9장 「국장, 국기, 수부(제101조~제103조)」·제10장 「헌법수정의 절차(제104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제103조)라고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헌법적 구상을 피력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고, 또한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된다」고 규정(제104조)하여 1972년·1992년의 북한헌법에서는 사라진 헌법의 개정 절차를 갖고 있다.²⁹⁾

1948년의 북한헌법은 1948년 9월 8일에 공포된 이래로 다섯 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제1차 개정은 1954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7차 회의에서 헌법 제37조 제8항 ‘도·시·군·면·리구역의 신설 및 변경’을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으로 개정하여 면을 폐지하고, 제58조의 내각구성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제2차 개정은 1954년 10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 회의에서 지방정권 기관에 의결기관인 각급 ‘인민회의’, 그 집행기관인 각급 ‘인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여 제5장과 이와 관련된 전조항을 수정하였고, 그 밖에 제36조에서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다. 제3차 개정은 1955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9차 회의에서 제2차 헌법개정에 따른 각급 지방정권기관의 권한변경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조항 및 내각 구성조항의 개정이 있었고, 그 밖에 제53조의 내각권한에 대한 자구수정(지시를 명령으로)이 있었으며, 제4차 개정은 1956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에서 제12조 제1항의 선거권·피선거권의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9) 북한헌법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절차의 불비는 헌법의 최고규범성 내지 근본규범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제5차 개정은 1962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제 35조를 수정하여 대의원의 선출을 인구 5만에 1명 비율에서 인구 3만에 1명으로 개정하였고, 그 밖에 제58조 내각구성원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이 시기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1948년의 북한헌법이 제정된 초기에는 입법의 수에 있어서 대단히 미약하였다.³⁰⁾ 그러나 한국전쟁기간 동안에는 전쟁을 지원하는 다양한 입법과 북한이 일시 점령한 남한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법령들이 상당수 제정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1972년의 북한헌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전후경제와 사회주의 건설에 전념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교적 많은 수의 법령들을 제정하였다.³¹⁾

2. 憲政關係分野

이 시기(1948.9.8~1972.10.27)중 북한정권수립 직후 헌정과 관련된 입법은 주로 권력구조부문에 치중되었다. 「정부의 구성에 관하여(1948.9.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권리와 임무에 관한 규정(1948.9.9)」,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조직에 관하여(1948.9.9)」 등이 이에 해당되며, 6.25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제정된 「정권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일꾼등에 대한 교양사업 강화에 관하여(1950.3.4)」, 「군사위원회조직에 관하여(1950.6.26)」 등은 전쟁기간이라는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전쟁이후 「지방주권기관구성법(1954.1.30)」,³²⁾ 「내각구성법(1955.3.

30) 북한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제정된 입법의 특징은 인민민주주의법을 사회주의혁명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일제의 낡은 법률잔재를 청산하며,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점에 있다고 한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1986, 100~101면).

31)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2, 20~23면.

32) 북한은 1954년 10월 30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법령 제72호로 「지방주권구성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동법은 총 3장 3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제1장 「일반규정」에서 지방주권기관으로서는 「도·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의 해당 인민회의」를 규정하고(제1조), 해당 인민회의의 구성과 선

31)」 등에 의한 국가조직의 정비를 감행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본격적인 건설시기에 접어든 1960년도 이후에는 주로 경제관련부처, 즉 건설성(1961.1)·임업성(1960.12)·수산업(1960.12)·경제위원회(1961.2)·농촌건설성(1961.11)·국가과학기술위원회(1962.7)·도금속화학공업성(1962.8)·전기석탄공업성(1962.8)·기계공업성(1962.8)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근거법령 내지 정령을 결정한다.

기본권 관련부문으로서는 국적법을 대표적인 예로서 지적할 수 있다. 1963년 10월 9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결정된 국적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와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제1조), 공민은 그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 및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적취득에 있어서 전형적인 속인주의(屬人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이 법은 국적취득의 구체적인 경우로서,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간에 출생한 자녀들」, 둘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과 외국공민간에 출생한 자녀들」, 셋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내에서 발견된 자녀로서 그의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제4조). 그리고 국적에의 입적 또는 그로 부터의 제적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조).

국제·외무관계분야로서 「외국여행에 관한 규정(1948. 10.26)」은 매우

거절차로서는 「그 관할지역내 공민들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인민회의의 대의원수와 선거절차는 선거법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규정하며(제2조), 임기로서는 「도인민회의는 4년, 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인민회의는 2년의 임기로 선거한다」고 규정하며(제3조), 「도·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인민회의는 자기활동에 있어서 법령·정령·내각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그 집행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또한 동법은 제2장 「도·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인민회의(제5조~제16조)」·제3장 「도·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인민위원회(제17조~제31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1952년 3월 13일에 내각지시 제76호로 제정된 「외국여행과 단속에 대하여」를 살펴보면 자주 공민의 외국여행은 철저히 단속되었고, 특히 공무원의 여행은 내각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3. 行政關係分野

북한법의 행정관계분야는 크게 행정일반·내무·국방·재무·농림수산·건설·교통·체신·문교·과학기술 등의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훈과 각종 경축 및 기념일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일반 부문의 입법동향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6.25한국전쟁·경제 및 사회주의 건설에의 몰두 등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정권수립과 관련하여 1948년의 「국기훈장 제1급·제2급·제3급에 관한 규정(1948.10.12)」, 「공로메달에 관한 규정(1949.6.13)」, 「군공메달에 관한 규정(1949.6.13)」 등이 있고, 최고영예인 영웅칭호에 관한 규정(1950.6.30), 「전사의 영예훈장에 관한 규정(1950.7.1)」, 「이순신훈장 제1급·제2급에 관한 규정(1950.7.13)」, 「자유독립훈장 제1급·제2급에 관한 규정(1951.7.7)」 등은 6.25한국전쟁의 독려를 위하여 제정된 것들이다. 그리고 1958년 5월 11일에 제정된 「증산경쟁운동순회 우승기 수여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북한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고, 「공훈도시관리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2.4.20)」, 「공훈도시관리공칭호에 관한 규정(1972.4.20)」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을 시작함으로써 1972년 12월 27일에 제정될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의 정치사회적 기반이 이미 조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무부문의 대부분의 법령들은 중앙 및 지방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한 것과 화약류단속 및 교통질서단속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특히 1949년 10월 30일에 제정된 「화약류단속에 관한 규정」은 총 7장 5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북한법제 중 상당히 치밀한 내용의 입법으로서 1946년 8월 1일에 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제정된 「화약류단속령」·

「화약류단속령시행규칙」을 1949년 10월 30일에 북한의 내각 결정 제144호로 통폐합하여 제정한 것이고, 이것은 당시의 북한의 입법과정상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국방부문의 대부분은 동원 및 조달에 관한 규정들로서 군과 민의 경계가 거의 없고, 북한의 전군사적 지배(全軍事的 支配)가 확연하다.

그리고 재정·조세·금융·전매·예산 등의 재무부문과 농업·임업·축산·수산·식량공업·현물세 수납 등의 농림수산부문, 그리고 교육·학술·문화·체육 등을 규정한 문교부문은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은 법령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재무·농림수산·문교부문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48년의 북한헌법시기(1948.9.8~1972.10.27)에 행정관계 북한법제와 그 입법동향의 주요특징을 보여주는 법령으로서 행정일반부문의 「조국해방전쟁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1953.8.13)」, 「증산경쟁운동의 순회우승기 수여에 관한 규정(1958.5.11)」, 「공훈도시관리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2.4.20)」, 「공훈도시관리공칭호에 관한 규정(1972.4.20)」, 내무부문의 「화약류단속에 관한 규정(1949.10.30)」, 재무부문의 「몰수재산관리에 관한 규정(1948.12.16)」, 농림수산부문의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 데 대하여(1966.4.29)」, 건설부문의 「로동자·사무원·도시주민들이 자체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의 조건을 보장할 데 대하여(1958.6)」, 교통부문의 「개항에 관한 결정서(1949.10.3)」, 「항만부두사업에 관한 규정(1949.12.23)」, 체신부문의 「우편에 관한 규정(1949.11.2)」, 문교부문의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1949.9.10)」 등을 꼽을 수 있다.

4. 民事 및 刑事關係分野

이 시기(1948.9.8~1972.10.27)에 민사관계분야의 입법은 극히 미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형사관계분야는 1950년 3월 3일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채택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6.25한국전쟁기간 동안

「전시조건하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법 적용에 관한 지도적 지시(1950.7.22)」,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 이승만 매국도당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편으로 도주한 민족반역자들의 몰산을 등록하며 이를 처분할 데 관한 결정서(1951.1.5)」, 「자수자 취급절차에 관한 규정(1951.2.10)」, 「군중심판에 관한 규정(1951.2.16)」, 「전시군사재판에 관한 규정(1952.11. 29)」 등 많은 법령을 제정하여 법제적 측면에서도 총력전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민사관계분야의 입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1961년 7월 11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결정된 「시효에 관한 규정」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시효기한이 짧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기관·기업소 상호간의 채무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시효는 3개월 또는 6개월이고, 외국으로 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국제연락운수 및 국제통산과 관련한 청구는 그 시효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1949년 11월 15일에 제정된 「후견인 또는 보조인 선정 및 감독에 대하여」 등이 있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 민사관계분야의 법령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

반면에 형사관계분야는 1950년에 기본법에 해당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벌금에 관한 규정(1972.4.17)」, 「신소·청원 및 검열에 관한 규정(1970.2.3)」, 「판결, 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1956.9.25)」, 「검찰기관에 관한 규정(1961.8.23)」 등 상당히 체계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는 형법 제7조에서 '죄'의 정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라고 규정한 것 처럼 형사관계분야의 입법정비를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시하였던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형법은 사회주의법의 특징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법으로서, 우리의 형법과는 그 입법목적이나 체계 등 모든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반되고 있다. 우리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가 북한의 형법이론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죄형법정

주의는 봉건을 반대하여 투쟁한 부르조아지에 의하여 고안된 것이다. 부르조아지 형법학자들은 그것이 마치 지배계급의 전횡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며 판사를 말하는 기계로 만들고,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헌장인 것 처럼 선전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반박³³⁾하면서 유추해석을 「사회적 위험행위가 수행된 이상 그에 해당하는 형식적인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의 형태들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³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는 등 우리와는 상이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5. 經濟 및 社會關係分野

북한의 경제관계분야는 경제·상사·토지 등의 부문으로, 사회관계분야는 사회보장·노동 등의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야의 법령들은 북한의 수립과 더불어 집중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 왔는데,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생산관계 및 생산양식을 지속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경제관계분야에서의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1949.12.13)」, 「협동단체의 조직 및 사업강화에 관한 결정(1951.8.22)」, 「생활필수품의 국정소매가격을 인하할 데 관하여(1958.8.7)」, 「토지관리규정(1960. 7. 5)」 등과 사회관계분야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협동기관, 기타 일반기업소 및 사무기관의 로동과 사무원에 대한 로동내부질서표준규정(1950.1. 31)」, 「표준로력기준량(1954.2.23)」 등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 및 사회관계법의 역할은 국가기관, 기업소 등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규범화하여 통일시키는데 주력하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하여 조직된 국가기관·기업소들이 중앙의 통일적 지도하에 있도록 하는데

33) 한락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공화국 형법”,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 사회과학원 출판사(북한), 1955, 83면.

34) 한락규, 위의 글, 82면.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 및 사회관계의 대표적인 주요법령으로서 1948년의 「비상업기관 상품판매금지에 관한 결정서(1948.12.16)」, 1950년의 「도량형기 사업강화에 대하여(1950.4.12)」, 「단체계약체결에 관한 결정서(1950.3.15)」, 1959년의 「공화국 북반부으로 넘어오는 남조선주민들에게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생활안정을 보장할 데 대하여(1959.1.26)」 등을 예시할 수 있다.

IV. 1972年の 北韓憲法과 下位法令現況

1. 1972年の 北韓憲法の 主要內容과 特徵

1948년의 북한헌법의 다섯 차례의 개정후, 1972년 10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되었다. 1972년의 북한헌법은 북한정권의 수립으로부터는 제6차의 개정에 속하지만, 이 헌법의 성격상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헌법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1948년의 북한헌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이라고 사용하던 것을 1972년의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바뀌었으며, 그 내용상으로도 그 기본이념과 권력구조(국가성격·혁명목표·경제체제·주석제 신설 등) 등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72년의 북한헌법의 제정동기는 그들 나름대로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 발전의 초기형태인 인민민주주의원리가 더이상 맞지 않게 되었고, 그 가운데 중국과 소련사이의 이념분쟁과 '주체사상'의 등장이라는 이념적 변화를 겪었으며, 당과 국가기관에 관한 규정, 즉 권력구조부문의 실질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948년의 북한헌법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³⁵⁾ 그러나 1972년의 북한헌법은 북한사회를 전체인민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규명하지 않고,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계급로선의 관철을 선언(제10조)」하고 있는 점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완성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35) 1972년의 북한헌법의 채택이유로서 공산주의 체제가 이룩한 성과를 자국내에 확산시킴과 동시에 한국 국민에게 북반부에서는 이미 제1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의 영역을 벗어나 더욱 진보된 국가형태인 「프로레타리아」독재로서의 사회주의국가에 도달한 것으로 자인·과시하기 위하여 약 25년전에 제정된 1948년의 북한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정비해야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있다(井手成三, 「北韓新憲法解説」, 『북한 신구헌법비교연구』, 중앙정보부, 1977, 77~78면).

이러한 1972년의 북한헌법의 주요특징으로서는 노동당에의 초헌법적 지위부여의 명시화·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주체사상의 헌법규범화·국가주석제의 도입·집단주의원칙의 강조·남북통일문제의 직접적 언급 등을 예시할 수 있다.³⁶⁾ 특히, 권력구조의 측면에서는 공산당(노동당) 1당 독재체제와 김일성 우상화체제의 확립을 통한 「김일성 1인독재체제」의 제도적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한 헌법이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1972년의 북한헌법은 총 11장 149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헌법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제1장에서 제3장에 걸쳐 정치(제1조~제17조)·경제(제18조~제34조)·문화(제36조~제48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 정치적인 면에서는 국가의 성격을 「사회주의국가(제1조)」라고 정의하면서 국가의 기초로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에 의거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사회주의체제를 명시하였고, 또한 지도원리로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4조)」고 하여 주체사상의 우위성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은 ①주권은 「로동자·농민·병사·근로인테리」에 있고(제7조), ②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해 조직·운영되고(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을 관철하며(제10조), ③국가사업은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이 관철되며(제12조), ④사회주의 건설은 「천리마운동」이 적용되고(제13조), ⑤대외적으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제16조)는 조항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 경제적인 면에서는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로 하고(제18조), 소유형태는 「국가소유(전체 인민의 소유)」(제19조)·「협동단체소유(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제20조)·

36) 1972년 북한헌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 전통은 1992년의 북한헌법에도 이어져 북한의 법현실에 있어서 북한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많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개인소유(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제22조)로 인정하면서 협동단체의 소유는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하고(제21조), 개인소유는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제22조). 아울러 국가의 관리운영방법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고(제30조), 국가경제는 「계획경제」이며(제31조), 세금제도는 「완전히 없앤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3) 문화적인 면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의 발전(제36조)·「전반적 10년제 고등의무교육」의 실시와 국가부담(제41조)·「탁아소·유치원」에 대한 국가·사회부담(제43조)·「전반적 무상치료제」의 발전(제4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³⁷⁾

둘째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49조~제72조)」에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새로이 추가하였고(제49조), 1948년의 북한헌법과는 달리 선거권의 연령을 「만 17세 이상」으로 인하하였으며(제52조), 신앙의 자유에 있어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종교말살정책을 헌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제54조).

세째로, 권력구조에 대하여 1972년의 북한헌법은 주권기관으로서 제5장 「최고인민회의(제73조~제88조)」·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제89조~제99조)」·제7장 「중앙인민위원회(제100조~제106조)」·제9장 「지방인민회의·인민위원회(제115조~제127조)」를 두고,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제8장 「정무원(제107조~제114조)」·제9장 「지방행정위원회(제128조~제132조)」, 사법기관으로서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제133조~제146조)」를 두고 있다. 헌법·권력구조의 구성요소로서 각 기관의 성격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제73조)·국가주석의 선거권(제76조)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지만, 일반적인 행정권의 우위·예산심의권의 결여·대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37) 문화적인 면에서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며 그 질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의 장에 규정된 조항들은 「단순히 종이 위의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된 제성과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福島正夫,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社會主義新憲法, 法律時報(1973.4), 137면).

후보의 지명권이 노동당에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 권한의 실효성이 없는 기관이다. (2) 중앙인민위원회는 1972년의 북한헌법에 신설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제100조) 1948년의 북한헌법상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정령제정권」과 내각이 가지고 있던 「정책결정권」을 가짐과 아울러 사법과 검찰을 지도하는 권한까지도 가지는 강력한 기관이다(제103조). 그러나 중앙인민위원회와 국가주석의 관계를 보면,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가 국가주석이고(제101조), 국가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므로(제91조), 실질적으로는 중앙인민위원회가 국가주석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주권을 대표하고(제89조),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고(제90조),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며(제91조) 정무원회의를 소집·지도하고(제92조), 최고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고(제93조), 특사권(제95조)·조약의 비준 및 폐기(제96조)·사신의 신임장 및 소환장을 접수(제97조)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며, 주석은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제98조).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주석에 대한 소환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972년의 북한헌법에서 신설된 국가주석제는 1948년의 북한헌법이 최고인민회의·수상·최고재판소라는 형식적인 3권분립의 형식을 취하면서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합의제적인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한 반면에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 (4) 지방주권기관으로서 각급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인민회의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제123조). 그러나 지방인민회의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보다 대폭 그 권한이 약화되었다(제103조). 이것은 지방의 권한이 약화되고 중앙의 지시에 따르는 중앙집권체계가 강화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5)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정무원과 각급의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정무원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제107조)이지만 1948년의 북한헌법의 내각이 바뀐 것으로 중앙인민위원회에 그 권한의 대부분을 이양하고 정책집행권만을 행사할 뿐이고, 지방행정위원회는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해당 지

방주권기관 앞에 책임을 지며 동시에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32조). (6) 사법기관으로서는 재판소와 검찰소가 있는데, 재판소의 종류로는 중앙재판소·도재판소·인민재판소·특별재판소가 있고(제133조), 검찰소의 종류로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있다(제144조). (7)노동당 관련조항으로, 1972년의 북한헌법은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노동당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최고기관을 지도하는 초헌법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와 같은 1972년의 북한헌법의 권력구조의 특징은 권력구조의 구성요소로서 각 기관의 성격과 상호작용관계를 실질적으로 고찰하게 되면, 「권력분립의 배제·1인독재·노동당의 우월」으로 축약된다.

마지막으로 1972년의 북한헌법은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에 대하여 3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1948년의 북한헌법과 비교하여 특별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의 개정된 부분으로서, 이는 제5조의 남북통일문제 조항에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와 균형을 맞춘 개정으로서 헌법상 현실을 수증하여 수용한 것이다.

1972년의 북한헌법은 제14조에서 주체사상을 공화국활동의 지도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그 이후의 모든 법령들이 반드시 주체사상을 그 입법목적으로 구성하고 있음 또한 이 시기의 특징이다.

2. 憲政關係分野

1972년의 북한헌법이 제정된 초기에 북한사회는 국가관리체계를 정규화하고,³⁸⁾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확립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에 근거한 구체적

38)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刑事法制, 社會評論社, 1988, 124면.

인 법규범을 제정하기 시작했다.³⁹⁾ 즉, 행정·경제기관을 정비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 법제위원회·지방주권기관·지방인민위원회·행정위원회 등의 조직·활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사회주의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 및 사회주의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법의 준수집행에 대한 검열감독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금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제정하였다.

이 시기의(1972.10.28~1992.4.8)의 헌정관계 입법동향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권관련 부분의 입법은 거의 없고,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1980년 10월 13일에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1946년의 규약과 비교할 때에 당원의 입당연령을 종전의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어 그 저변을 확대하였고, 김일성중심의 주체사상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의 조직을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였으며, 조선인민군대 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면서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하여 1972년의 북한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한 노동당의 초헌법적 지위가 명실공히 실질화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이 나오고, 1977년 7월 13일에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규약」을 제정하여 대남전략전술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1980년 후반과 1990년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새로운 국제경쟁질서가 형성되자 헌정관계분야의 입법에 있어서 권력구조의 잦은 개편과 남북대화와의 참여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주체사상의 수령론과 유일체제에 근거한 헌정의 기본틀에 새로운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39) 大內憲昭, “朝鮮民主主義憲法”, 아시아의社會主義法, 社會主義法研究會(編) 社會主義法研究年報 No 9, 法律文化社, 1989, 48면.

3. 行政關係分野

북한의 1972년 사회주의헌법시기의 행정관계분야의 법령들은 대체적으로 주체사상이라는 지도이념에 철저히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입법동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령의 입법목적 내지 기본원리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주체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행정일반부분의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에 관한 규정(1973.7.3)」·「대혁명붉은기수여에 관한 규정(1977.9.6)」 등은 주체사상을 독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령이며, 1982이년 1월 23일에 제정된 「사회주의애국상을 제정함에 대하여」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총련계의 제일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연대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또한 「화폐교환에 관한 규정(1979.4.6)」·「인민교원칭호에 관한 규정(1980.1. 15)」·「인민 의사·인민약제사칭호에 관한 규정(1980.3.15)」 등도 구체적인 각 부문의 사업을 명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주체사상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에 들어서면서도 북한법은 각 개별법의 기본원칙부분에서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철저히 관철함에 대하여」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데, 재무부문의 「물자소비기준제정에 관한 규정(1990.1)」, 농림수산부문의 「양어사업규정(1990.1)」, 건설부문의 「강하천관리규정(1990.3)」·「도시시설물관리규정(1990.7)」·「공공건물관리규정(1990.8)」·「도로관리규정(1990.9)」, 과학기술부문의 「과학기술법(1989.1)」 등이 그 예이다. 이는 1972년의 북한헌법의 최고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의 반영이 각 개별법령의 제정시 강제되고 있는 북한의 입법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부문은 1992년 헌법의 개정에 의하여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4. 民事 및 刑事關係分野

이 시기(1972.10.28~1992.4.8)에 있어서 민사관계 및 형사관계분야의 입법동향은 큰 폭의 변화를 갖는다. 1948년 헌법시기에 전혀 체계화되지 않았던 민사관계분야의 법령들이 정비되었고, 형사관계분야는 신형법이 채택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이 두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민사관계법은 그 기본법이 되는 「민법」이 1990년 9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민사관계 중 상속제도부문은 따로 분리되어 「가족법(1990.10. 24)」으로 편입된 특징이 있다. 특히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기도 하지만, 유교적 전통을 많은 부문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해방직후에 총 310개조로 구성된 '민사소송법초안'을 채택하지 않고, '인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법의식(초안 제2조)'에 따른 인민 재판제도와 관련 사법제도 및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1962년 「리혼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을 채택, 이를 통폐합한 민사재판규범으로 1976년 1월 10일에 제정되었다. 북한의 재판제도는 우리와 매우 이질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민사소송에 있어서 검사가 재판에 개입하고,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그 방지를 위하여 1년간 정치사업을 하며, 판사 외에 안전기관에서 다른 지방 내지 노동교양소로의 격리·수용을 명하는 점 등이 그 특징이다.

한편 형법에 있어서는 그 체계와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주의 형법의 주요특징과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주체사상을 그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드러낸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1950년에 제정된 이후 두번(1975년 1월 10일과 1992년 1월 15일)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는 개략적으로 주체사상의 이념적 무장(1975년 형사소송법)과 그와 반대로 1990년대의 탈이데올로기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춰 명목상의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經濟 및 社會關係分野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시기에 있어서 경제관계 및 사회관계분야의 입법 동향은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헌법제정 직후부터 1980년 후반까지는 주체사상의 이념강화라는 측면을 반영하듯이 이 분야에 관한 한 특별한 규정이 제정되지 않다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신국제경제질서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이 조성되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이 분야의 입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1984년 9월 8일에 제정된 「합영법」과 1985년의 「합영법시행세칙」은 기존의 북한의 경제체제나 대외개방의 불가원칙에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나 당강령의 변화가 없이는 그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V. 1992年の 北韓憲法과 下位法令現況

1. 1992年の 北韓憲法の 主要內容과 特徵

1992년의 북한헌법은 1972년의 북한헌법이 제정된 이래로 20년만인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채택되었다. 이 헌법은 사회주의헌법의 제1차 개정(1948년)에 해당하고, 1948년의 북한헌법으로 부터는 통산 제7차 개정(1972년)에 해당하는 것이다.

1992년의 북한헌법은 구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국제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고 대외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수정하여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며 김정일에로의 후계권력체계의 기반과 권력의 승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구조를 부분적으로 다원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⁴⁰⁾

1992년의 북한헌법은 총 7장 17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헌법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2년의 북한헌법은 「제4장 국방」의 장을 신설하고, 국가기관을 나열 및 병렬식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제6장 국가기구」의 장아래에 8개의 절에 걸쳐 각급 국가기관으로 분리·규정하였다. 특히,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던 종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종전의 「지방행정위원회」를 「지방행정경제위원회」로 개칭한 것이 특색이다.

둘째로, 국가지도이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2년의 북한헌법은 제1장 정치(제1조~제18조)·제2장 경제(제19조~제38조)·제3장 문화(제39조

40) '주석권한'의 약화와 '국방위원회'의 신설은 헌법개정 당시 당분간 김일성과 김정일 쌍두체제가 지속되리라는 예상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사망으로 헌법개정 직후 가장 순탄하여야 할 권력구조의 안정구축이 오히려 어렵게 변질된 것이 지금의 북한실정이다.

~제57조)·제4장 국방(제58조~제61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즉, 이 헌법은 (1) 「북한의 유일대표성(제1조)」·「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적 정권성(제2조)」·「계급로선의 견지(제12조)」·「군중로선의 구현(제13조)」 등의 1972년의 북한헌법의 정책을 재확인하여 사회주의체제의 고수의지를 명백히 천명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이념을 포기하고 「주체사상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제3조), 아울러 주체사상의 원리인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하여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제8조)」라는 규정을 두었다. (2) 주권의 소재에 대하여는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제4조)」으로 규정하여 종전의 「병사」는 삭제하면서 「모든 근로인민」을 추가규정하였는데, 「병사」를 삭제한 것은 북한의 현실이 병사를 노동계급으로 보고 있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모든 근로인민」을 추가한 것은 근로인민이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별개의 다른 계급적 특성을 가진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의 중심으로서 포괄적 개념으로 보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¹⁾ (3) 북한의 사회주의발전단계에 대하여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실시」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강화(제12조)」로 규정하여 하향조정하였는데, 이는 대외관계개선 및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려는 북한의 현실을 헌법의 규정에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당의 역할에 있어서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라고 규정하여 조선노동당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구조의 다원화에 따른 권력누수와 대외개방에서 오는 사회전반의 이완현상을 막아보려는 조치로서 당의 역할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1992년의 북한헌법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은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제18조 제1항)」이며, 법의 존중과 집행은 「모든 기관·기업소·단체·공민의 의무(제18조 제2항)」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

41) 장명봉, 북한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북한연구(1993년 봄호), 대륙연구소, 108~109면.

무생활을 강화한다(제18조 제3항)」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동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인민위원회(제120조 제4호)와 지방인민회의(제136조 제3호)의 권한과 임무의 하나로서 범준수집행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준법생활에 대한 헌법적 의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제81조)」라는 문구를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북한에서 그 동안 강조되어온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현상을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6) 김정일의 지도노선과 후계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규정하였던 종전의 규정을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제14조)」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김정일의 지도노선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1992년의 북한헌법에 반영하였다. (7) 대외정책의 이념 및 원칙에 대하여는 종전의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국가들과 단결한다」는 대외기본정책을 수정하여, 대외기본이념·활동원칙으로서 「자주·평화·친선(제17조)」의 3대원칙을 천명하고, 또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한다(제17조)」고 규정함으로써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제적 연대가 붕괴된 국제환경의 변화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헌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의 구체화로서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규정(제16조)」과 「외국인·외국법인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하는 규정(제37조)」을 신설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8) 남북통일문제에 대하여는 1972년의 북한헌법이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1992년의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문화, 기술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제9조)」라는 내용으로 수정·보충하였다. 이 규정에서 「전국적 범위」라는 표

현을 삭제하고, 북한에서의 3대혁명에 의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강조함으로써 향후 대남전략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9)국내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우리식 사회주의원칙」에 따라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구체화로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해 투쟁한다(제26조)」고 규정하고, 「기술혁명을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기본고리(제27조)」로 규정하여 기술발전문제를 경제활동의 최우선과제로 선언하고, 「농촌기술혁명을 통한 농업공업화(제28조)」와 「선진과학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의 개척(제50조)」 및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의 촉진(제51조)」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인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제25조)」·「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제48조)」·「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제53조)」·「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제57조)」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북한의 경제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규정들의 실현성은 의심스럽고, 오히려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한 명목적인 규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10) 국방에 관하여는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군사체제의 강화를 통한 내부체제의 정비와 결속을 도모하고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였는데, 무장력의 사명을 「근로인민의 이익옹호와 사회주의체제의 혁명의 전취물의 보위, 조국의 자유·평화의 수호(제59조)」로 규정하고, 「4대 군사로선」인 「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제60조)」을 명문화하고,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

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제61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세째로,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5장 : 제62조~제86조)」에 대하여는 1972년의 북한헌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다만 1972년의 북한헌법이 규정한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삭제한 것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것을 곧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은 제68조 제2항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를 광범위하게 마련하여 놓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국가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2년의 북한헌법은 「제6장 국가기구」의 장아래에 제1절 「최고인민회의(제87조~제104조)」·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제105조~제110조)」· 제3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제111조~제116조)」·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제117조~제123조)」· 제5절 「정무원(제124조~제132조)」· 제6절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제133조~제146조)」·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제147조~제151조)」·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제152조~제167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특색으로서는 주석의 권한축소,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강화, 국방위원회의 분리·승격과 국가기관의 임기조정(5년으로 통일) 등을 들 수 있다.

권력구조 개정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1)최고인민회의의 경우에는 그 권한의 내용으로서 「주석소환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위원들의 선거·소환권」· 「조약의 비준·폐기권」 등이 추가되고(제91조), 최고인민회의에 두는 「필요한 위원회」로서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외교위원회·통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여 종전보다는 확대되었으며(제98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대하여도 종전의 불체포권 외에 「처벌받지 않을 특권(제99조)」이 추가되어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반면에 최고인민회의의 의사정족수에 대하여 종전의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이상」에서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참석(제93조)」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강화에 따른 만약의 사태에 대한 미연의 견제장치로서 판단할 수 있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에 대하여는 「국가

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제105조)」고 규정하여 종전의 「국가주권을 대표한다」는 규정을 수정하여 주석의 헌법상의 지위를 축소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 인정되던 국방에 대한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의 당연 겸직 및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무력의 지휘·통솔권」은 국방위원장에게 이관되었으며(제113조), 「외국주재 외교대표의 임명·소환의 발표권」이 그 권한으로 추가되었으나 종전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권」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의 공포권」으로 변경·축소되었고(제107조), 주석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소환하도록 하였고(제91조), 또한 주석의 종전 권한 중에서 중앙인민위원회의 직접 지도규정은 주석의 제의없이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위원들을 최고인민회의가 선거·소환하도록 하면서 국방위원회의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의 선거·소환에 대하여도 국방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최고인민회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1조).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종전에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하나에 불과하던 것을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수행하던 군사와 관련한 권한·기능을 이관·일원화하여 1992년의 북한헌법이 「국가주권의 최고군사기관(제111조)」으로서 분리·독립시킨 것이다. 1992년의 북한헌법이 규정한 국방위원회의 권한·기능으로서는 「일체 무력의 지휘·통솔권」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되어 있고(제113조),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중요 군사간부의 임명·해임」·「군사칭호의 제정·수여」·「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의 권한(제114조)과 「결정·명령」을 발하는 권한(제115조)이 국방위원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반면에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6조).⁴²⁾ (4)중앙인민위원회에 대하여는 종전과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중앙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에 있어서 군사에 관한 규정이 국방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을 지도하며,

42) 북한의 「국방위원회」제도는 1982년의 중국헌법이 「중앙군사위원회」제도를 두고, 중앙군사위원회가 전국의 무장력을 지도하도록 하여 군통수권을 국가주석으로 부터 분리한 것과 유사하다(장명봉, “북한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북한연구(1993년 봄호, 제4권 1호), 대륙연구소, 122면).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는 규정(제120조제4호)과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는 규정(제120조제9호), 그리고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를 지도하는 권한이 신설되었다(제160조·제166조). (5)기타 정무원, 지방주권기관으로서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제133조·제141조),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지방행정경제위원회(제147조), 사법기관으로서 재판소와 검찰소가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하여도 종전의 규정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다만, 지방인민회의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국가 법집행을 위한 대책수립」·「해당 행정경제위원회의 부위원장 등의 임명·해임」의 권한이 신설되고(제136조), 그 의사정족수가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강화되었다(제138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종전의 「지방행정위원회」가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별도의 장으로 규정되었고, 사법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재판소장·중앙검찰소장의 임기가 신설되어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되고(제153조·제163조), 판사·인민참심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각급 재판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제153조제2항),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가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지도를 받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60조·제166조).

다섯째로, 1972년의 헌법은 「국장·국기·수도」만을 규정하였으나, 1992년의 북한헌법은 제7장 「국장·국기·국가·수도(제168조~제17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제170조)」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국장」의 조항에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삽입하였다(제168조). 「백두산」의 헌법규정에의 삽입은 김일성·김정일 일가의 적통 의식을 명문화하여 헌법의 권력구조부면에서 시도한 김일성·김정일 쌍두 체제를 상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1992년의 북한헌법은 그 해석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변화를 찾기 어렵지만, 대외개방정책과 권력구조의 변화가능성이라는 헌법규정에 근거한 입법 방향은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향후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2년 4월 8일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북한의 초미의 관심사가 「핵문제」에 귀결되었고, 특정부문(예:경제관계)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입법 의

에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다. 다만 이 시기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들은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 종전의 주체사상의 이념강화일색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입법형식이 그 내용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憲政關係分野

이 시기(1992.4.9~현재)의 헌정관계의 입법동향에는 특이할 사항이 거의 없다. 다만, 헌법개정과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조직개편과 남북통일문제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을 뿐이다.

3. 行政關係分野

이 시기에 제정 및 개정된 행정관계분야의 법령들은 그 기간에 있어서 짧기도 하지만, 「핵문제」와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사망으로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 경향이 있다.

행정일반부문의 「수도건설기념훈장과 수도건설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1992.6.24)」, 「농촌테제발표30돛기념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1994.1.5)」, 농림수산부문의 「농약관리규정(1992.6)」·「산림법(1992.12.11)」·「산림법시행세칙(1993.3)」, 건설부문의 「수리시설관리규정(1992.7)」·「공공건물관리규정(1992.10)」·「상하수도관리규정(1993.7)」·「건설법(1993.12.10)」, 교통부문의 「수상운수에 관한 규정(1992.10)」, 문교부문의 「문화유물보호법(1994.4.7)」 등이 그 예이다. 다만 국방부문의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1993.3.8)」와 같은 규정은 이 시기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1993년 3월에 제정된 「과학연구 및 새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규정」은 '선진과학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의 개혁'이라는 헌법 제50조의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民事 및 刑事關係分野

이 시기에 있어서 민사 및 형사관계법의 분야에는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이 거의 없었다. 다만 1994년 5월 25일에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입법목적에 종전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라는 표현이 삭제되는데 그칠 뿐 큰 변화는 없었다. 1992년의 헌법개정과 20여년의 기간경과에 따른 합리적·정비적 차원의 개정이 있었을 뿐이다.

5. 經濟 및 社會關係分野

북한의 경제 및 사회관계법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1992년의 헌법의 개정 이후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헌법상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의 보장'(제16조)과 '외국인·외국법인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의 장려'(제37조) 규정의 구체화를 위한 경제관계법령들은 「핵문제」라는 한계적 상황에서도 꾸준히 제정 및 개정되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외경제개방정책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⁴³⁾들로서는 「외국인기업법(1992.10.5)」·「외국인투자법(1992.10.5)」·「합작법(1992.10.5)」·「합영법시행세칙(1992.10.16)」·「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세칙(1993)」·「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1993.1.31)」·「외화관리법(1993.1.31)」·「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1.31)」·「외국투자은행법(1993.11.24)」·「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1993.11.29)」·「세관법(1993.12)」·「개정합영법(1994.1.20)」·「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1994. 1.21)」·「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1994.2.21)」·「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1994.3.27)」·「자유무

43)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주요내용은 1994년에 본원에서 발간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에 상세하게 해설되어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역항규정(1994.4.28)」·「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1994.6.14)」·「외화관리법시행규정(1994.6.27)」·「상업법(1992.4.9)」·「토지임대법(1993.10.27)」·「토지임대법시행규정(1994.9.7)」,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1993.12.30)」 등이 있다.

第3章

北韓의 憲法用語의 概念糾明

第3章 北韓의 憲法用語의 概念糾明

I. 北韓憲法用語의 特徵과 概念糾明의 原則

헌법은 어느 법률보다도 정치성이 강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헌법의 경우 그 경향이 짙다. 더욱이 우리나라 헌법과는 달리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헌법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있지 않고 헌법개정절차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북한헌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성격이 정치규범성으로 보다는 정치선언적 기본원리로서의 정치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헌법용어를 분석할 때 그 정치성의 전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인민주권의 원리, 노동당의 권력독점주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적 원리, 사회주의 소유형태 등과 같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전혀 상이한 북한헌법의 구성원리에 대한 비교·고찰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권'이라는 헌법용어가 남북한의 헌법에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에서의 '선거권'은 인민주권의 '인민소환'이 전제된 경우이므로 국민주권과 그 대표성을 뜻하는 우리의 경우와는 그 규범적 의미에서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한헌법용어의 강한 정치성과 이질적인 규범적 의미를 감안하고, 그 개념규명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다만, 우리헌법의 권력구조부문에 해당하는 국가기구편의 경우는 권력구조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용어분류를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므로 예외로 한다).

첫째, 「혁명투쟁」, 「조국광복」, 「민족해방운동」 등과 같은 분단지향성을 반영하는 용어군(用語群)으로 분류한다.

둘째, 「인민(대중)」, 「주체사상」, 「3대혁명」 등과 같은 체제유지성을 반영하는 용어군으로 분류한다. 이 용어군에는 사회주의국가의 일반적 경향

을 보이는 체제고유성을 반영하는 용어와는 달리 북한체제의 강화에 치중하는 단어들이다.

셋째, 「공화국」, 「사회주의국가」 등과 같은 체제고유성을 반영하는 용어군으로 분류한다.

넷째, 「벌리다」, 「호상」, 「장성」 등과 같은 언어이질성을 반영하는 용어군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의 단선적인 언어정책추구의 결과, 우리의 법률용어사용례에서 찾아 보기 힘든 단어들이다.

<4가지 유형에 속하는 용어군>

구 분	용 어
분단지향성을 반영하는 헌법용어	혁명투쟁, 제국주의, 조국광복, 해방, 평화 통일,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공화국복방부, 계급해방, 민족해방, 조국보 위의무
체제유지성을 반영하는 헌법용어	인민(대중), 혁명정권, 자유, 사람중심의 세 계관, 주체사상, 자주성, 주인, 압박, 사회 제도, 자주노선, 3대혁명, 인민정권, 동지, 령도, 적대분자, 사회주의제도, 군중로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3대붉은기쟁취운 동, 사회주의 법무생활, 자립적민족경제, 사 상의식, 세금, 인민경제, 기술혁명, 농촌기 술혁명, 실업, 대안의 사업체계, 계획의 일 원화, 계획의 세부화, 사회주의적 문화, 문 화혁명, 혁명적문화, 문화적 침투, 복고주 의, 주체, 혁명적 문화예술, 전취물, 자위적 군사로선, 군중규률, 관병일치, 군민일치,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 사회주의적 생활 규범, 혁명적 경각성

구 분	용 어
<p>체제고유성을 반영하는 헌법용어</p>	<p>공화국, 사회주의국가, 주권, 근로인민,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선거(원칙), 국가주권기관, 소환, 선거자, 대의원, 국가, 착취, 집단주의, 로동계급, 로동계급화, 조선로동당, 인민민주주의 독재, 계급로선, 권리, 국제법, 대외정책, 국가관리(기관), 공민(중), 법,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협동단체소유(권), 생산수단, 은행, 국가소유권, 공장/기업소, 토지, 상속권, 개인부업경리, 개인소유(권), 사회주의 분배원칙, 사회주의사회, 협동농장, 계급적 차이, 공산주의(사회), 로동조직, 로동규률, 로동시간, 민주주의, 농업지도체계, 경제,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 인민경제계획, 국가예산, 재정통제, 사회주의적 소유, 대외무역, 법인, 합영기업, 합작기업, 관세정책,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사회주의 교육학, 공산주의적 인간, 일반교육, 기술교육, 의무교육, 교육체계,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환경보호, 군대, 국적, 거주지, 민주주의적 권리, 민주주의적 자유, 선거할 권리(선거권), 선거받을 권리(피선거권), 판결, 정견, 정당, 사회단체, 국가의 법(국가법), 집단주의사상,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소, 청원, 로동(권리와 의무), 로동능력, 로동조건, 휴식에 대한 권리, 유급휴가제, 정양, 휴양, 료양소,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 창의고안자, 저작권, 발명권, 창의고안권, 남녀평등권, 산전산후휴가, 결혼, 가정, 결혼등록, 인신의 불가침,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 구속, 체포, 수색, 망명은 다른 나라 사람, 국가재산, 공동재산, 사회협동단체재산</p>
<p>언어이질성을 반영하는 헌법용어</p>	<p>벌리다. 호상, 장성, 자연부원, 부림집승, 자원적 의사, 방조, 군, 창발, 농촌경리, 기업적 방법, 집체적, 축적, 전결하다, 기초과학, 사회과학, 대학, 전문학교, 장학금, 사회교육, 학령전, 탁아소, 유치원, 민족어, 예방의학, 무장력, 군사규률, 산원, 탐오랑비, 배반</p>

Ⅱ. 根本原則編

1. 概要

북한헌법의 제1장 정치(제1조 내지 제18조), 제2장 경제(제19조 내지 제38조), 제3장 문화(제39조 내지 제57조), 제4장 국방(제58조 내지 제61조) 등은 북한헌법의 근본원칙으로서 우리나라 헌법 총강에 해당된다.

북한헌법은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헌법에 맞는 최고규범성에 많은 의문이 가지만, 기본권보장과 권력구조에 관한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근본규범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북한헌법의 근본원칙을 우리 헌법의 전문이나 총강과 비교할 때 정치·경제·문화·국방 등에 있어서 인민주권의 원리, 노동당의 권력독점주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리, 사회주의 교육형태 외에 국가와 인민의 기본의 무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헌법이 체제유지 내지 사회주의 혁명전통의 고수를 강하게 지향하거나 집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헌법의 태도는 이 부분의 헌법용어 중 ‘분단지향성’을 반영하는 용어들이 많다는 점에서 뚜렷히 드러나는데 「혁명투쟁」, 「제국주의」, 「해방」,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민족해방운동」, 「계급해방」, 「자위적 군사로선」, 「군민일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헌법 근본원칙편의 주요 헌법용어를 분단지향성, 체제유지성, 체제고유성, 언어이질성 등을 반영하는 용어별로 구분하여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2. 分斷指向性を反映하는 用語

○ 혁명투쟁

모든 계급적·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 인민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혁명은 「사회의 개조,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같은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정치·경제·문화 및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낡은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변혁을 「혁명」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들은 혁명의 종류를 사회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사상혁명으로 나누고 「착취사회에는 착취와 압박, 민족적 예속과 불평등이 있기 마련인데, 인민대중이 민족적 또는 계급적 예속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자주성을 찾기 위해서는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 사회혁명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같은 사고방식은 유물변증법에 입각한 것으로서 북한은 「자본주의사회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북한주민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1973년 외국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모든 혁명투쟁은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라고 단언한 바와 같이, 혁명의 기본문제를 정권문제로 규정하고 혁명투쟁의 본질을 정권을 전취 유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성격도 이같은 유물변증법적인 논리전개에 의해 미제의 식민지체제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제민족해방혁명」이며 「미제의 앞잡이인 반동통치지배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 인민봉기에 의한 무력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모든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며 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 새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 선진적인 것과 온갖 반동적인 것과의 투쟁을 반영한다. 인민대중이 벌리는 혁명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투쟁이다. 김일성저작선집(27)(조선로동당출판사, 396면) :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 제국주의

착취와 약탈, 침략과 전쟁을 주된 생존수단으로 하는 독점이 지배하는 마지막 단계의 자본주의를 말한다고 한다.

공산주의자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자본주의 최고 최후단계가 「제국주의」라고 하면서 독점자본주의가 더 이상 대내적인 수탈 대상이 없어지면 대외적으로 손을 뻗치게 되고, 자본주의 국가간에 영토 재분할을 위한 전쟁이 발생하여 결국 「제국주의전선」에 약한 고리가 생겨 그것으로부터 혁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제국주의는 멸망하게 되는 최후단계라고 하였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착취와 약탈, 침략과 전쟁을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으며 독점이 지배하는 마지막 단계의 자본주의.</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독점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마지막 단계의 자본주의. 착취와 약탈, 침략과 전쟁을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는다. 이 단계에 이르러 사회계급적 모순과 부패성은 극도에 이른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근원이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자주적 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는 기본적 장애물로서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대상이다.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김일성,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13면). 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79면) :</p> <p>제국주의의 멸망은 력사발전의 객관적 법칙입니다.</p>
------	--

○ 조국광복

외래 침략자들로 부터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는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국광복을 위하여 김일성이 조직한 최초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이 「조국광복회(1936년 5월 5일에 결성 주장)」라고 주장하고, 1937년 1월에는 조국광복의 국내조직으로서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하여 40여개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 수행할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국광복회가 국내에서 활동한 흔적은 없으며, 이 조직자체도 김일성이 조직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10대 강령」도 그 이전에 존재하던 것을 김일성이 약간 수정을 가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2조 :</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조국의 잃었던 빛을 다시 찾는다는 뜻으로 외래 침략자들에게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는 것을 이르는 말</p>

○ 해 방

북한의 “해방”이란 용어는 소극적으로는 외래 침략자 또는 착취계급의 민족적·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어떤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공산주의를 팽창시키는 「무력침공」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헌법상의 “해방”은 소극적 의미의 “해방”을 의미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p> <p>헌법 제29조 :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외래침략자나 착취계급들의 민족적,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것.</p>

○ 평화통일

무력의 행사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것을 「평화통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철학사전」에 의하면 「평화」라는 말은 「전쟁」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입장에 따라서 달리 사용되고 있는데, 『평화일반을 론할 수 없고……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리익과 분리시킬 수 없으며…… 진정한 평화는 오직 략탈전쟁과 노예의 평화를 강요하는 사회제도를 뒤집어

앞을 때 만이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하고, 김일성도 또한 『노예적 굴종이 가져다 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의 파괴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이 말하는 「억압자 또는 압제자」란 부르조아정권을 말하므로 부르조아정권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평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이다. 즉 부르조아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공산당의 혁명투쟁은 때로는 평화적 방략(方略)에 의하여 또 때로는 전쟁과 그밖의 폭력수단에 의하여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투쟁기간속에 설사 전쟁아닌 무전쟁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평화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평화」는 우리의 자유민주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휴의 뜻을 내포하고 있고 적화야욕실현에 유리한 조건조성을 위한 구실이라고 하겠다. 또한 북한의 「통일」은 대립물(對立物)의 투쟁에 의한 쟁취물로 간주하여 남북통일은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북한공산주의의 대립·투쟁에 의하여 얻어지는 결과라고 보는데, 이것은 『모든 사물과 현상은 그 자체의 내적모순요인에 의한 대립물의 투쟁에 의하여 발전하며 그것은 일정한 단계에서 통일된다』는 유물변증법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관에 따르면 한반도의 내적모순 요인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관계이므로 이러한 모순관계는 조화적, 화해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가 소멸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발전법칙에 따라 해결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평화통일은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일어난 후에 새로이 수립된 혁명정권이 남북합작으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9조 :</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p>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무력행사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 평화통일은 우리당의 조국통일3대원칙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	--

○ 조국통일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영토와 인민을 되찾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분단된 남북한을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북한은 1961년 9월 4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자주·평화·민주」의 조국통일 3개원칙을 통일문제의 기본원칙으로 주장하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한간 합의에 따라 서울(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평양(제2부수상 박성철)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7·4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수정하여 대남선전공세에 활용하여 왔으며, 그후 북한은 1973년 6월 23일 체코공산당 서기장 후사크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조국통일5대강령」으로서 ①남북한간 군사적 대치 및 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 완화 ②남북한간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실현 ③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④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 ⑤단독 유엔가입반대 및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공교롭게도 한국이 평화통일의교정책을 선언(6·23선언)한 바로 그날 발표된 것으로 주한미군철수와 남북한간 긴장상태 완화를 강조, 한국의 군사력 약화를 기도하는 한편 대민족회의 소집을 요구하므로써 통일전선전략에 입각, 한국내외 반정부세력들과의 제휴로 연립정부를 수립, 적화통일을 획책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 제안이 있는지 2개월만인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고 말았다.

<p>관계법조</p>	<p>헌법 제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것.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로서 우리 인민 앞에 제기되고 있는 최대의 민족적 숙원이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며 우리세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이다.</p>

○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파하여 온 사회가 노동계급화 되고, 계급이 없는 사회이며,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평등한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이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완전한 사회정치적 평등과 유족한 문화생활이 보장되며, 사회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에 자본주의로 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가 끝나고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로서 점차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이행하는 사회라고 한다.

<p>관계법조</p>	<p>헌법 제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한 사회의 실현. 온 사회가 노동계급화되며 계급이 없는 사회이며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평등한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p>

북한용례	<p>모든 사회 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 평등과 유족한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없�지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 국내적으로 자본주의 복귀의 위험이 없�진 사회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나고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며 점차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는 사회이다.</p> <p>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가 없�지고 중산층, 특히 농민대중이 우리를 적극 지지하게 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 10면).</p> <p>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준동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차이가 남아 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 있지 못한 사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3면).</p> <p>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사회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3~44면)</p> <p>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38면).</p> <p>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 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입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61면).</p>
------	---

<p>북한용례</p>	<p>농촌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인 하나입니다(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2면).</p> <p>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며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3면).</p> <p>김일성저작선집(9)(조선로동당출판사, 473면) :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며 전체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 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입니다.</p>
-------------	---

○ 공화국 북반부

북한의 지배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데, 북한은 이지역을 전국토에서 민족해방의 위업, 즉 조국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기지라고 한다.

북한은 남북통일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의 헌법이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1992년의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문화, 기술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재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보충하여 「전국적 범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에서의 3대혁명에 의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강조함으로써 향후 대남전략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당규약 등 여전히 1972년의 헌법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바, 결국 북한은 그들의 무력통일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를 줄여 이르는 말. 공화국 북반부는 우리나라의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수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혁명기지이다. 김일성저작선집(21)(조선로동당출판사, 501면) : 공화국 북반부는 전국에서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기지이며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력량은 전조선혁명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p>

○ 계급해방

착취계급에 의한 계급적 예속과 정치적 지배로부터 피압박·피착취계급을 해방하는 것, 즉 노동계급이 계급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제도를 전복하고 사람에게 의한 사람의 착취와 억압을 영원히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계급해방은 폭력적 정치투쟁만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일성도 「남조선혁명」을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여 「민주연합정부」라는 인민정권을 수립할 때에 진정한 「계급해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17조 :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p>
--------------	---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착취계급에 의한 계급적 억압과 정치적 지배로 부터 피압박, 피착취 계급을 해방하는 것. 계급해방위업은 최후의 착취제도이며 계급적 지배와 민족적 압박을 결합시킨 횡폭한 억압제도인 자본주의를 청산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중국적으로 실현된다.</p>
-------------	---

○ 민족해방(운동)

공산주의적 민족론에 입각한 민족의 해방운동으로서 계급사회에서는 민족도 계급적 성격이 나타나며 민족의 이익은 지배계급, 즉 유산계급의 이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민족내의 지배계급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족해방운동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7조 :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예속국가 인민들이 외국침략자를 몰아내고 나라와 민족을 침략자들의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는 것.</p>

3. 體制維持性을 反映하는 用語

○ 인민(대중)

국가를 구성하고 사회에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로 되는 사람들로서 혁명대상을 제외한 노동자·농민등의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북한의 「인민」은 자유국가의 「공민(公民)」과 같지 않다. 「인민」일 수 있는 자격은 최소한 남을 착취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즉, 지주(地主), 자본가, 관료, 종교가는 착취분자로 보기 때문에 인민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북한사회가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착취가 제도적으로 근절된 사회주의사회」라면 마땅히 북한주민은 일률적으로 인민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규정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분류된다.

헌법상 「인민」일 수 있는 사회적 범주는 종래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등의 「근로인민」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행 1992년 헌법은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병사를 삭제하고 「모든 근로인민」을 추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현실이 병사를 노동계급으로 보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모든 근로인민」을 추가한 것은 근로인민이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별개의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의 중심으로서 포괄적 개념으로 보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인민」은 이처럼 헌법에 규정한 「근로인민」을 의미하지만, 어떤 특정인이 인민인가 아닌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그가 수령과 당에 충성을 다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아무리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이 좋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그가 수령과 당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지 않거나 특히 반대하는 자는 「인민」이 아닌 반동분자로 낙인찍힌다. 결국 북한에서 주민동향을 사상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추적하는 이유는 「인민」인 자와 「인민」일 수 없는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p> <p>헌법 제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p> <p>헌법 제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민 : 나라를 이루고 사회에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주체로 되는 사람들. 혁명대상을 제외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계급층의 모든 사람들이 포괄된다. <수령의 령도를 받거나 국가원수나 국가수반의 정치를 받으면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령이나 국가수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인민대중 : 력사의 주체, 사회적 운동의 주체로 되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통털어 이르는 말.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력사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며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부도 인민 대중에 의하여 창조된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요인이다.

○ 혁명정권

혁명적 인민의 참된 대표로 조직되며,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인민의 정권을 말한다고 한다.

북한의 헌법은 북한을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조선혁명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며 류레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귀중한 혁명적 재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같은 「혁명전통」을 김일성의 「항일빨찌산전통」으로 각색(脚色), 이를 북한정권의 「혁명적 정통성」의 근거로 삼아 「주민사상교양」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1930년대에 김일성이 장백산맥을 중심으로 항일유격투쟁을 했다고 조작한 김일성의 「략전」(略傳)학습, ②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날조선전, ③「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 ④김일성의 혈통을 미화하는 「혁명가계」날조·선전 등이다. 북한은 이러한 「혁명전통교양」을 통해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 복종,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당적(黨的) 원칙성 견지, 혁명적 동지애의 고취 등을 강요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혁명적 인민의 참된 대표로 조직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인민의 정권을 이르는 말.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정권건설로선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 창건되고 공고발전된 우리의 인민정권은 전체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혁명정권이다.

○ 자유(≠자유주의)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본주의사회의 「자유」와는 다르다.

예컨대, 북한은 “개인의 자유를 무원칙하게 내세워 조직생활과 조직규율을 싫어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낡은사상”을 「자유주의」라고 정의하면서 북한은 “조직의 결정과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원칙하게 행동하며 양봉음위(陽奉陰僞), 즉 겉으로는 받드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반대하며 회의할 때에는 다 좋다고 찬성하고도 그 자리를 떠나면 딴 짓을 하는 것들은 다 자유주의적 경향”이며, 이러한 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의 산물로서 착취계급의 사상’ 이라고 하여 이러한 「자유주의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통제와 감시를 받게된다. 즉, 북한의 「자유」는 집단생활에 기초한 개념으로서 이러한 집단생활에 위배되는 현상과 표리부동한 행동을 「자유주의」로 보아 「자유」와 「자유주의」는 구별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면) : 어떠한 지배와 예속도 받지 않는 것 또는 그런 상태(인민의 자유와 행복). 남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자주적 요구와 결심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 또는 그런 환경(자유 의사, 신소와 청원의 자유). 법적으로 담보되어 있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민주주의적 요구를 마음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p>

○ 사람 중심의 세계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북한의 소위 “주체사상”의 기본원칙을 1992년의 북한헌법에 처음으로 구현한 것이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헌법 제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헌법 제13조 :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 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p>
--------------	---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수령과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며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조직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대상은 간부들, 당원들, 군중들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노동계급의 당사업의 기본이다. 모든 것이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인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모든 것을 보고 대하는 것. 사람의 리익으로 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것. 자연과 사회에 대한 견해의 총체, 곧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의 체계. 현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를 규정하며 그들의 인식과 실천활동을 제약한다.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만 현실을 똑바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실천활동을 정확히 벌려 나갈 수 있다. 계급사회에서의 세계관은 계급적 성격을 띤다. 김일성저작선집(30)(조선로동당출판사, 532면) : 사람과의 사업이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수령과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며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조직정치사업을 말합니다.</p>
-------------	---

○ 주체사상

북한의 김일성이 창간한 통치사상으로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이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서 「주체」가 거론된 것은 김일성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대파의 숙청을 목적으로 1955년말 「노동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이 「사상에서의 주체」를 역설한 것에서 비롯되는데, 즉 당시 중·소간의 이념대립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계열에서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자 김일성이 「주체」를 대내외의 정치명분으로 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 사상·정치등의 모든 영역의 내용체계로 종합화·이론화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부각하여 마르크스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현시대의 노동계급의 가장 탁월한 지도이념이라고 자처하면서 전주민을 「주

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세계 각국에 「주체사상연구노조」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사상은 구소련·중국 및 서방국가에서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람중심의 완성된 세계관.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로서의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을 주체사상이라고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진수로서의 주체사상은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 사회력사관, 혁명과 건설의 지도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 학설이다. 우리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이며 우리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 100면).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 것이며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것입니다(위와 같은 책, 111면).</p>

○ 자주성

인간은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며 발전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소위 “주체사상”의 정치에서의 지도적 지침을 말한다.

북한은 1966년 8월 12일자 당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당기관잡지인 「근로자」에서 “자주로선을 옹호하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자주성”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당시 중국과 소련의 이념대립속에서 북한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탄생한 대외정책의 일환이었으나 오늘날은 “주체사상”의 지도적 지침

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자주성은 또한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매개 당의 신성한 권리이다.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필수적 요구이며 근본 원칙이다.

○ 주 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소위 “주체사상”의 기본 원칙인 「사람중심의 세계관」의 핵심어로서 국가·조직·집단 등과 관련한 모든 문제(혁명과 건설)를 주동적으로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직접 책임지고 처리할 의무를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처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직접 맡아서 수행할 의무를 지닌 사람 곧 직접적 담당자. 나라, 조직, 집단 같은 것을 주동적으로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책임지고 꾸리고 움직여 나가는 사람. 혁명과 건설을 직접맡아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람이나 조직.

○ 압 박

유산자인 지배계급이 인민의 노동생산물을 독점 또는 약탈하는 체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자주성(인민은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며 발전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주체사상”의 정치에의 표현)을 억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p> <p>헌법 제29조 :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낮은 사회에서 반동적 지배계급이 착취체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자주성을 짓밟고 자유를 억누르는 것.</p>

○ 사회제도

사회생활에서 주민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사회관계의 체계로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사회관계의 총체를 말한다고 한다.

북한의 사회제도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국가로서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민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공산주의국가간의 이념대립과 동구공산권의 몰락에 영향을 받은

북한이 자신의 체제유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논리라고 할 것이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사회관계의 공고한 체계.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 있는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관계등의 총체를 말한다. 사회제도는 주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로 이루어진다. 사회제도의 성격은 그 사회에서 지배권을 어느 계급이 쥐고 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p>

○ 자주노선(=자주적 대외정책)

모든 예속을 벗어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자력으로 처리하는 것을 「자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외 정책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자주노선(자주적 대외정책)」이다.

북한이 「자주노선」선언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1966년이며 이 시기가 북한 자주외교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사설에 「자립성을 옹호하자」를 통하여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다같이 공격함으로써 중·소관계에서 불편부당의 입장을 고수하려 하였다. 그 내용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실정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을 이룩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주적 대외정책을 표명하게 된 것은 ①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 끼어 어느 편에도 붙을 수 없는 궁색한 입장을 모면해 보자는 것, ②중·소대국주의 내정간섭으로 부터의 자기방어, ③독립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위신 제고, ④사회주의 공업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중·소양국으로 부터의 실리추구 등을 들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p> <p>헌법 제17조 :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온갖 예측을 반대하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처리하는 것 또는 그러한 척. 정치에서의 자주는 민족독립의 필수적 요구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제일 생명이다.</p>

○ 3대혁명(사상혁명 · 기술혁명 · 문화혁명)

북한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북한에서는 노동·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주민이 생활의 기본행동원칙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3대혁명의 내용으로서 「사상혁명」은 전사회를 혁명화·노동계급화라는 인간개조사업으로서의 정치사업이므로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인식되어 가장 중시되고 있고, 「기술혁명」은 공산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물질적 요새점령을 그 내용의 핵심으로 삼아 낡은 기술을 새기술로 바꾸고 손노동을 기계화·반자동화·자동화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줄이는데 그 당면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문화혁명」은 노동계급의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의 하나로서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 즉 근로자들에게 기술문화지식을 보급시켜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3대혁명」은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재무장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1인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p> <p>헌법 제1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 ...사상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3대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사상혁명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p> <p>김일성저작선집(9)(조선로동당출판사, 393면) : 사상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이다.</p>

○ 인민정권

인민대중이 자기의 정치적 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운 정권, 즉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정권으로서 우리의 자신의 실정에 맞고 우리 인민 자신이 선택한 주체적·자주적인 정권이라고 한다.

북한은 북한의 인민정권을 혁명투쟁을 이룩한 전통을 이어받은 인민혁명정부의 직접적 계승자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서 「혁명투쟁」은 모든 계급적

· 민족적 연속에서 벗어나 인민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하고, 「혁명전통」은 맑스· 레닌주의 이론을 조선혁명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며 류레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귀중한 혁명적 재부라고 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된 힘에 의거하는 로동계급의 정권. 인민정권은 력사상 전혀 새로운 형태의 로동계급의 정권이다. 인민정권은 인민혁명정부의 직접적 계승이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인민대중이 자기의 정치적 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운 정권.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정권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우리 인민 자신이 선택한 주체적이며 자주적인 정권이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력사상 처음으로 나온 혁명정권으로서 우리 인민의 오랜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인민정권건설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며 유격근거지들에 조직되었던 인민혁명정부의 직접적 계승이다. 인민정권은 본질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으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한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이며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옹호자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것이 인민정권의 기본사명이다.</p> <p>이 정권 기관의 특징은 인민자신이 자기의 손으로 조직하였으며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권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정권기관은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자기사업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참가시키면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사업하는 정권기관입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제국주의의 주구이며 그 세력을 부식하는 지주, 연속자본가들과 친일파, 친미파, 민족반역자들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자체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142면).</p>

북한용례	<p>김일성저작선집(9)(조선로동당출판사, 39면) : 우리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에 의거하는 정권으로서 력사상 처음으로 나온 새로운 형태의 혁명정권입니다.</p>
------	--

○ 동 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특히 북한에서는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투쟁하는 혁명가로서 혁명전우간에 일컬어지는 영예롭고 고귀한 칭호이며, 믿음과 사랑의 표시라고 한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1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동지는 로동계급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대오에서 함께 투쟁하는 혁명가를 말한다. 동지라는 말은 혁명전우들 사이에서 불리우는 영예롭고 고귀한 칭호이며 혁명전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시로 된다. 김일성저작선집(28)(조선로동당출판사, 138면) : 동지라는 말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 다시 말하여 사상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을 가리켜 동지라고 부릅니다.</p>

○ 령 도

어떤 계급·조직 또는 인민대중을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지도·통솔하여 나아가는 것, 즉 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며 강력한 정치적 역량화 하고, 이들을 투쟁으로 조직·동원하여 승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1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p> <p>헌법 제1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이끌고 나아가는 위치에 서서 어떤 계급이나 조직 또는 인민대중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것. 곧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며 강력한 정치적 역량으로 만들고 그들을 투쟁으로 조직동원하며 승리에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p>

○ 적대분자

혁명과 노동계급의 이익과 관련하여 적대되는 관계에 있거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반혁명분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하며 감시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제조사를 통하여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의 3대계층·33소계층으로 분류하여 성분분석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서 적대계층으로 지주, 자본가(일제시), 폭동연루자, 치안대가담자, 경찰복무자, 자치회관계자, 처단자가족, 체포자가족, 간첩연루자, 종파연루자, 출소자 및 가족, 종교인 및 가족, 출당자 및 그 가족, 월남자가족, 행방불명자가족, 실직자, 감직자, 귀환병과 그 가족, 군입대기피자와 그 가족, 불평불만자와 그 가족, 해방전사, 절도상습자, 풍기문란자, 귀국자, 의거자, 전직자, 특수계층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51계층으로 분류하고 반대세력을 미리 파악하여 유사시 대비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12조 :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혁명과 노동계급의 이익에 적대되는 관계에 있거나 적대적인 짓을 하는 반혁명 분자.</p>

○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1960년 2월에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현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현지도」하면서 경제활동에서 종래 실시되어오던 당 및 국가, 기타 경제 각 기관들의 지도체계와 활동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제도를 창조할 것을 지시한데서 비롯된 북한 경제관리의 기본지침을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중노선에 기초한 노동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대중지도원칙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과학적이며 공산주의적 대중지도사상이며 방법」이라고 한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활동에서 정치활동을 선행, 노동자 각자의 열의와 창의를 발휘시킬 것,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할 것, 항상 현지실정을 감안, 문제해결을 모색할 것, 모범을 창조하고 이를 일반화하며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부시켜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을 것 등이다. 「청산리방법」은 당초 농업분야에서 출발했으나 이제는 북한의 모든 경제부문에서 기본적인 지도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취지는 근로대중들의 노동관리에 군·당이 보다 깊숙하게 개입해 노동통제를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13조 :</p> <p>국가는 군중노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p>
--------------	--

○ 사회주의 제도

근로인민대중이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됨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제도로써, 모든 사람들이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자주적·창조적으로 살고자하는 노동계급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사회주의제도는 원래 소위 공산주의적 사회경제구성형태의 낮은 단계의 사회로서 일체의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화에 기초한 사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공산주의사회 이전의 낮은 단계라고 하는 것은 소유형태가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두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제도는 자신의 체제강화를 위하여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내용을 변경했을 뿐이고,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 즉, 생산수단의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주민을 집단생활의 틀 속에 엮매어 놓고 있으며, 불평등 분배의 계급사회를 고의적으로 형성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2조 :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의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p> <p>헌법 제64조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제도. 모든 사람들이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려는 노동계급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제도를 말한다.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은 그것이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제도라는 데 있다.</p>

○ 군중로선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대중의 창조적 지

혜와 힘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노동계급의 당활동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군중노선은 실제로 주민대중을 철저히 감시·통제하고, 회유·포섭하여 1인 독재체제에의 무조건 복종을 강조하기 위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13조 : 국가는 군중노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의 힘과 창조적 지혜를 적극 발동시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맑스-레닌주의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다. 군중노선의 기본요구는 첫째로 인민대중을 한없이 사랑하고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는 것이며, 둘째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혁명의 편에 전취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대렬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해나가는 것이며, 셋째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해결에서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군중노선의 이러한 기본적 요구들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군중속으로 들어가고 군중을 위해서 복무하고 군중을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어 군중이 자기의 요구를 자기의 투쟁으로써 견지하고 관철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군중관점에 기초하고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 세우며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노동계급의 당활동 원칙.</p> <p>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298면) :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 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당의 일관된 군중노선입니다. 군중노선을 구현하려면 한편으로는 당의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군중의 정치 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p>

○ 3대붉은기쟁취운동

1960년대의 천리마운동(1956.12 당중앙위 전원회의서 제시)의 뒤를 이어 나온 것으로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경쟁운동을 말한다.

이러한 「3대붉은기쟁취운동」은 1975년 11월 당중앙위 5기 11차 전원회의(11.19)서 결정되어 같은 해 12월 1일 함남 단천군 검덕광산에서의 쫓기모임을 통해 북한의 모든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으로 확산시킬 것을 호소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호소를 지지하기 위하여 12월 2일에는 청산협동농장(남포)에서, 3일에는 평양시에서, 그리고 4일에는 대안중기계공장(남포)서 잇따라 쫓기모임이 개최되었고, 1976년 3월 과학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운동의 본질적 성격과 특성 및 3대혁명추진의 이론적 합리성을 체계화했으며, 1977년 9월에는 이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중앙과 도·시·군에 「붉은기 수여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별로 학생들의 운동추진실적을 기록하는 「충성의 등록장」제도를 실시했으며, 매월 실천목표와 실행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붉은기 수여에 관한 세칙」이 제정되었으며, 선구자대회(1986.11) 및 경험토론회(1987.11) 등 각종 집회를 개최하여 이 운동을 새로운 대중적 사상·기술·문화 개조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왔다.

「3대혁명 붉은기」는 김일성·김정일부자의 생일과 당창건기념일 및 정권수립기념일,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중앙인민위 정령」을 통해 수여되는데, 최근 발표된 「3대혁명 붉은기」 수여대상의 특징을 보면 농업 및 생필품 생산직장이 매년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주민생활난 타개를 위해 식량 및 생필품증산을 도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당면 현안인 원자재·에너지·수송·과학기술 분야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 이들 분야 노동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붉은기」 수여대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예우조치를 하는데, 「붉은기」 수여단위의 성원들을 「3대혁명기수」로 호칭하여 3대혁명 명예회장을 달고 다니도록 하고 축하모임·경험토론회 등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 행사시에는 「붉은기」 수여 단위를 앞

자리에 서게하고 모범적인 「3대혁명기수」를 주석단에 앉히며 혁명전적지 담사와 평양건축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것 등이 대표적이 예이다.

북한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완성할 때까지 끌고 나가야 할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천리마운동이 사회주의건설 총노선이라면 이 운동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총노선이라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14조 :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다그치기 위한 높은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중심과업으로 하고 속도전, 사상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와 경제, 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 혁신을 밀접히 결합시켜 밀고 나가는 천리마작업반 운동의 심화발전으로서 우리나라 대중운동의 높은 단계이며 더욱 발전된 형태이다.

○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모든 성원들이 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법의 강화를 주장한 이래로 김정일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교시를 내리고, 북한 법학자들이 이 교시를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본질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 또는 「주체의 법이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위대한 사상이론」이라고 격찬하면서 사회주의 법무이론은 주민대중의 법생활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즉, 「사회주의법무이론」은 사회주의 건설에 준법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시한 단순한 내용이지만, 북한법학자들이 이것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입각한 법사상이라고 미화하면서 1987년의 북한형법에 있어서 형사정책의 기본방향인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

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제3조)」는 규정으로 법무생활의 준법교양과 대중노선에 입각한 사상투쟁과 균중적 투쟁내용으로 입법화되기에 이르렀고, 또한 북한의 1992년 헌법에 명문화되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실천·지도하기 위한 기관으로는 중앙에서 부터 도·시·군에 이르는 각급인민위원회까지 일정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는 형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형태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 관리의 기본 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는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것.</p>

○ 자립적 민족경제

인적·물적 생산자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민족 국가내부에서 자체 생산물의 생산·소비를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헌법 제2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헌법 제38조 :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p>
----------------------	---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며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경제. 자체의 힘으로 움직이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종합적인 경제이며 자기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하는 인민적인 경제이다. 다시 말하여 생산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자체로 보장할 뿐 아니라 민족국가 내부에서 생산소비적 련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하여 나가는 경제체제이다.</p> <p>김일성저작선집(9)(조선로동당출판사, 395면) :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자기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립적 민족경제는 자체의 힘으로 움직이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종합적인 경제이며 자기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는 인민적인 경제이다.</p>
------	--

○ 사상의식

현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 또는 태도를 반영한 의식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요인을 말한다.

1970년 11월 5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이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의식영역에 까지 자본주의를 중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노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밝힌 이래로 과거 사회제도의 사상잔재와 생활습성 등을 청산케하고, 공산주의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상, 정신적 여러 특질과 가치의식, 품모 등을 확립한다는 목표아래 사상혁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사상혁명은 오늘날까지 기술혁명, 문화혁명과 더불어 3대혁명의 하나로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사상혁명의 근거를 이루는 것이 「사상의식」이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23조 :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현실과 그에 대한 자기의 입장, 태도를 반영한 의식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여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요인.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 기본은 계급의식이다. 김일성저작선집(30)(조선로동당출판사, 538면) :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합니다.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근로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커집니다.</p>

○ 세금

국가가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그들 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라고 한다.

북한은 세금을 국가가 공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고, 1974년 4월 1일 이후로 북한에서는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폐된 세상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2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얻기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들로부터 그들의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돈. 국가와 함께 국가의 공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났다. 세금의 본질과 사명, 역할은 사회제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1974년 4월 1일부터 노동자, 사무원들의 얼마 안되는 소득세마저도 완전 철폐됨으로써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p>

○ 혁명적 문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함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노동계급적 문화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지향이 반영되고 있고,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진보성이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에 맞게 계승·발전되어 있으며, 노동계급의 혁명투쟁과정에서 창조·발전되어온 문화라고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4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로동계급의 혁명적 지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하고 진보적인 것을 로동계급의 역사적 사명에 맞게 계승발전시키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정에서 창조발전된 문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새로운 로동계급적 문화이다.</p>

○ 인민경제

인민이 주권을 가지고,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인 나라에서(사회주의국가) 사회생산물의 생산·분배·유통과 관련된 부문 및 그 밖의 사회적 노동이 투하되는 모든 부문들의 종합체로서 한나라의 경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이 포함된다고 한다.

즉, 북한의 「인민경제체제」란 공산독재정권이 일체 생산수단을 국가적 소유로 기초하여, 경제를 중앙집권적인 계획으로 조직·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경제형태를 「하나의 큰 사무소, 하나의 큰 공장과 같다」고 말하면서 획일적인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를 계획화하는 것은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것이 아니라, 경제노선과 경제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며, 생산과정의 순조로운 진행보다도 목표달성을 위한 강압적인 시도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 각 부분간의 상호관계를 예견성있게 조절하거나 생산수단의 분배, 각 생산분야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도 목표로 복종시키는 강제성이 발동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균형을 파괴한다. 이러한 인민경제계획은 공산독재정권에 의하여 부단히 의식적으로 조종되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노동자계층의 노력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1992년 헌법은 이러한 인민경제를 다그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추구하며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를 만들고,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세운다는 의미이며,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자기나라의 자원과 자기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발전시킨다는 의미이고,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창비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26조 :</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p> <p>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p> <p>헌법 제27조 :</p> <p>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p> <p>국가는 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p>
--------------	--

<p>관계법 조 항</p>	<p>헌법 제3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 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p> <p>민법 제3조 :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인민이 주권을 쥐고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나라에서 사회생산물의 생산과 분배, 유통에 관계되는 부문들 및 그 밖에 사회적 로동이 투하되는 온갖 부문들의 종합체로서의 한 나라의 경제. 여기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등 사회적 생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부문들과 신용체계, 상업의 대부분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 문화, 과학, 보건 등 비생산부문까지 다 들어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의 주체화 :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 것은 자기나라의 자원과 자기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 인민경제의 현대화 : 인민경제를 현대화한다는 것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말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35), 조선로동당출판사, 326면). ○ 인민경제의 과학화 : 인민경제를 과학화한다는 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분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 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 실 업

자본주의사회에서 일할 능력과 희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잃은 것을 의미하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르크스가 인간의 본질은 「자유로운 생산적 노동」이라고 정의한 이래로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을 신성시하여 노동자를 우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헌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되고, 북한에서의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며,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고 하고, 노동제도에 있어서도 현재 16세 이상 65세까지(여자는 60세까지)의 주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까지 의무노동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근로자의 천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노동은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의 노동동원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의 “실업”이 존재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29조 :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낡은 사회에서 일할 능력과 희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잃는 것.</p>

○ 기술혁명(=공업화)/기술개조/기술혁신(운동)

기술개조(낡은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개조하는 것)와 기술혁신운동(낙후된 기술을 선진기술로 혁신하기 위하여 벌리는 대중적인 사회적 운동)을 통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적 부를 증진시키며, 노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으로 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혁명과정으로서 단순한 기술발전의 과업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으로 부

터 해방시켜 완전한 사회적 평등과 자주적·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과업이라고 한다.

북한은 1961년의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소위 “인민경제 7개년 계획”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서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한다는 내용의 “기술혁명”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이렇다고 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북한은 1970년의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기계화·자동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와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여성노동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3대기술혁명역량강화투쟁」을 전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27조 :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기술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통하여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 부를 증진시키며 노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과업.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실무적 과업이 아니라 일을 헐하게 하면서 더 많이 생산하며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 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정치적 과업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조 : 낡은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개조하는 일. 기술적 개조는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한 다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더욱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게 된다. ○ 기술혁신 :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생산물을 낼 수 있도록) 낡은 기술, 낡은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기계 기술과 선진기술공정을 받아들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주 새롭게 하는 것. 기술혁신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기술혁신운동 : 낙후한 기술을 선진기술로 혁신하기 위하여 벌리는 대중적인 사회적 운동. 소극성과 기술신비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철저히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용례	<p>김일성저작선집(9)(조선로동당출판사, 393면) :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증진시키며 로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p>
------	--

○ 농촌기술혁명(=농업의 공업화)

농업(농촌)부문에 있어서 기술혁명의 구체화한 표현으로서 농촌경리의 수리화·기계화·전기화·화학화를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업생산량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여 그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을 의미한다고 한다.

북한의 이러한 농촌기술혁명은 1964년 2월에 채택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체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과업의 하나로서 농촌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완수를 그 주요과업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은 1973년 8월에 있는 「농업부문열성자대회」에서 수리화와 전기화의 과업은 이미 종료하였고,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언하였으나 최근에 수리화를 촉구하는 현지도 현상사진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28조 :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郡)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그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그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공업, 농업과 같은 인민경제의 어떤 개별적 부문 또는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여 기계화하는 것.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자본주의적 공업화가 있다.</p>

북한용례	<p>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키는 것. 농촌경리의 공업화가 실현되면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 수 있다.</p> <p>김일성저작선집(9/14/18/26)(조선로동당출판사, 479/289/209/149면) : 농업을 공업화한다는 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며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을 공업화하면 농촌 경리를 현대적인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 경리로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 수 있으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p> <p>공업화라는 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기계화하는 것입니다. 즉 기술혁명을 하는 것입니다.</p> <p>농촌기술혁명은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화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p> <p>농촌기술혁명은 농촌경리를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하는 것입니다.</p>
------	---

○ 대안의 사업체계

경제관리에서 균중노선을 구현한 것으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공산주의적 경제관리형태이며,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윗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경제관리체계라고 한다.

북한은 경제관리에 있어서 처음에는 「지배인유일관리제」를 채택하여 지배인이 관리·운영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여 책임지도록 했으나 이러한 제도가 관료주의와 기관본위주의와 같은 개인의 독단과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기업관리에 하부직원의 직접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결함이 대두되자 김일성이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남포시 대안구역)을 방문하여 ①공장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 확립, ②계획·생산·기술을 통일적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생산지도체계 강화, ③기타 후방공급체계 개선 등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가

생겨나게 됐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공업관리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①당의 지도적 역할강화와 경제적 자극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앞세우는 정치사업 우선, ②공장·기업소의 관리운영에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토의와 지도 및 당간부와 지배인의 생산현장지도의 강화가 포함된 군중노선 관철, ③중앙집권화된 계획적 관리와 독립채산제 실시 등을 주요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책임아래 생산활동을 관리하며 공장당위원회에는 당간부·행정간부·지배인·기사장·기술자근로자(생산핵심당원)등이 참여하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하에서 계획작성,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을 기사장의 지도하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며 자재공급사업·후방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경제활동을 지배인의 지도하에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각 부관리국→공장·기업소→직장→생산현장의 순으로 생산을 조직·지도하며 상급기간이 자재를 책임 공급하며, 근로대중의 생활문제를 기업관리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 부식물 공급조차 매우 부진하게 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종합적 후방공급체계로서 「노동자구 경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장후방공급 부지배인을 위원장으로 임명, 근로자들의 물질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의 사업체계」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구호아래 근로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 정치활동을 선행시키는 가운데 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업부문관리형태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도 북한은 1991년 12월 15일 「대안의 사업체계」 발기 30주 기념보고회(총리 연형묵 보고)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해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한 경제관리를 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각급 당조직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사상무장강화를 비롯해 대김부자 충성심제고, 지배인-당비서-기사장의 3위1체, 내실있는 경제기술사업 및 행정조직사업, 기업관리 정규화·규범화, 당경제정책 무조건 관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33조 :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 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대안의 사업체제의 혁명적 본질은 경제관리에서 균중로선을 관철한 것이며 그에 의거하여 객과적 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함으로써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공산주의적 관리체제라는 데 있다. 대안의 사업체제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우선 이 체제가 균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구현한 사업체제라는 데 있다. 균중로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안의 사업체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경제관리체제이다. 대안의 사업체제는 또한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요구와 현대적인 사회주의적 생산의 기술경제적 특성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체제이다. 대안의 사업체제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제입니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32면).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공산주의적 경제관리형태. 대안의 사업체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공산주의적 경제관리형태로서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경제관리체제이다. 대안의 사업체제의 본질은 경제관리에서 혁명적 균중로선을 구현한 데 있다. 대안의 사업체제는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제이다. 김일성저작선집(3/4)(조선로동당출판사, 422/168면) : 지난날 공장관리체제는 사회주의적인 것이기는 하였으나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관리체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료주의적이며 기관본위주의적이며 개인리기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안의 사업체제는 그전의 사업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공산주의적 기업관리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사업체제입니다. 이 새로운 사업체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대안체제란 경제관리에서 균중로선을 구현한 것입니다.</p>

○ 계획의 일원화

중앙에서부터 지방,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 까지 모든 단위의 계획부서들이 당과 국가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객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일원화체계를 이루고, 정무원산하의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인민경제발전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3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계획 부서들이 하나의 계획화체계를 이루고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화 사업을 진행하여 계획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 계획의 일원화는 당과 국가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계획의 객관성과 적극성,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계획화 방침이다. 김일성저작선집(23)(조선로동당출판사, 479면) : 계획의 일원화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가계획기관들과 성, 중앙기관, 도급기관들,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부서들이 하나의 계획화체계를 이루고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 계획의 세부화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앙의 전반적 경제발전계획과 모든 단위의 경영활동을 연계시키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지방, 기업소 등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인민경제발전의 불균형과 장애요소를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균형적 발전법칙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여 나라의 경제를 고도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3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당정책과 객관적 실정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것을 세부에 이르기 까지 다 맞물리는 것. 계획의 세부화 방침은 경제발전에서 불균형성과 자연생장성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고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나라의 경제를 아무런 혼란도 없이 높은 속도로 빨리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계획화 방침이다. 김일성저작선집(25)(조선로동당출판사, 263면) : 계획의 세부화는 국가계획기관들의 직접 전반적 경제발전과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연결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지방 및 기업소들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구체화하여 모든 지표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맞물릴 수 있게 합니다.</p>

○ 사회주의적 문화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노동계급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함에 복무하며,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화를 말하는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라고도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문화는 민족사적 정통성이나 전통문화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다지고 공산사회 실현에 유리한 문화건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른바 민족문화건설 운운은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사회주의적 문화의 창작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형식에 있어서는 민족적 특성과 생활감정에 맞게 표현해야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사상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족문화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북한의 목적은 전통문화는 우리민족의 정신적 뿌리이므로 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을 사회주

의 의식으로 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상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적 민족적 문화건설」은 민족이질화정책의 일환이며 전통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고 하겠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3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으며 근로인민대중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창조되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문화.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로동계급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며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화이다.</p>

○ 문화혁명

북한의 3대혁명의 하나로서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며,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며, 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을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문화적 수요를 훌륭히 충족시키며,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공산주의적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말한다고 한다.

즉, 북한의 문화혁명은 주민의 문화생활영역에서의 강요된 변혁으로서 그들은 근로자들에게 높은 기술문화지식을 소유시키며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생활영역에서의 변혁이며, 그 기본임무는 ①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의 제고, ②혁명적인 문화유산의 섭취와 계승발전, ③사회주의원칙에 입각한 인민교육의 실시, ④지도층에 충실한 간부육성, ⑤사회주의 도덕과 기틀의 확립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대중의 의식구조를 완전히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노동생산능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기능의 주입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4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3대혁명의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며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을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문화적 수요를 훌륭히 충족시키며 낡고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없애고 공산주의적 생산 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말한다.</p> <p>김일성저작선집(30)(조선로동당출판사, 541면) : 문화혁명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사상혁명과 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p>

○ 문화적 침투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전신을 마비시키며, 인민의식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자본주의국가가 자신의 사상·문화·생활양식을 북한에 주입시키는 소위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된 수법의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폐쇄성과 체계유지를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4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p>
------------------	--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 타락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기들의 반동적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들이미는 것. 이는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 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 침략의 길잡이로 되고 있다. 김일성저작선집(25)(조선로동당출판사, 278면) : 문화적 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 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 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여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 타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 있습니다.</p>
-------------	---

○ 북고주의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과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지향과 정서를 이탈하며 사회주의 이전 사회를 찬동하는 사상적 조류라고 한다. 북한은 소위 자신들의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북고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라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p>관계법조</p>	<p>헌법 제4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북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시대의 요구와 노동계급의 혁명적 원칙,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지향과 정서를 떠나서 지난날의 낡고 반동적인 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려 찬미하는 반동적인 사상적 조류. 북고주의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과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지향과 정서를 떠나서 지난날의 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려는 반동적인 사상조류이다(김정일, "문화예술론", 281면).</p>

○ 주 체

주체사상에 있어서 “사상사업”에서의 표현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주민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원동력도 인민대중이라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주체”를 거론하기는 1955년 말의 「노동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이 「사상에서의 주체」를 역설하면서 비롯되었는데, 이러한 당사상사업에서 주체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전후 복구건설시기에 당내 반대파들의 도전으로 인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당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심각한 전통과 관련된다. 즉, 당내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통하여 김일성체제를 확립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후, 중·소간의 이념분쟁이 격화되어 국제공산주의운동대열내에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자 김일성은 「주체」를 대내외의 정치명분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이르러 인민의 전 생활영역의 내용체계로서 종합화·이론화되게 되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50조 :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을 지키다. 다시 말하여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가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해 나간다.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29)(조선로동당출판사, 282면) : 오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주체라는 말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을 표현하는 술어입니다.</p>

○ 혁명적 문화예술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고, 당과 수령의 혁명위업에 따르는 노동계급의 문화와 예술을 말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52조 :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 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며 당과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노동계급의 문화예술.</p>

○ 전취물

투쟁·혁명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말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5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투쟁을 통하여 전취하거나 이룩하여 놓은 것.</p>

○ 자위적 군사노선

주체사상을 국방분야에 구현한 것으로서 스스로의 방위력으로 외국의 침략으로 부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려는 주체적인 방위노선을 말하며 이것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관철한 독창적인 군사노선이라고 한다.

북한은 1950년 12월의 별오리확대전원회의(別午里擴大全員會議)에서 한국

전쟁의 패전요인을 ①민병조직과 같은 예비군을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병력 보충이 어려웠고, 지역단위의 방위체제가 없었다는 점, ②유엔군에게 제공권을 압도당함으로써 수송망의 마비로 군사지원체제가 미약하였으며, 더우기 전선이 북한지역으로 확대되었을 때 지역단위의 방어시설과 대피시설의 준비가 전혀 없어 군수품생산이 불가능했다는 점, ③지휘관들의 전쟁지도 능력의 부족, ④군장비의 낙후성 등으로 분석하고, 이와같은 패전요인의 분석에 따라 1962년 12월 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것이 바로 「4대 군사노선」이었다. 즉, 패전요인중 첫번째에 해당되는 수정이 전인민의 무장화이며, 둘째번 수정이 전지역의 요새화이고, 셋째번 수정이 전군의 간부화이며, 넷째번에 대한 수정이 전군의 현대화이다. 이는 1963년부터 실천에 옮겨졌으며, 북한의 자위적·혁명적 군사노선으로서 ①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계급을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인민의 무장화」, ②전국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요새를 만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토의 요새화」, ③인민군 대열을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모두가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군의 간부화」, ④인민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며 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군의 현대화」가 확립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위적 군사노선의 구현을 통하여 수립되는 강력한 방위체계를 「전인민적·전국가적 방위체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노선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주적 평화통일」이 위장평화공세에 지나지 않으며, 대남 전략목표가 오로지 무력적화통일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5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p> <p>헌법 제60조 :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全民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p>
-----------------------	---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체의 힘으로 자기나라를 지킬 수 있는 믿음직한 방위력을 건설함으로써 원수들의 어떠한 침략도 짓부시고 조국과 인민을 튼튼히 보위하려는 주체적인 방위로선. 주체사상을 국방건설분야에서 구현한 로선으로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 독창적인 로선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민적·전국가적 방위체계 :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요새화하여 원수들의 어떠한 침공도 쳐물리칠 수 있도록 철벽같이 다진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 전인민적 방위체계는 자위적 군사로선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어떤 원수의 침공도 제때에 쳐물리치고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의 독립을 고수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위체계이다. ○ 전인민 무장화 : 우리당 군사로선의 하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어떤 침략자도 소멸할 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 전국의 요새화 : 우리 당 군사로선의 하나.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벽같은 방어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어느 때, 어디로, 그 어떤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단매에 쳐부실 수 있도록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군사요새로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 전군 간부화 : 군대의 간부화란 우리의 매 전사들이 다 지휘관의 능력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당 군사로선의 하나.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잘 단련하고 준비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모두가 다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 전군 현대화 : 우리당 군사로선의 하나. 인민군대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고 최신군사과학과 군사기술로 튼튼히 준비시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다.
-------------	---

○ 군중규율

혁명조직과 그 성원들이 군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율을 말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61조 :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율과 군중규율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p>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혁명조직과 그 성원들이 군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률.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떤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군중규률을 철저히 지키었다.
------	---

○ 관병일치

군대내의 지휘관과 병사가 하나가 되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61조 :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지휘관과 병사가 하나와 같이 굳게 뭉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 항일유격대안의 관병일치의 전통적 미풍은 자랑스러운 혁명적 기풍이다.

○ 군민일치

군과 인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61조 :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결 같은 것.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 나간다. 군민일치의 혁명적 기풍은 혁명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4. 體制固有性を 反映하는 用語

○ 공화국

북한은 자신의 국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줄여서 「공화국」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화국」이란 군주국에 대칭하여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고, 주권기관을 일정한 기간마다 선거하는 국가형태를 의미하지만, 북한의 인민주권(공화국)은 인민소환제도 포함한 조선로동당의 권력통합, 즉 일당독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최고주권기관을 일정한 기간마다 선거하는 국가형태 또는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말

○ 사회주의 국가

종래에는 프로레타리아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 북한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소련과 중국간 이념대립 및 사회주의국가의 몰락과 더불어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할 수 없게 된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주체사상의 자주성을 강조한 것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는 노동계급이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혁명적 폭력으로 뒤집어 엮은 결과 수립된 력사상 전혀 새로운 유형의 국가로서 그 계급적 본질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이며, 전복된 소수의 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고 노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들에게는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와 근로자들 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의거하고 있고, 그의 정치적 기반

은 로동계급의 령도 밑에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근로대중의 공고한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에 있으며, 그 지도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이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여타 사회주의체제와 달리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북한 현실에 적합한 독특한 사회주의를 말하는데, 이러한 용어는 1980년대 이후 북한이 표방해온 이른바 「우리식대로 살자」라는 구호와 연관되어 있으며 구소련 및 동구국가들의 사회주의 포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식대로 살자」라는 말은 지난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서 김일성이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도 우리식대로 해야 혁명과 건설을 곧바로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이래로 1988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우리식」은 항일혁명전통을 고수하는 것이며 「생활도, 생산도, 학습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표방한 것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으로 동구사회주의국가에서 개혁·개방과 함께 탈사회주의 추세가 확산되고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그후, 1990년대 부터는 주민들의 사상무장 강화를 독려하기 위하여 더욱 강조되었고, 1991년 5월에는 김정일이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수령·당·인민대중이 일심단결된 사회주의」라고 개념화 하였는데, 여기에서 「일심단결은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성있는 생활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김일성 부자세습체제의 문제점을 합리화하는 상투적 용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 최근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가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물론 소련 쿠데타 실패 이후 밀어닥친 민주화 및 개방화의 대세와 물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빈곤과 「平祝」(1989.7)이후 유입된 외부사조로 인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와 이탈을 막기 위하여 다급하게 나온 미봉책이라고 할 것이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프로레타리아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 사회주의국가는 로동계급이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혁명적 폭력으로 뒤 짚어 엮은 결과 수립된 력사상 전혀 새로운 유형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계급적 본질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전복된 소수의 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며 로동계급과 농 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들에게는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와 근로자들 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지반은 로동계급의 령도 밑에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 체 근로대중의 공고한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에 있으며 그 지도사상은 맑 스-레닌주의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착취자국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명을 띠고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 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 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공산주의를 건 설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 유와 독립의 가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6면).</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 기능 을 수행하는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로동계급이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혁명적 폭력으로 뒤집어 엮고 수립하는 력사상 전혀 새로운 유형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전복된 소수의 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로동계 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p> <p>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571면) : 경제건설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 기능의 하나이다</p>
------	---

○ 주권(=정권)

주권은 「정권」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국가의 권력, 즉 계급의 정치적 지배권
 을 의미하며,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을,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인 권력을
 의미한다고 한다.

북한의 1972년 헌법은 노동자·농민·병사·근로인테리에게 주권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1992년 헌법은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
 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의 소재에 대하여 종전의 「병사」
 를 삭제하고 「모든 근로인민」을 추가 규정한 것은 병사를 노동계급으로 보고

있지 않는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고, 또한 자본주의국가가 주권과 통치권(통치권력)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반면에 북한이 주권과 정권을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주권자로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굳이 주권과 정권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인독재와 세습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혼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근로인민」이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별개의 다른 계급적 특성을 가진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의 중심으로서 포괄적 개념으로 보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계급의 정치적 지배권, 정권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주권은 그것이 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이라는 데로부터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으로,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인 권력으로 된다. 주권이 계급의 정치적 권력이라면 국가는 이 정치적 권력의 조직이다. 따라서 주권은 국가를 통하여 실현된다. 주권의 계급적 본질과 사명은 주권을 틀어쥔 계급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착취계급의 주권은 반혁명적폭력에 의거한 착취계급의 독재를 실현하는데 리용된다. 노동계급의 주권은 노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정치적 권력으로서 착취계급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 국가의 권력 곧 정치적 지배권.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 문제이다.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정치적 지배권. 곧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력량을 망라한 주권(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면).</p>

○ 근로인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민으로서 당과 국가를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민의 총칭개념이다.

북한의 헌법은 주권자로서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 등을 「근로인민」으로 예시하고, 이러한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으로 물질문화적 재부를 창조하는 사회계층을 의미하며, 농민은 농업생산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노동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사회계층을 의미하고, 근로인테리는 자기의 지식으로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계층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의 「근로인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당과 국가에 충성하는 자라야 하며, 최소한 남을 착취하지 않는 자라야 하므로 지주·자본가·종교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p> <p>헌법 제1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육체로동이나 정신로동을 하는 인민.</p>

○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광범한 대중의 의사를 모아 당과 국가기관의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 노선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전체 구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절대 복종하며,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고,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원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당과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리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사실상 당과 국가기관의 최고지위에 있는 독재자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독재체제구축의 한 원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본질과 사명으로부터,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과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이 작용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제도 자체로부터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서로 뗄수 없는 두 측면인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의 통일체로서 이루어져 있다.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적 지도하에서만 원만히 보장될 수 있고, 다른 한편 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지도는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인민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 때 그것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국가기관의 사업체계를 수립하는데서 기본문제의 하나이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활동원칙 또는 그리고 원칙이 관철되어 있는 제도.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결합시킨 로동계급의 혁명조직들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이다. 모든 문제해결에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중요한 요구이다.</p>

북한용례	<p>김일성저작선집(13)(조선로동당출판사, 200면) : 당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것은 광범한 대중의 의사를 모아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당지도부를 선거하며 그 지도부가 세워진 로선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p>
------	---

○ 선거(원칙)

공민 또는 상급기관이 자신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대의원 등을 정해진 방법대로 투표 또는 거수로 선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군내에 복무하는 인민에 대하여도 선거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와 정신병자에 대하여는 선거권행사를 박탈하고 있다. 최고인민회는 주석, 국방위원회 위원장,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위원 등을 선거할 수 있는 등의 상급기관이 지도·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의 구성에 대한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헌법은 선거원칙으로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 선거원칙」은 일정한 나이에 이른 공민이 성별, 지식정도, 재산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두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선거원칙이며, 「평등적 선거원칙」은 모든 선거자들이 직업, 거주, 재산정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똑같은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선거할 수 있다는 선거원칙이고, 「직접선거원칙」은 선거자가 자기손으로 입후보자에게 직접투표한다는 선거원칙이며, 「비밀투표」는 투표에 대한 선거자의 표시의사가 반대인지 찬성인지 누구도 모르게 비밀에 붙인다는 투표원칙을 말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6조 :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p> <p>헌법 제7조 :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p> <p>헌법 제66조 : 17상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관,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기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대의원이나 위원, 대표나 일군을 정해진 방법대로 투표 또는 거수하여 선출하는 일. 우리나라에서의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이다.</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선거원칙 : 일반적 선거는 인민대표제 국가기관을 선거할 때 일정한 연령에 달한 공민들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반적 선거는 공화국 선거제도의 민주주의적 원칙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만 열여덟살 이상의 공민은 각급 인민회의 선거에 성별, 민족별, 성분, 신앙, 거주기간, 재산, 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또 그 대의원으로 선거받을 수 있다. 다만,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검찰소의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구금중에 있거나 징역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일반적 선거원칙은 인민대중을 국가관리에 최대한으로 참가시키는 우리의 인민주권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평등적 선거원칙 : 모든 선거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대의원으로 선거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 우리나라 선거법에 규정된 민주주의적 선거원칙의 하나. 공화국에서의 평등적 선거는 선거자들이 한번에 한표씩만 투표하고 동일한 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조직한 선거구에서 동일한 수의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보장된다. 평등적 선거는 자본의 지배와 착취와 압박이 근절되고 정권이 인민들의 손에 쥐여져 있으며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만 가능하다.

북한용례	<p>○ 직접적 선거원칙 : 선거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수령과 당에 충실한 인민정권의 대의원 립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민주주의적 선거원칙. 직접선거는 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민주주의적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자 자신의 의사가 대의원선거에 직접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이 직접 선거표를 선거함에 넣게 하며, 병원, 료양소, 중요 력들에 특별히 선거분구를 조직하며, 선거장에 나오지 못하는 불구자, 늙은이, 환자들을 위하여 이동선거를 조직하며 선거일을 쉬는 날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선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직접선거는 인민들과 대의원들과의 연계를 밀접히하여 주며 또한 인민의 대표로서의 대의원들의 자각과 열성, 책임성을 높여준다.</p>
------	--

○ 국가주권기관(=주권기관)

국가권력, 즉 계급의 정치적 지배권(주권=국가주권=정권)을 직접실현하는 국가기관을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최고인민회의를,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으로서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를, 지방주권기관으로서 지방인민회의를, 지방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으로서 지방인민위원회를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인민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헌법은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주석,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서 국방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정무원,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주권」을 「정권」 또는 「국가주권」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면서도 특히 선출된 대의원에 의하여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주권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6조 :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p>
-------	--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87조 :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헌법 제11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헌법 제117조 :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헌법 제124조 :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헌법 제133조 :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헌법 제147조 :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인민의 대표들로서 구성되며 주권활동을 직접 실현하는 국가기관. 우리나라에서 국가주권기관은 인민들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기초한 비밀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선거된 대표제기관인 인민회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이며,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최고주권을 행사한다. 지방주권기관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 인민회의이며, 그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주권을 행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권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인민의 손에 쥐어져 있으며 광범한 계층의 인민의 대표들로서 각급 주권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202면).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주권활동을 직접 실현하는 국가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공화국 주석,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와 각급 지방주권기관이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주권기관은 공민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기초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거된 인민의 대표들로서 구성된다.</p>

○ 소 환

선거한 사람이 자신의 선거로 선출한 대의원 등의 피선거자를 그 직무에서 파면 또는 파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북한의 헌법은 「소환」에 대하여 「선거인단」으로서의 선거자(17세 이상의 모든 국민)가 자신의 선거로 선출한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을 소환하는 경우와 상급기관이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의 구성원을 「소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예는 「루소」류의 「국민소환」제도와 유사하고, 후자의 예는 우리의 「파면·면직 등」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7조 :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선거한 사람들이 선거받은 사람을 그 직무에서 떼어내는 것

○ 선거자

선거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선거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선거박탈형)와 정신병자에 대하여는 선거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거자는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으로서의 선거자를 의미하므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구성에 대하여 선출하는 선거와는 다르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7조 :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선거권을 행사하는 사람

○ 대의원

인민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되어 각급 주권기관, 즉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에서 국가법의 제정·수정(개정), 국가기관의 조직, 국가계획과 사업정형의 대책수립 등에 참가하는 인민의 대표를 말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7조 :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선거에 의하여 각급주권기관에 피선된 인민의 대표.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들의 선거에 따라 각급 주권기관에 파견되어 인민을 위한 정사에 참가하는 인민의 대표. 김일성저작선집(2)(조선로동당출판사, 265면) : 우리의 대의원들은 인민의 우에 있는 어떤 특권계급에 속하는 인물인 것이 아니라 인민과 같이 숨쉬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아들 딸들입니다. … 대의원들은 언제나 자기를 선거하여준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들에게 의거하여 사업하며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풀어주는 인민의 충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의원들은 또한 복잡한 환경에서도 사회발전의 앞길을 똑똑히 가려낼 줄 알며 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알아맞힐 줄 아는 능숙한 정치활동가로 되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민대중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 나가는 전투적 일군으로 되어야 합니다(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219~220면).</p>

○ 국 가

일정한 영토내의 인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관리하는 포괄적인 정치적 조직이며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이라고 한다.

북한은 종래에 계급설에 입각하여 국가는 지배계급이 다른 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고 자기의 정치적 지배를 유지하며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정치적 권력기관으로 파악하여 자본주의국가는 유산자인 착취계급이 무산자인 피착취계급을 권력으로 억압하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사유재산제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사회관계를 통제하는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국가라고 하면서 이러한 국가의 소멸과 계급없는 만민평등의 사회가 사회주의국가라고 이해하였고, 오늘날에는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이며 노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무기가 사회주의국가라고 한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p> <p>헌법 제12조 :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p> <p>헌법 제13조 :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p> <p>헌법 제14조 :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p> <p>헌법 제1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p> <p>헌법 제2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p>
-----------------------	---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국가는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정치적 조직이며 다른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지배계급의 독재의 무기이다. 국가의 특징은 국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주민과 일정한 령토를 기초로 하여 조직된다는 것이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지배계급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는 권력기관. 일정한 령토안의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이다. 착취계급의 국가는 극소수 착취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는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이며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p> <p>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500면) : 국가는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입니다.</p>
------	---

○ 착 취

생산수단이나 자본을 소유한 유산자들이 무산자인 인민의 노동생산물을 독점하거나 약탈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p> <p>헌법 제29조 :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낡은 사회에서 생산수단이나 자본을 가진 자 또는 그 앞잡이들이 근로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노동생산물을 독점하거나 약탈하여 가지는 것.</p>

○ 집단주의

북한은 자기가 속한 조직과 집단, 그리고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견해 또는 사상관점을 「집단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주의사회의 기본바탕이 되고 있다.

북한의 「집단주의」원칙은 1958년 8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완전 철폐된 것과 관련하여 모든 공공재산에 대하여 개인재산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욱 강조되었고, 그후 1970년 11월의 당 제5차 대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은 집단과 조국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배우며, 생각하도록 하라」는 김일성의 역설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김일성유일사상으로 정치사상적 통일을 기한다는 명분아래 집단주의 원칙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집단주의 교양의 실습장으로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강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고, 또한 북한의 학생들도 소년단생활에서 부터 사로청생활, 직맹생활, 여맹생활, 당생활 등의 조직화된 통제속에서 생활하도록 각자의 개성을 무시한 채 「집단속의 개인」이라는 가치관교육을 강요당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1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p> <p>헌법 제6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p> <p>헌법 제82조 :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p>
--------------	---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수령을 위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태도나 관점.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의 하나로서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의 원칙이다.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 매 사람은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그 리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며 조직과 집단은 매 사람을 위하여 힘쓰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투쟁할 때 대한 집단주의적 원칙을 반영한 공산주의적인 혁명적 구호.</p>
------	--

○ 로동계급

노동자들로 구성된 계급을 말하는데, 북한은 이러한 노동자계급을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이며 문화적인 계급으로서 높은 혁명성과 조직성, 규율성을 가지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혁명의 영도계급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자계급은 정치적 측면에서 기본계급으로서 다른 계급에 비교하여 우대를 받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착취를 강요당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1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계급으로서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이고 문화적인 계급이며 높은 혁명성과 조직성, 규율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혁명의 령도계급.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 엎고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온갖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며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 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력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혁명의 령도계급이다. 로동계급은 계급의 뇌수인 수령의 령도와 당의 조직동원자적 및 향도적 역할이 있음으로써만 자기의 역할을 옹계 수행해 나갈 수 있다.</p>

북한용례	<p>김일성저작선집(9)(조선로동당출판사, 381면) : 로동계급은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계급이며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입니다. 로동계급은 높은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을 가지고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p>
------	---

○ 로동계급화

로동계급을 혁명적으로 단련시켜 공산주의독재의 기본계급으로 만들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교양개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북한은 1970년 11월에 당 제5차대회에서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 독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라고 주장한 이래로 헌법에 명문화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에서 영도적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상성과 문화성, 조직성을 높여야 하고, 북한의 로동계급은 생소한 로동계급이며, 여기에는 혁명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어제의 농민·소상인·수공업자들과 새세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들에게 계급적 각성을 높이는 혁명화·로동계급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로동계급화하여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1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람과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것, 곧 사회의 모든 성원들과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교양개조하는 것. 로동계급화는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로동계급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김일성저작선집(30)(조선로동당출판사, 498면) : 사람들을 로동계급화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 조선로동당

북한의 「조선로동당」은 1945년 10월 평양서 열린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10.10~13)에서 채택한 「정치노선과 조직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의거하여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모체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노동당의 창당일은 10월 10일로 공식화되어 있다. 분국 초기만해도 조선공산당의 「서울중앙」이 인정되고 있었다. 이 분국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대상인 정당·사회단체의 자격문제에 관한 제5호성명(1946.4.18)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1946년 4월말경 「북조선 공산당」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고, 동년 8월 29일 중국 연안에서 평양으로 돌아온 「조선독립동맹」을 중심으로 지식층·소시민층을 망라하고 있던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발족하였다. 그후 북조선노동당은 1948년 8월 정권수립을 위해 남조선노동당과 「연합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권수립(1948.9.9) 이후인 1949년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평양서 비공개리에 열린 남북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1국1당 원칙에 따라 현재의 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당조직체계는 5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에 근거하며 이루어졌으며, 6차 당대회 규약에 의거하여, 일부 개편되었다. 당규약에 의하면 노동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하에 모든 지역별 부문별로 단계적 조직을 가지며, 그 조직원리는 하급 당조직이 상급 당조직을 선거하고, 상급 당조직은 하급 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고, 도(직할시)·시(구역)·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다. 당대표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중앙위원회가, 그리고 당대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해당 당위원회가 각각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당중앙위원회 산하에는 정치국·비서국·검열위원회가 있으며, 당중앙위원회와 동급기관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당중앙감사위원회가 있다. 또한 군대내에도 각급 단위에 당조직이 있는데, 군당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의 직속하에 있다. 군당위원회는 당중앙위의 비준을 받아 군사·정치간부들을 주둔 지역의 각급 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경제·군사분야의 주요부문에 당중앙 위 직속의 정치기관(또는 정치부, 예컨대 군총정치국)을 두고 있어 해당 기관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당의 기층조직으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으며, 당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 또는 「당의 전투단위」로 당원 5~30명의 단위에 조직된다(특수한 경우 예외도 있다). 당세포의 상급조직으로는 초급 당조직이 있는데, 당원 31명 이상의 단위에 조직된다. 또한 당원이 31명 이상되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 단위에는 초급 당조직과 당세포 중간에 부문(마을) 당조직을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초급 당조직과 부문(마을) 당조직의 중간형태로 분초급 당조직도 둘 수 있다. 그리고 당원 3명 미만의 단위에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여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창당 초기 당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권한이 중요시되었으나 1956년 3차 당대회부터는 중앙위원회보다 정치위원회의 권한이 커졌으며,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 마지막날 소집된 4기 14차 당전원회의에서 비서국제가 신설됨에 따라 당의 운영이 당권을 집행하는 비서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1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김일성이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해마다 10월 10일을 민족적 명절로 조선로동당 창건기념일을 지내고 있다.

○ 인민민주주의 독재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노동계급이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주역량을 동원하여 착취계급의 통치기구를 혁명적 폭력으로 전복하고 수립한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한 유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민민주주의독재」라는 용어는 중국의 모택동을 비롯한 제2차세계대전이후 공산혁명을 이룬 나라에서 공산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여 민족주의 세력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일시 민족세력과 주민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이며, 공산세력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일정기간 민족주의세력 등의 비공산세력을 이용한 후 점차 공산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며 이들을 제거하여 왔다.

따라서 「인민민주주의독재」는 공산세력이 미약하여 주민대중과 민족주의세력을 대량 포섭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인민민주주의」를 노동자·농민·민족자본가·소자산계급·지식인 등의 인민대중을 위한 독재로 가장하기 위하여 창안된 용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2조 :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이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주력량을 동원하여 착취계급의 낡은 통치기구를 혁명적 폭력으로 뒤집어 엎고 세운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 인민민주주의 독재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유형에 속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국가를 통한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적 지배,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범주에 속한다. 제국주의 잔재세력과 봉건세력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고 광범한 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p>

○ 계급로선

혁명과 건설사업에 있어서 영도계급인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을 확고히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북한의 1972년 헌법은 계급정책의 구체적 방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

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노동자·농민·병사·근로인테리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제6조),」라고 선언하여 「기본계급」에 대해서만 보호한다는 점을 밝히고,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정책을 실시하며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제10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 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한다(제11조),」고 규정하여 계급노선에 의하여 모든 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1992년 헌법은 주민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서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하고(제8조),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고(제10조),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 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12조 : 국가는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대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언제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의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지키는 것. 계급노선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다.

○ 권 리

개인 또는 단체가 법에 규정된 행동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

는데, 북한의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장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우리의 자연 권적인 권리와는 다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p> <p>헌법 제1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p> <p>헌법 제66조 :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국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일정한 행동이나 사업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보장된 가능성이나 자격</p>

○ 국제법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범규범의 총칭을 의미하는데, 국제조약과 국제관례가 그 기본형태이며, 국제사법과는 구별된다.

북한의 헌법은 대외정책의 기본이념·활동원칙으로서 「자주·평화·친선」을 선언하고, 국제법적 원칙으로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p> <p>헌법 제17조 :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p>
----------------------	---

<p>관계법조</p>	<p>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경제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p>
<p>북한옹레</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한 평등과 호상리익의 립장에서 국가관계를 맺으며 경제적 관계를 가질데 대한 국제법상 원칙. 매개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자주적이며 평등하다. <p>국가들간의 관계에서는 그 어떠한 불평등이나 종속관계도 허용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관계로서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하여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모두 다 완전히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호상간에 서로 존중하고 지지함으로써 평등, 호혜원칙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관계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정불간섭원칙 :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 내정에 간섭함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적 원칙. 내정 불간섭 원칙은 국가자주권과 민족자결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내정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의 실현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포괄한다. 다만 국가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국제조약에 규정된 문제들은 내정에 속하지 않는다. ○ 침략 :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 완성, 민족경제를 침해하며 민족문화와 진보적 사상의 발전을 저해하는 미세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온갖 형태의 비법적 행위. 1933년 사회주의 나라를 포함한 일련의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는 ①다른 나라에 대하여 선전포고 하는 것, ②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나라 령토에 무력을 침입시키는 것, ③륙해공군 무력으로 다른 나라 령토를 폭격, 포격하거나 다른 나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 ④다른 나라의 승인없이 룡해공군부대를 다른 나라 령토에 상륙 혹은 착륙시키는 것, ⑤다른 나라의 해안, 항구를 봉쇄하는 것, ⑥자기나라 영토에서 조직된 무장도당들이 다른 나라 령토에 침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등을 침략으로 규정하였다. 그후 1945년과 1946년의 뉴른베르그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소는 침략금지에 관한 원칙에 기초하여 자기(규정)에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도발, 수행하는 것은 평화를 반대하는 범죄로 된다고 규정하였다. 오늘날 현대 국제실무는 직접적인 무장침략 이외에 간접적 침략, 경제적 침략, 사상적 침략으로 침략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있다. <p>간접적 침략행위는 ①다른 나라를 반대하는 파괴활동을 조직 장려하는 것, ②다른 나라에서 내란의 도발을 계획, 준비, 수행하는 것, ③ 다른 나라에서 침략자에게 유리하게 정변이나 정책의 변환을 조직 지원하는 것...</p>

<p>북한용례</p>	<p>경제적 침략 행위는 ①다른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침해하거나 그 나라의 경제생활의 토대를 위협하는 경제적 압력과 조치를 취하는 것, ②다른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가 자기나라의 자연부원을 개발하거나 그를 국유화하는 것을 방해,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③타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p> <p>사상적 침략 행위는 ① 침략전쟁의 선전과 고취, ② 원자 및 핵무기, 화학, 세균무기 등 대중학살무기사용의 선전, 장려, ③ 군국주의사상, 인종적 민족배타주의, 다른 나라 인민에 대한 반목의 선전, 장려 등이다.</p> <p>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김일성,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 불패이다”, 13면).</p>
-------------	--

○ 대외정책

대외분야의 일관된 근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적 방침을 말하는데,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념·대외활동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북한의 1992년헌법은 종전의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국가들과 단결한다」는 대외기본정책을 수정하여 대외기본이념·활동원칙으로서 「자주·평화·친선」의 3대원칙을 천명하고, 또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국가간의 국제적 연대가 붕괴된 국제환경의 변화와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헌법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의 구체화로서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규정(제16조)」과 「외국인·외국법인과의 기업합병과 합작을 장려하는 규정(제37조)」을 신설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p>관계법 조항</p>	<p>헌법 제17조 :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p> <p>헌법 제3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자주권은 외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대내외적 문제들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이다. 자주권은 민족자결에 기초한 국가의 주요한 속성의 하나이다. 자주권은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력으로 나타나며 대외적으로는 자주독립으로 표현된다. 자주권은 자기나라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고 주체를 확고히 세울 때만이 보장된다. 자주권은 또한 그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튼튼히 이룩하며 자위적인 국방력을 건설할 때에 확고히 담보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대외관계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는 근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한 전략 전술적 방침. 자주, 평화, 친선 이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되고 있다. 나라나 민족이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나라 실정과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다.</p> <p>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534면) : 오늘 우리나라는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p>

○ 국가관리(기관)

국가기관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원칙아래 당과 수령의 노선 및 정책의 반영인 국가법을 집행하는 조직·지도활동을 「국가관리」라고 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한 국가의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조직·지도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국가관리기관」이라고 하는데, 국가관리기관은 국가기관체제

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며, 부여된 권한의 특성에 따라 전반적 국가관리기관과 부문별국가관리기관으로, 활동지역의 범위상 특성에 따라 중앙국가관리기관과 지방국가관리기관으로, 조직절차상의 특성에 따라 선거제 국가관리기관과 임명제 국가관리기관으로 구별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p> <p>헌법 제128조 :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김일성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국가의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사회주의 국가관리기관들의 조직지도 활동. 국가관리는 법령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규범을 제정하거나 이미 있는 법규범을 개별적인 사회관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국가관리의 기본원칙은 당의 령도밑에서의 국가관리의 실현, 국가관리에의 인민대중의 참가, 국가관리에서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관철, 일체 관리사업에 대한 계획화의 실현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관리를 실현하는 기관들은 최고 국가관리기관으로서의 내각과 생산부문별 중앙국가관리기관인 성(국가적 위원회) 및 내각직속기관들과 그 산하기관들, 지역별 국가관리기관인 지방인민위원회와 그 부서들이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기관들이 국가의 법을 집행하며 나가기 위한 조직지도 활동. 우리나라에서 국가관리의 기본원칙은 국가관리를 당의 령도 밑에서 실현하는 것, 국가관리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참가시키는 것, 국가관리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실현하는 것 등이다.</p>

○ 공민(증)

일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북한의 1992년 헌법은 “주권”과 관련하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

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고,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행사한다(제4조)」고 규정하는 반면에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공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북한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라는 표제하에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17세 이상), 노동에 대한 권리와 노동의무(16세 이상), 언론·출판·집회·시위·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소와 청원의 권리, 휴식에 대한 권리, 무상치료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문화예술활동의 자유, 인신·주택의 불가침 및 서신비밀의 보장,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의 준수 의무, 조국보위의 의무등을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p>헌법 제6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p> <p>헌법 제6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p> <p>헌법 제64조 :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p> <p>헌법 제65조 :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p> <p>헌법 제66조 :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p> <p>헌법 제67조 :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p>
------------------	---

<p>관 계 법 항 조</p>	<p>헌법 제68조 :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p> <p>헌법 제69조 :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p> <p>헌법 제70조 :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p> <p>헌법 제71조 :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에 의하여 보장된다.</p> <p>헌법 제72조 :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p> <p>헌법 제73조 :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p> <p>헌법 제74조 :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p> <p>헌법 제78조 :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p> <p>헌법 제7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p> <p>헌법 제80조 :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p> <p>헌법 제81조 :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p>
------------------	---

	<p>헌법 제82조 :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p> <p>헌법 제83조 :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p> <p>헌법 제84조 :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p> <p>헌법 제85조 :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p> <p>헌법 제86조 :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민 : 일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헌법상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 우리나라 공민으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공화국 국적법을 공포한 날(63.10.9)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종래의 국적을 포기하고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만18살 이상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지지하는 모든 사람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민족 반역자, 반혁명분자를 제외한 모든 공민은 그의 유일한 증표인 공민증을 가지며 미성년자는 출생증을 가진다. 공화국 공민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의무를 진다. 공화국 공민은 인민정권의 주인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혁명의 담당자이다. ○ 공민증 : 김일성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 관철하며 조국통일의 독립과 사회주의제도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창발성과 애국적 헌진성을 발휘하는 공화국의 공민임을 표시하는 국가적 징표. 공민증제도는 공민들의 제반 권리실현을 정확히 보장하며 근로자들에게 반영하는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감과 자부심을 안겨 주는데서 그리고 주민의 자연동태를 료해 장악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원수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국가사회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민 : 일정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17살이 된 사람은 영예로운 공민증을 받고 몇몇한 공민으로서 국가주권기관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한다. ○ 공민증 : 나라의 공민임을 밝히는 법적인 증명문건. 우리나라에서 공민증은 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영예를 확증해주는 국가적 증표로서 17살 이상의 공민에게 내어준다.
------	---

○ 법

국가가 제정·공포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담보되는 행위준칙 또는 행위규범으로서 정치의 한 표현양식을 말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18조 :</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이다.</p> <p>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p> <p>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국가가 제정 공포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되는 공통적인 행동준칙. 의무성을 띠는 행위규범으로 사회경제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한 표현양식이다.</p> <p>국가의 중요한 통치수단이다.</p> <p>김일성저작선집(32)(조선로동출판사, 210면) :</p> <p>법은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통적인 행동준칙입니다.</p>

○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와 그에 기초한 물질적 부의 생산·분배·교환·소비과정에서 형성되는 사람들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북한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로서 원칙적인 사적 소유는 부인하면서 소비목적에 한정된 개인소유,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만을 인정하고 있다.

관계법조	헌법 제1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그에 기초하여 물질적 부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과정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의 총체.

○ 협동단체소유(권)

협동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를 「협동단체소유」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유는 절대적인 국가의 소유와는 달리 그 사회화수준이 낮으며, 사회주의가 완성되면 협동단체소유는 없어지고 오로지 전인민적 소유인 국가소유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소유형태로서 국가의 지도와 관리하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실현되는 소유제도이다.

북한의 협동단체소유는 8·15해방이후 시작되어 6·25전쟁이후 농촌경영의 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협동화 및 국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조치를 완비하여 왔는데, 이러한 협동단체소유권의 주요특징으로는 ①그 주체가 개별적인 협동단체이므로 협동단체의 구성원인 근로자들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②구성원들의 출연 및 확대재생산, 국가의 재정적·경제적 지원과 각종계약 등에 의해 형성되고, ③그 대상도 국가소유권과 달리 그 범위가 제한되어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 지하자원·중요공장·항만·은행·교통운수·채신기관 등은 소유할 수 없지만, 토지·부림집승·농기구·고기배·건물·중소공장 등은 소유할 수 있으며, ④협동단체의 임무·과업과 관련한 범위내에서만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처분은 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⑤기관이나 기업소를 통하여 소유권을 실현하는 국가소유권과는 달리 협동단체가 직접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2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p> <p>헌법 제22조 :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기업,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p> <p>헌법 제23조 :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p> <p>민법 제53조 :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협동단체소유는 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협동경리의 생산물, 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p> <p>민법 제54조 :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기업, 기업소와 문화보건시설,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p> <p>민법 제55조 : 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협동단체이다.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 데 따라 할 수 있다.</p> <p>민법 제56조 : 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p> <p>민법 제57조 :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이 권한없는 자로부터 다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가입한 사람들의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하고 생산과 상품류 등의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직.</p>

○ 생산수단

생산과정에서 이용하는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을 의미하는데, 토지·산림·지하자원·생산도구·운송수단·통신시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북한의 헌법은 이러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2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민법 제3조 :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물질적 부의 생산에서 사람들이 리용하는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 토지, 산림, 지하자원, 원료, 생산도구, 생산용건물, 운수수단, 통신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p>

○ 은행

자금의 유통, 현금의 출납과 공급 등을 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북한의 은행은 국가소유로서, 우리와 같은 사인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특징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21조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p>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금을 융통하는 기관 곧 놓고 있는 화폐자금을 건어들여 수요자에게 꾸어주며 자금공급과 결제 및 현금출납같은 것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은행의 성격과 역할은 사회제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사회적 생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전국가적인 계산, 자금공급과 재정적인 통제를 하며 국고를 지키는 국가기관이다.
------	--

○ 국가소유(=전인민적 소유)(권)

전체인민의 소유로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국가소유(=전인민적 소유)」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유는 협동단체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로서 북한소유권제도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은 1946년 8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8호로 공포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일체의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하였고, 1947년 12월 22일에 북조선임시위원회 법령 제31호 「북조선 지하자원·삼림지역 및 수역의 국유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였으며, 1948년 11월 16일 내각 결정 제90호 「몰수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채택에 의하여 무주물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국가소유권제도를 확립시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헌법은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제21조)」로 규정하고, 북한민법 제44조와 제45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시 규정하여 국가소유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소유권제도는 북한정권이 신봉하는 기본철학으로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유지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민법에서는 이 제도의 보호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국가소유권의 특징으로서는 ①그 발생기초로서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기업소에 매입한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

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 밖에 국고회수를 민법은 규정하고, ②국가소유권은 그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므로 어떤 종류의 재산이든지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국가의 경제명맥을 유지하는 중요재산들은 오직 국가소유권의 대상으로만 되는데, 특히 모든 자연부원, 인민경제 여러부분의 중요공장, 기업소와 농촌경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양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체신기관, 방송기관,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보건의시설 등은 국가소유만으로 인정되고, ③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을 대표하는 국가」만이 유일한 소유주체가 되며, ④국가소유권은 점유·이용·처분의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협동단체소유권 또는 개인소유권과 차이는 없지만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재산을 제한없이 점유·이용·처분한다는 점에서 다른 소유권과 그 내용을 달리 하고, ⑤국가소유권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소유권을 실현한다는 것 등이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21조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p> <p>민법 제44조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 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p> <p>민법 제45조 :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중요 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같은 농촌경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양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3.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4. 각급 학교 및 중요 문화보건의시설
--------------	--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46조 :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재산을 제한없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p> <p>민법 제47조 :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 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p> <p>민법 제48조 :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국가소유권은 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다른 국가기관, 기업소에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는 경영상 관리권만 넘어간다.</p> <p>민법 제49조 :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트랙토르, 모내는 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 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 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할 수 있다.</p> <p>민법 제50조 :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p> <p>민법 제51조 :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없는 자로 부터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p> <p>민법 제52조 :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 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 국가소유 :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사회주의 국가의 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소유의 유형에는 력사적으로 노예소유자, 국가의 소유, 봉건국가의 소유, 자본주의 국가의 소유, 사회주의 국가의 소유가 있다. ○ 국가소유권 :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사회주의 국가의 법은 국가 소유권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보호를 예견한다.</p> <p>김일성저작선집(27)(조선로동당출판사, 628면) : ...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p>

○ 공장/기업소

사회적 생산조직을 분업에 따라 나눈 가공공업의 기본단위를 「공장」이라 하고, 일정한 노력·설비·자재·자금 등을 가지고 생산활동 등의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직접 조직·진행하면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채산을 맞추는 경제단위를 「기업소」라고 한다.

북한은 공장과 기업소를 구별하여 사용하는데, 공장은 주로 사회적 생산조직의 단위를 가리키고, 기업소는 경영단위의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21조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 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p> <p>헌법 제22조 :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 사회적 생산조직을 분업에 따라 나눈 가공공업의 기본단위. 공장은 개념상 기업소와 일정하게 구별된다. 공장은 주로 사회적 생산조직의 단위를 가리키며 기업소는 경영단위의 견지에서 쓰인다. ○ 기업소 :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단위. 일정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 등을 가지고 생산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채산을 맞추는데 특징이 있다. 사회주의 기업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목적이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데 있다.

○ 토 지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되는 땅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토지는 농지, 산림토지, 주민지구토지, 도로, 산업토지, 수역토지,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문

화유적지·보호구역·군사용지역에 이용되는 특수토지 등으로 구분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22조 :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기업, 기업소는 협 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p> <p>민법 제54조 :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기업, 기업 소와 문화보건시설,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p> <p>민법 제55조 : 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협동단체이다.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 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 한 데 따라 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람에 의하여 정복되고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리용되는 땅. 토지에는 농사하는 땅, 산림을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것이 예견되어 있 는 산림토지, 도시와 농촌 건설에 쓰이는 주민지구토지, 도로가 차지하 는 토지, 공장, 광산을 비롯한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산업토지, 강하 천, 호수, 간석지, 령해, 저수지, 관개수로 등이 차지하는 수역토지, 혁 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지역 등으로 리용 되는 특수토지가 포괄된다.</p>

○ 상속권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북한의 상속권은 ①그 발생시기 측면
에서 공민,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발생하고, ②그 대상적인 측면에서 피상
속인의 개인재산인 소유권·채권 이외에 저작권·창의고안권 등의 지적소유
권 및 영예·훈장 나아가 권리 이외의 채무도 포함되는 포괄적 권리의무이
며, ③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
게 이전되는 것이고, ④그 효력적인 측면에서 상속권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
이 이를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북한의 상속제도는 처음에 민법초안이나 해석론을 통하여 규율되어 왔으나
1986년 「민사규정」이 상속규정을 둔 이후로 부터 비로소 성문법적 규제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상속에 대한 규제를 민법의 규제영역으로부터 가족법의

규제영역으로 변경하여 북한 가족법 제5장 「상속」이라는 제한에 법정상속, 유언상속, 상속의 효과, 상속기간 및 상속관련분쟁해결법 등에 관한 8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처럼 상속권에 대한 성문법적 규제가 뒤늦게 실시된 것은 북한의 상속대상인 개인소유권의 내용이 극히 미비했던 북한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한의 1992년헌법은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상속권의 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속권의 보호는 개인소유에 대한 법적 보호의 연장으로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북한의 상속은 재산권에 대한 상속만을 의미하므로 우리 민법상의 호주계승과 같은 비재산적 권리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24조 :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발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p> <p>민법 제58조 :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p> <p>민법 제61조 :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은 가정재산으로 되며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 왔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 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p> <p>민법 제63조 :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해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 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p>

○ 개인부업경리

채소·야채생산, 토끼·닭 등의 사육, 가내수공업 등과 같이 협동농장원들의 보충적 수입원천이 되는 경제부문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하여는 협동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로 인정된다.

북한은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를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으로 인정하면서 근로자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에 한하여 개인소유를 인정하는데, 이러한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소유제도는 최종적으로 전 인민적 소유인 국가소유로 나아감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협동단체소유와 개인소유는 과도기적 소유형태에 불과하다고 한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24조 :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p> <p>민법 제58조 :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p> <p>민법 제60조 :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p> <p>민법 제62조 :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p>
--------------	--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63조 :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국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국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 밖의 국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주로 협동농민들의 개인로동에 의하여 조직되며 그들의 보충적 수입원천으로 되는 남새생산, 짐짐승기르기, 가내 수공업 등의 경리. 개인부업경리는 나라의 생산력이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으리 만큼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넘어가 단일한 전인민적 소유가 지배되면 없어진다.</p>

○ 개인소유(권)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를 말하는데, 북한의 개인소유는 개인적·소비적 성격을 가진 소유라는 점에서 그 어떤 사적 경리를 위한 소유, 즉 생산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 소유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북한은 종래에 1946년 10월 4일 시행의 「개인소유권을 보호하여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와 1946년 11월 25일 시행의 「산업 및 상업발전에 관한 결정」을 통하여 개인소유권을 보호하고 산업가 및 상업가들의 산업 및 상업발전에 대한 개인들의 창발성을 발휘하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8년 헌법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일정한도의 토지와 소규모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였고, 자본가들에게도 소규모의 기업체와 상업기관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1992년 헌법은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제 24조)”고 규정하여 개인소유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즉, 개인적 소유의 대

상을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비재로 제한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금지함으로써 사회주의발전에 장애가 될 화근을 제거하여 근로자들이 개인소유권을 위법하게 행사하거나 그 개인적·소비적 성격에 어긋나게 행사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개인소유는 사회주의적 분배와 국가·사회에 추가적 혜택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중의 실제생활은 지극히 빈곤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또한 개인의 부업경리에서 생긴 생산물도 개인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연계되어야 하므로 극소수 이외에는 인정되고 있지 않아 개인소유에 대한 규정은 허구적이고 장식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북한에 있어서의 개인소유는 단지 사회주의적 소유의 대원칙하에서 국가와 사회가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소유권이라고 하겠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24조 :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p> <p>민법 제58조 :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p> <p>민법 제59조 :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p> <p>민법 제60조 :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p>
--------------	---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61조 :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은 가정재산으로 되며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 왔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 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p> <p>민법 제62조 :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p> <p>민법 제63조 :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 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개인에게 속하는 소유. 물질적 부에 대한 개별적 사람들의 소유. 집단소유와 공동소유와 구별되는 소유형태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흔히 소비품에 대한 개인들의 소유를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p>

○ 사회주의 분배원칙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 즉 쉽게 말하면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은 칼마르크스가 「고오타강령비판(1875)」에서 공산주의사회가 사회주의사회보다 높은 단계라는 근거의 하나로 생산물의 분배원칙에 대하여 사회주의단계에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각자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분배받는 원칙」이 적용되지만, 공산주의단계에서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각자는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원칙」이 다른 점이라고 주장한 이래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를 사회주의분배원칙이라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일컬어졌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24조 :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 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 장한다.</p> <p>민법 제58조 :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 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p> <p>형법 제95조 :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고의적으로 어겨 노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심 히 그릇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다시 말하여 일한 만큼, 번 것 만큼 분배하여 주는 원칙.</p> <p>김일성저작선집(14)(조선로동당출판사, 68면) : 사회주의 분배원칙이란 것은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것인데 쉽 게 말하면 일한 것 만큼, 번 것 만큼 분배하여 주는 것입니다. 많이 일 하여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은 몫을 분배하여 주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은 몫을 분배하여 주는 것이 사회주의 분배원칙입니다.</p>

○ 사회주의 사회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아래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위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며, 온갖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없애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며 각자에게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분배되는 사회로서, 공산주의사회의 첫 단계이며,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투쟁에 의하여 수립되는 사회라고 한다.

북한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지배하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노동에 따라>>라는 분배원칙이 실시

되는 사회」를 사회주의사회라 하고,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의 다음단계로서 공산주의사회의 첫단계에 속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사회는 이른바 공산주의적 사회경제구성형태의 낮은 단계의 사회로서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두형태가 존재하며, 일체의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화하는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사회의 특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주민대중을 집단생활의 틀속에 얽매어 놓으며, 불평등분배의 계급사회를 고의적으로 형성해 놓고, 1인독재체제를 강력히 내세워 북한 주민들을 공산노예화 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2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지배하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노동에 따라>라는 분배원칙이 실시되는 사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및 그 이전의 모든 적대적 계급사회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사회. 공산주의 사회의 첫단계로서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투쟁에 의하여 수립된다. 사회주의 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며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첫단계인 만큼 공산주의 사회와 다른 일련의 차이점도 가진다. 계급적 대립은 청산되지만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게 되며 아직 노동이 생활상 제 1차적 요구로 되지 못하고 노동의 차이가 남아 있게 된다.</p>

북한용례	<p>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적 특성은 어디까지나 공산주의적 성격에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적 성격을 강화해나가야 한다.</p> <p>김일성저작선집(2)(조선로동당출판사, 455면) :</p> <p>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정권을 잡고 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킬 목적 밑에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며 온갖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없애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며 각자에게는 노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입니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8면).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첫단계이지만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이상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최후의 목적으로 삼고 투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반드시 사회주의를 거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p>
------	--

○ 협동농장

농민들이 자원적 의사에 따라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사회주의적 집단경리의 농업기업소를 말한다. 즉, 토지와 기타의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농민들의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집단농장을 말한다.

북한은 1953년 8월에 당 제6차 회의에서 농업협동화방침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 농민들을 자연부락단위로 협동조합에 강제편입시키기 시작하여 1958년 8월에 종료하였다. 그후, 자연부락단위의 농업협동조합을 이 단위로 확대·통합하여 1962년에는 협동농장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는 토지 및 생산수단의 「협동적 소유」에 바탕을 둔 협동농장과 「국유」에 바탕을 둔 국영농·목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헌법은 이러한 협동농장의 생산시설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민법은 국가가 협동농장에 제공한 물건, 즉 국가가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현대적 농기계, 국가부담의 문화시설, 탈곡장·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해당 협동농장은 이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농장은 형식상으로는 농장관리위원회의

자율적 경영으로 이루어진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무원내의 농업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관리위원장은 리인민위원장이 겸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28조 :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郡)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p> <p>민법 제49조 :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트랙또르, 모내는 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 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 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농민들이 자원적 의사에 따라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들을 통합하고 공동로동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사회주의적 집단경리의 농업기업소.</p>

○ 계급적 차이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 계급들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오늘날에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사상·문화·기술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28조 :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郡)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p>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계급들 사이의 차이. 오늘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계급적 차이는 다름아닌 로동계급과 농민 의 사상, 문화, 기술수준에서의 차이이다.
------	--

○ 공산주의(사회)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공산주의사회」라고 하며,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이 「공산주의」라고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사회를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회관계의 모든 분야가 노동계급의 모양으로 개조된 무계급사회이며, 인민대중이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형의 인간들로 되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가 없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고도로 발달된 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산주의의 첫 단계인 사회주의사회가 사회주의분배원칙인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인 점과 다르다.

특히, 북한은 공산주의사회를 인민정권에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더한 것으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 즉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가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는 인류의 최고이상의 사회로서,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의 사회라고 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29조 :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	--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 또는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 공산주의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가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는 인류의 최고리상 사회이다. 공산주의는 사람과 사회관계의 모든 분야가 로동계급의 모양으로 개조된 무계급사회이며 인민대중이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세형의 인간들로 되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가 없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다.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한 것으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다.</p> <p>김일성저작선집(22)(조선로동당출판사, 380면) : 공산주의는 인류의 최고 리상이며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지적 및 육체적 발전이 최고단계에 이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적이고 유족한 생활이 보장됩니다.</p>
-------------	---

○ 로동조직

기업소 또는 농장에서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노동력의 낭비를 막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활용하기 위한 노동관리의 제도적 조치를 말하는데, 이는 폐쇄적 경제체제에서 노동력의 부족과 설비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즉, 노동조직사업에는 노동력의 통일적 조사·동원, 노동계획, 노동력의 계획적·균형적 배치, 노동시간의 완전한 이용, 노동생활의 정규화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직의 권한은 국가가 가지는데, 북한의 헌법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노동조직을 말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노동법은 노동조직의 방침에 대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균중노선을 구현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3장에서 사회주의노동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는 생산관리방법의 하나로서 196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종전의 지배인 유일관리체를 지양하고 공장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체제로 전환하여 근로자를 당 중심으로

결속시켜 노동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30조 :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나라의 로력자원을 적극 동원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효과 있게 리용하기 위한 활동·로동조직에는 나라의 로력자원을 통일적으로 조사장악하고 동원리용하는 문제, 로동계획화, 인민경제부문간의 계획적·균형적 배치, 개별적 근로자들의 적재적소 배치, 교대작업조직과 노동시간의 완전한 리용·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정확히 배합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정규화하는 사업등이 포함된다.</p>

○ 노동규률

근로자들이 집단적인 공동노동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준칙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규율은 자각적인 노동규율로서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집단적 노동과 집단생활에 대한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고, 또한 기관, 기업소의 노동내부질서규정과 기술 및 직무규칙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규율은 북한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30조 :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헌법 제83조 :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률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p>
------------------	--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근로자들이 공동노동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칙. 노동규률은 사회적 노동조직의 기초이며 공동노동의 필수적 조건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규률은 공화국에 확립과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집단적 노동과 집단생활에 대한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의 노동규률은 매개기관, 기업소의 노동내부질서 규정과 기술 및 직무규칙에서 구체화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집단적인 공동노동과정에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 사회주의하에서 노동규률은 자각적인 규률이지만 자본주의하에서 노동규률은 기아와 몽둥이 규률이다.</p> <p>김일성저작선집(4)(조선노동당출판사, 14/495~496면) :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일하게 하거나 규률을 세울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하여 가지고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단결하여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일하여야 하며 자각적으로 규률을 지켜야 합니다. ... 노동시간을 어김없이 지키는 강한 규률과 엄격한 제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하도록 하는데서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노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양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속에서 교양사업을 힘있게 하는 한편, 누구나 다 480분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엄격한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	---

○ 노동시간

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맡겨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제정된 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북한 헌법은 1일 8시간 노동제, 특수노동의 노동시간 단축, 국민의 휴식권,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북한의 노동법은 헌법규정을 구체화하여 1일 8시간 노동제, 시간외노동의 금지, 연간 14일의 정기휴가와 7~21일의 보충휴가, 산전·산후의 각각 35일과 42일의 휴가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법이 개인별 계획과제를 초과달성할 것을 규정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 계획과제(노동기준량)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하며, 노동관리질서를 엄격히 하여 분단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고, 3분일과제를 채택하여 인간을 노동기계로 전락시킨 상황하에서 휴식의

보장·시간외노동금지와 같은 규정들은 전혀 실현성이 없는 규정들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30조 :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p> <p>헌법 제71조 : 국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p> <p>헌법 제76조 :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p> <p>헌법 제83조 :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률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제정된 시간.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은 근로자들이 조국의 부강발전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적 노동을 하는 시간이다. 노동시간은 사회를 위하여 지출되는 노동의 량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로 된다. 노동시간의 길이는 해당시기 생산력 발전수준에 따라 사회적 노동에 대한 총적수요, 해당부분의 노동조건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필요한 휴식과 학습시간 등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동자, 사무원들의 노동시간은 일반적으로 8시간, 지하유해노동부분은 7시간, 어린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열세살미만의 어린이 3명이상) 모성노동자는 6시간의 단축된 노동시간이 적용된다. 단축된 노동시간의 적용은 해당부분 근로자들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노동보호의 견지에서 실시되며 이때에도 로임은 적어지지 않는다. 시간외 노동은 법적으로 규정된 특별한 예외적 경우(국가적으로 긴요하게 제기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정된 노동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매개 근로자들의 신성한 법적 의무이다.</p>

<p>북한응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맡겨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제정된 시간. 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566면) :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여 로력당비를 결정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p>
-------------	---

○ 민주주의

국가가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정치를 말하며, 이러한 민주주의는 계급적 성격을 띠고,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원래 민주주의는 18세기 중엽(1776년의 미국독립과 187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후 군주정치나 귀족정치에 반대하여 서방세계가 널리 채택한 제도로써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여 민의(民意)에 기초를 둔 대의제도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서구의 민주주의제도를 소수 부르쥬아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부르쥬아독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폭력혁명에 의한 다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주장하였고, 레닌도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부르쥬아 민주주의보다 수만배나 더 민주주의적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택동은 전세계의 각종 다양한 국가체제를 그 정권의 계급성격에 따라 ①부르쥬아독재의 공화국 ②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공화국 ③몇개 혁명계급의 연합독재의 공화국으로 구분하고 ①의 형태를 구민주주의 형태로 ③의 형태를 신민주주의 형태(인민민주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김일성도 소련군대의 비호하에 인민민주주의라는 위장간판으로 북한에 정권을 수립한 후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나 하는 말로 적화통일을 위장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1970년 11월 노동당 5차대회에서 남한의 혁명단계를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짓고, 노동자, 농민, 지

식층, 청년학생, 소시민등으로 통일전선을 형성, 이들을 선동하여 정부타도를 획책하고 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개념분석을 계급관념에 입각, 분석하고 있으며 다수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소수부르조아에 대한 독재체제나 몇몇 계급의 연합독재체제를 민주주의로 파악함으로써 계급성을 떠나 전 인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아래 최선아(最善我)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의 본뜻을 왜곡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32조 :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기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p> <p>헌법 제7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주권을 틀어쥔 계급이 자기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급적 독재의 한 측면.</p> <p>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력한 무기이다", 47면).</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p> <p>국가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다.</p> <p>김일성저작선집(32)(조선로동당출판사, 532면) : 민주주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로 민주주입니다.</p>

○ 농업지도체계

농업을 지도·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조직 및 직능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군협동농장위원회를 기본단위로 하여 도농촌경리위원회와 농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33조 :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농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실현케 하는 국가기관의 조직기구와 직능의 총체. 군협동농장위원회를 기본으로 하고 도농촌경리 위원회와 농업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 경제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는 요소로서 사회적 생산과 분배 및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형성되는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33조 :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는 요소로서 사람이 살아가며 사회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생산과 분배 및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곧 생산관계. 김일성저작선집(27)(조선로동당출판사, 400면) : 물론 생활수단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계획경제

국가가 국가계획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경제체제로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경제에서만 가능한 전일제의 경제체제라고 한다.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사회의 경제법칙이 모든 생산영역에 작용하는 일반적 경제법칙과 몇개의 생산방식에 작용하는 특수경제법칙이 존재하지만,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당과 국가에 의하여 경제정책에 올바르게 반영·실천되기 때문에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의 경제실정이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3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유일한 국가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만 가능한 전일제로서의 경제이다.</p>

○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

사회주의경제의 발전과정을 규정하는 경제법칙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 노동생산능률의 장성법칙, 사회주의적 축적법칙, 노동에 의한 분배의 법칙(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 등이 해당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3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본질적인 연관을 반영하며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과정을 규정하는 경제법칙.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 노동생산능률의 끊임없는 장성법칙, 사회주의적 축적법칙, 노동에 의한 분배의 법칙 등이 있다.</p>

○ 인민경제계획

사회주의국가의 생산·분배·유통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동이 투하되는 모든 부문의 종합체로서의 경제를 「인민경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생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부문과 신용체계·상업·교육·문화 등의 비생산부문도 포함된다.

특히, 북한은 인민경제의 과학화·주체화·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위에 세우는 것이라 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자기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발전시키는 것이라 하며,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은 당의 결정정책과 현실적 조건, 과학적인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을 「인민경제계획 또는 인민경제발전계획」이라고 한다. 결국, 북한의 「인민경제체제」는 공산독

재정권이 일체 생산수단을 국가적 소유로 기초하여, 경제를 중앙집권적인 계획으로 조직·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경제형태를 「하나의 큰 사무소, 하나의 큰 공장과 같다」고 말하면서 획일적인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를 계획화하는 것은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노선과 경제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며, 생산과정의 순조로운 진행보다도 목표달성을 위한 강압적인 시도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 각 부분간의 상호관계를 예견성(豫見性)있게 조절하거나 생산수단의 분배, 각 생산분야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도 목표로 복잡시키는 강제성이 발동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균형을 파괴한다. 즉, 인민경제계획은 공산독재정권에 의하여 부단히 의식적으로 조종되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계층의 노력(勞力)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3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p> <p>헌법 제3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p> <p>민법 제4조 : 계획적인 재산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게 재산 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p>
--------------	--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 : 인민이 주권을 쥐고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나라에서 사회생산물의 생산과 분배, 유통에 관계되는 부문들 및 그밖에 사회적 로동이 투하되는 온갖 부문들의 종합체로서의 한 나라의 경제. 여기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등 사회적 생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비생산부문까지도 다 들어간다. 생산부문들과 신용체계, 상업의 대부분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 문화, 과학, 보건 등. ○ 인민경제계획=인민경제발전계획 : 당의 결정정책과 현실적 조건, 과학적인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 인민경제발전계획이라고도 한다.
------	--

○ 국가예산

국가기능을 수행함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이용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재정계획 또는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규정한 국가법을 말한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35조 :</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p> <p>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며 리용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재정계획.</p> <p>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국가의 법으로 된다.</p>

○ 재정통제

국가가 재정은행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징수·공급하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 등의 경영활동에서 실시하는 사회주의사회의 화폐통제를 말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3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재정 은행기관들을 통하여 수익금을 받아들이며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 기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화폐통제.</p>

○ 사회주의적 소유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사회전체 구성원 또는 집단의 공동소유를 사회주의적 소유라고 한다.

북한은 소유권을 그 주체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의 3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소유권과 협동단체소유권을 사회주의적 소유라고 하면서 개인소유권과 구별하고 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북한의 경제적 기초이고, 또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국가의 융성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확고한 경제적 기초를 이루며 가장 귀중한 사회주의 전취물의 하나이므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소유권제도가 가지는 목적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철저히 애호·관리하며 철용성 같이 보호하여 협동적 소유를 줄이고 국가소유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하여 국가소유가 북한소유권제도의 이상임을 밝히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3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p>
--------------	--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3조 :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 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사회전체성원 또는 집단의 공동소유. 사회주의적 소유의 본질은 생산의 물질적 조건인 생산수단이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공동소유,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있다.</p>

○ 대외무역

국가간의 상품교환을 의미하는데, 북한의 대외무역은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종래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국가들과 단결한다」는 대외기본정책에 입각하여 사회주의국가간의 무역을 행해왔으나 사회주의국가간의 국제적 연대가 붕괴된 국제환경의 변화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1992년의 헌법은 대외기본이념을 수정하여 「자주·평화·친선」의 3대원칙을 천명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규정」과 「외국인·외국법인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본주의국가와의 무역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외무역의 국제결제를 위하여 중앙은행산하에 무역은행을 설치하고 있었으나 최근 1993년에는 「외국투자은행법」을 제정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한하여 중앙은행의 승인하에 외국은행 또는 외국자본가가 북한내에 은행을 설립하거나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3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p>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교환. 대의경제관계의 기본형태이다. 수출무역과 수입무역이 있다.
------	--

○ 법 인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법상 일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관·기업소·단체를 말한다.

북한의 1992년 헌법은 종래 사회주의국가들간의 원조·차관중심의 경제협력 관계를 청산하고 자본주의국가들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합영과 합작 형식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고, 이를 구체화하여 외국인투자법·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투자기관 북한내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하며, 외국투자기업이란 북한내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하는데, 외국투자자는 북한내에 합작기업·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헌법 제37조 :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법상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기관, 기업소, 단체.

○ 합영기업

북한은 자국내 기관·기업소·단체간의 합영기업형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1992년 헌법은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자국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의 법인·개인간의 합영기업형태를 인

정하고, 그 개별법령을 제정·공포하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1992.10.5)은 합영기업에 대하여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외국투자자는 북한내에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영기업의 기본원리, 창설, 기구와 경영활동, 결산과 분배, 해산과 분쟁해결 등에 대하여는 합영법(1994.1.20)과 합영법시행세칙(1992.10.16)에 규정을 두고 있다.

관 계 법 조	헌법 제37조 :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	--

○ 합작기업

북한은 자국내 기관·기업소·단체간의 합작기업형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1992년 헌법은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자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의 법인·개인간의 합작기업형태를 인정하고, 그 개별법령을 제정·공포하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1992.10.5)은 합작기업에 대하여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외국투자자는 북한내에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작기업의 투자대상·당사자·투자절차·노동력관리·원자재의 수입과 수출·투자지분의 상환과 이윤분배·경영활동·납세의무·해산과 종료·분쟁해결 등에 대하여는 합작법(1992.10.5)에 규정을 두고 있다.

관 계 법 조	헌법 제37조 :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	--

○ 관세정책

수출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의미한다. 북한관세제도의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점에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역이 국가계획 및 독점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세부과가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역품(무환수입품, 외국여행사의 소지품, 국제소포 등)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수출입세에 관한 규정」은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별표에 의하여 수출세를 부과하되, 국제조약에 수출입에 관한 특별한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동법은 수출세 또는 수입세를 부과하지 않는 물품,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물품, 보세지역, 밀수출입품에 대한 조사·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북한의 관세는 수출입의 통관업무를 통상 밀수방지, 외환독점, 상품의 수출입통제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관세의 종류는 품목에 따라 수출세와 수입세가 있으며 세율부과방법에 따라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이 있고, 관세기관으로는 관세관리총국과 세관이 있다. 관세관리총국은 무역부 산하기구 관세기관을 조직·관리하고 있으며 관세정책의 입안, 관세기준설정, 관세통계업무 등을 관장하고, 세관은 관세관리총국의 지도하에 실질적인 관세업무로서 국경통과화물의 적법성검사, 과세금액산정 및 징수, 불법수출입 화물의 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38조 :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관세를 리용하는 국가의 정책. 매개 국가의 계급적 성격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지위에 따라 다르다. 전반적 경제정책의 구성부분이다.

○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사회주의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 즉 정치·경제·문화·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말한다.

<p>관계법조</p>	<p>헌법 제42조 :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이다. 김일성저작선집(25)(조선로동당출판사, 291면) :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란 사회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에 따라 모든 사람이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 사회주의 교육학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교양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사회주의교육의 본질과 목적, 내용과 방법, 원칙, 사회주의 교육제도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교육기관과 교육일군들의 임무와 역할 등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을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로동하기를 즐기고 공동재산을 사랑하고 집단생활을 좋아하여 개인의 리익보다 전체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후대들에게 개인과 집단을 결합하는 교양을 주어 모두가 다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지향하는 교육은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실천적 혁명가」 내지 「공산주의적 인간」을 육성함에 궁극적 목적이 있으므로 북한의 모든 교육기관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수단의 하나」로서 ①김일성 우상화교육의 체계적인 추진, ②대남 적화전략수행에 필요한 인간 양성, ③소련 등 동구공산국가들의 자유화경향 침투방지, ④실용성교육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교육은 1969년에 발표된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에 규정된 「교육교양 활동의 일반적 원칙」으로서 소위 「사회주의교육학의 5대원칙」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①유일사상체계확립의 원칙(교육의 전과정에서 학생을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에 대한 충실성을 세뇌하며, 김일성사상에 반대되는 일체 사상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도록 선동하는 원칙), ②당파성·계급성의 원칙(교육의 전과정에서 당의 정책을 합리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활동을 전개하며, 이른바 수재교육의 낡은 교육관과 방법, 지식제일주의(知識第一主義)로서 나타나는 교육의 무사상적 견해와 복고주의적인 비계급적 경향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 ③주체확립의 원칙(김일성의 소위 「혁명사상」을 교육에 관철시키며 소위 「조선혁명」에 충실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원칙), ④이론과 실천의 통일원칙(교육을 「조선혁명」의 실천과 밀접히 연결시켜 「정치사상교육을 선행시키면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원칙」), ⑤혁명화·노동계급화의 원칙(학교의 모든 활동이 학생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한 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해 행하여 지며 교육내용과 방법도 여기에 전면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43조 :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 교양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사회주의 교육의 본질과 목적, 내용과 방법, 원칙, 사회주의 교육제도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교육기관과 교육일군들의 임무와 역할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p>

○ 공산주의적 인간

공산주의사상과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는 자질을 구비한 인간, 즉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과 문화수준,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소유하며, 건강한 체력을 가진 인간을 말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43조 :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에 맞는 품모와 자질을 갖춘 인간. 곧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과 문화수준,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소유하고 건강한 체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이다.</p> <p>김일성저작선집(32)(조선로동당출판사, 374면) :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체력은 공산주의적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모이며 자질이다.</p>

○ 일반교육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 즉 기술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사상교양, 과학의 일반기초지식, 예술적 소양을 제공하기 위한 과목들의 교육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44조 :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주로 보통교육 부문에서 기초기술과목에 상대하여 사상교양, 과학의 일반기초지식 및 예술적 소양을 주기 위한 과목들의 교육을 통털어 이르는 말.</p> <p>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줌으로써 새 세대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며 현대과학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p>

○ 기술교육

현대 생산의 일반적 원리와 일정한 부문의 전문기술지식 및 그 활용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44조 :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헌법 제46조 :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현대 생산의 일반적 원리와 일정한 부문의 전문기술지식과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일반교육 단계에서는 기초기술교육, 전문교육단계에서는 기술기초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한다.</p>

○ 교육체계

교육기관의 조직형식과 그들간의 관계의 총체를 말하는데, 북한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국가가 발전시켜야 한다고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 광산 등에 소규모의 대학과 전문대학을 개설하여 인민의 집단적인 농어촌, 광산배치와 대학진학의 기회상실로 인한 일반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낙후된 산업기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러한 교육체계를 강조·시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제유지의 한 수단이라고 평가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46조 :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교육기관의 조직형식과 그들 사이의 연계의 총체.</p>

○ 의무교육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국가가 교육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북한의 교육은 성장과정에 따라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교육주체에 따라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으로 구분하지만 학교교육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러한 북한교육의 특성은 다원주의사회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상호 보완적 관계속에서 통합되어 있으며,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계열성과 통합성을 견지하여 정치사회적 체제유지에 철저히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1956년에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한 이래로 1958년에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였고, 1966년에는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72년부터는 1년동안의 학교전 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교육을 주는 완전한 중등무료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1975년이후로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완전히 정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1992년 헌법은 1972년 헌법의 「전반적 10년제 고등의무교육의 실시」를 개정하여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45조 :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p>
<p>북한응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공부할 나이에 이른 모든 청소년들을 일정한 기간 국가가 책임지고 정규학교들에서 의무적으로 공부시키는 인민교육제도. 전반적 의무교육제는 청소년들을 충실한 혁명전사, 지역체를 겸비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 우리나라의 각급학교들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269만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58.11)를 거쳐 지난해 부터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1966. 11. 24)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세세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며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2면)</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공부할 나이에 이른 모든 청소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정규학교들에서 공부시키는 것.</p> <p>○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 모든 세대들에게 로동할 나이가 되기까지 1년 동안의 학교전 교육과 10년 동안의 학교교육을 주는 완전한 중등무료의무교육. 1972년부터 력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1975년 부터는 완전히 실시하는 획기적 조치가 취해졌다.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은 과학적인 교육체계와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결합시키고 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다.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은 새세대들에게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워주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준비시킨다.</p> <p>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일정한 과정의 학교에까지 빠짐없이 받아들여 의무적으로 공부시키는 것을 국가시책으로 삼는 가장 높은 형태의 의무교육 또는 그런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 <p>김일성저작선집(32)(조선로동당출판사, 401면) :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은 모든 세대들에게 로동한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일반 교육을 주는 무료의무교육이다.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은 과학적인 교육체계와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결합시키고 있다.</p>
------	---

○ 의사담당구역제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항상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채택되어 1980년 4월 5일에 시행된 「인민보건법」 제27조에 처음으로 규정된 이후, 1992년의 헌법 제56조가 이 규정의 강화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으로 선언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현실적인 북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에 의문이다.

관계법 조항	헌법 제56조 :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이나 기관을 맡아 근로자들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책임적으로 돌보면서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

○ 전반적 무상치료제

국가부담으로 전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의료상 원조를 해주는 보건제도를 말한다.

북한은 1952년 11월 13일에 국가치료예방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 및 약값은 무상이며, 국가외래치료예방기관에서의 치료는 무상으로 하고, 약값은 유상으로 하되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대상자와 국가기관, 협동 및 사회단체에 복무하는 자의 부양가족과 전재민 구호대상자 및 특수한 환자들에 대한 약값은 무상으로 하며, 인민군대 치료예방기관들에서도 일반인민들에 (단, 입원치료는 특상환자 및 구급환자에 한 한다) 대하여 전반적 무상치료를 실시하고, 폭상환자, 구급환자, 구호환자, 지정전염병환자 및 그 의사환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국가양표 소지유무를 불문하고 우선 입원시키며 소정량의 국가식량을 배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데 관하여」를 제정·공포하여 1953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980년 4월 5일부터는 종래의 보건정책과 보건분야의 제규정을 통폐합하여 채택된 「인민보건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2조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보장과 공고·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9조부터 제16조에 걸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1992년 헌법 또한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공고·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결핍으로 인한 의료시설 및 의약품의 만성적인 부족, 임상치료능력의 한계와 전문의들의 질적 수준저하, 전반적 의료수준 낙후 등으로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56조 :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p> <p>헌법 제72조 :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전체 근로자들을 국가가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보건의제도.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 - 해방지구들에 창설된 인민혁명정부의 인민적 보건의책과 그 실천적 경험에 깊은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1946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었고, 1960년 2월부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로 넘어갔다. 전반적 무상 치료제는 지역별, 생산별로 되는 병원과 진료소의 균형적이고 조밀한 설치, 의사담당구역제의 실시, 의약품과 의료기구, 의료설비의 충분한 보장 등으로 모든 주민이 언제 어느곳에서나 보건위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튼튼히 보장되고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부담으로 전체 인민들에게 의료상 방조를 주는 것 또는 그런 우월한 보건의제도. 전체 인민들에게 무상치료를 보장하는 공산주의적 시책이다. 1953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다.</p> <p>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564면) : 우리 제도하에서 사람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p>

○ 환경보호

인민의 문화위생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그것을 잘 가꾸며 깨끗이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이 북한의 「환경보호법」이라고 한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 「토지법」(1977.4. 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법령으로서 총 5장 52개조로 구성되

어 있으며,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의 대책,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의 지침,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과 제재조치를 그 내용으로 하고, 특히 동법은 자연환경보호 및 공해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사용을 금지하는 원칙까지 채택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서 규제하지 않은 토지와 산림자원 등의 보호관리는 「토지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환경보호가 주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당의 영도밑에서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임을 밝히고,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마을을 형성하고, 산업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환경보호를 전주민들의 「신성한 의무」로 강조, 이들이 조국강산과 향토를 사랑하고 환경보호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주민들에게 자연환경을 잘 보존·관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설치(정무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기관·기업소·단체와 주민들에게 자연풍치 손상·파괴 금지, 천연기념물·명승고적 원상보존, 지하수의 무제한 이용금지, 야생동물 밀렵 및 수중생물 남획 금지(환경보호감독기관 허가제), 공원 및 유원지에 잔디조성, 환경조성에 지장을 주는 식수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가정과 공장·항만·협동농장 등에 환경보호제한기준과 오염물질배출기준 및 소음·진동기준(이상의 기준은 정무원이 결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부문별로 세부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사업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지도사업을 정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무원은 국가적인 공해감시체계를 수립, 각종 환경변화상태에 대한 측정을 엄격히 하도록 명시했으며 환경보호 감독사업은 국토관리기관과 부문별 환경보호감독기관인 위생방역기관과 방사선 감독기관 등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5장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와 관련하여 나라의 환경을 손상·파괴·오염시킨 기관·기업소·단체나 주민들은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해당 책임자에게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반대로 손실을 본 기관·기

업소·단체나 주민들은 환경보호감독기관을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 법령을 채택한 이후 교육기관·출판보도기관 등을 앞세워 각종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캠페인과 법조문 해설사업을 진행해 오는 한편 「산업오염의 감시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1990.12.5~8) 등 각종 국제적인 환경보호행사를 추진해 왔는데, 북한이 이처럼 1980년대 후반 들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중화학공업단지 건설 등으로 산업공해가 심각해지고 평양·원산·남포·신의주 등에서의 주택 및 사회·문화시설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57조 :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p>
<p>북한응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위생적 요구와 생활문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고 그것을 잘 가꾸고 깨끗이 보존하는 것.</p>

○ 군 대

국가의 상비적인 무장력 또는 그 성원을 말한다.

북한의 정규군(인민군)은 지상군(육군)·해군·공군을 군총참모장이 총괄지휘하는 단일종합군체계이다.

평시에는 인민무력부가 군정을, 군총참모부가 군령권을 행사하되 인민무력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전시에는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군최고사령부가 직접 총참모장을 통하여 정규군은 물론 노동직위대 등의 예비병력을 포함한 전무장력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60조 :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全民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헌법 제61조 :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나라의 상비적인 무장력 또는 그 성원.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군대로서 나라와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며 당의 정책을 무력으로 집행하는 우리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p>

5. 言語異質性을 反映하는 用語

○ 벌리다

우리의 “추진·수행·전개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헌법 제14조 :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일을 일으키거나 진행하거나 또는 판을 퍼다.</p>

○ 호 상

북한은 “양당사자 상호간”의 의미로 「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상호”와 동일한 의미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7조 :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서로</p>

○ 장 성

우리나라의 “육성” 또는 “발전·개발”의 뜻으로 평가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21조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늘어나거나 또는 발전하여 높아지거나 커지는 것.</p>

○ 자연부원

사람들의 경제생활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수 있는 자연계의 유용물로서 지하자원·산림·동식물·토지·물·대기 등을 말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21조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 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p> <p>민법 제45조제1항제1호: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람들의 경제생활에 리용되고 있거나 리용될 수 있는 자연계의 유용물. 땅위에 있는 자연부원, 땅속에 있는 자연부원, 우주에 있는 자연부원으로 나누며 자연적 성질과 리용성격에 따라 산림, 동식물 등과 같이 늘어나는 자연부원, 지하자원과 같이 줄어드는 자연부원, 기후·물·토지 등과 같이 비교적 일정한 자연부원으로 나누기도 한다.</p>

○ 부림짐승

북한의 부림짐승은 우리의 “가축”에 해당하는데, 특히 노동력을 이용하는 소·말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부림소’의 의미는 역우(役牛)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가축”에 해당하지만, 노동력의 대상이 아닌 짐승의 경우에는 「집짐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집짐승」은 개·염소·토끼·닭 등과 같이 힘이 약하여 노동력의 대상은 아니나 개인부업경리의 수입원천이 되는 가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22조 :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기업, 기업소는 협동 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p> <p>민법 제54조 :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기업, 기업소와 문화보건시설,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힘이 세여) 부리는데 쓰는 짐승. 곧 소, 말 같은 것.</p>

○ 자원적 의사

우리의 “자의적·임의적 의사” 또는 “자신이 원하는 바”와 유사한 의미로 평가된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23조 :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체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스스로 하고 싶어 원하는 것.</p>

○ 방 조

우리의 “원조” 또는 “지원”의 의미로 이해된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28조 :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郡)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p>
-----------	--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67조 :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한 책임을 진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거들어 도와주는 것.</p>

○ 군(郡)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직접적·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지방행정구역의 말단 지도단위 또는 그 소재지로서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점으로써의 지역적 단위를 의미한다.

북한은 해방이후 수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는데, 특히 1952년 12월에는 기존의 도·군(시)·면·리의 4단계 행정구역체계에서 면을 제외시킨 3단계 행정구역체제로 개편하여 군(시)을 행정단위의 중심으로 삼아 중앙으로부터의 통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28조 :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郡)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지방행정구역의 말단 지도 단위 또는 그 소재지. 우리나라에서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거점이며 농촌을 직접 지도하며 농민들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 있는 지역적 단위이다. 김일성저작선집(18)(조선로동당출판사, 229면) :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거점이다.</p>

○ 창 발

우리의 “창조”와 “발전”의 혼용의미로 이해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29조 :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남이 모르거나 하지 않는 것을 처음으로 또는 새롭게 내놓거나 밝혀내는 것.</p>

○ 농촌경리

농업을 비롯한 축산·과수·잠업 등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경리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식량을 비롯한 식료가공의 원료, 섬유, 가죽, 의약품, 기호품의 원료 등을 생산한다.

북한은 농업경영이라는 용어 대신에 「농촌경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1958년까지 개인에 의한 농업경영을 일체 금지하고, 모든 농민을 「협동농장」에 강제편입시켜 집단농업에 종사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농민이 과거에 개인농토를 얼마나 소유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작업실적에 따라 추수후 「결산분배」를 통하여 노동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자유사회의 농민들처럼 자기의 농토를 경영하여 증산을 기하는 농업이 아니라 농촌의 「리」단위로 수지와 노력, 조직 및 농촌의 기술혁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농촌경영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33조 :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p>
----------------------	--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농산을 비롯하여 축산, 과수업, 누에치기등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경리. 주민들이 먹는 식량을 비롯한 식료가공업의 원료와 섬유, 가죽, 의약품 및 기호품의 원료등 여러가지 생산물을 생산한다.</p>
------	--

○ 기업적 방법

한 부문사업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계획수립에서 부터 생산조직, 기술발전과 자재의 보장, 노동력의 배치와 조직, 기업소의 재정활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활동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조직하고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33조 :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계획작성과 생산조직, 기술발전과 자재보장, 노동력의 배치와 조직, 기업소의 재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기업활동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하며 지도하는 것. 곧 기업을 경영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 김일성저작선집(16)(조선로동당출판사, 516면) : 기업적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조직, 기술작전, 자재의 보장, 노동력의 배치와 조직, 기업소의 재정활동 같은 모든 기업활동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하며 구체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 집체적

우리의 “총체적” 또는 “총력적”의 의미로 생각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33조 :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여러 사람의 힘이나 지혜등을 한 데 모아 합치는 것.</p>

○ 축적

사회주의사회에서 국민소득의 일부를 공장건설, 기계설비의 증설, 문화후생시설의 건설, 근로자복지의 향상에 재투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재투자”와 유사한 의미로 파악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3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민소득의 일부를 공장을 더 짓고 기계를 더 장만하고 문화후생시설도 더 건설하여 근로자들이 더 잘살게 하기 위한데 돌리는 것.</p>

○ 견결하다

우리의 “투철한”의 의미로 평가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43조 :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의지 또는 태도가) 깨끗하고 굳세다.

○ 기초과학

자연과학의 한 부문으로서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 등을 말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46조 :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부문과학자들의 기초를 이루며 생산과 기술발전의 리론적 기초를 밝혀 주는 자연과학의 한 부문.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오늘 기초 과학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 사회과학

사회적 현상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연구하는 부문으로서 철학·경제학·역사학·고고학·민속학·문예학·언어학 등을 말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46조 :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철학, 경제학, 법학, 력사학, 고고학, 민속학, 문예학, 언어학 등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을 통털어 이르는 말. 사회과학은 사회현상들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밝힘으로써 사람들의 사회적 실천에 복무한다.

○ 대 학

고등교육을 실시하여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는데, 북한의 대학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유능한 공산주의 건설자 양성을 그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47조 :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고등교육을 실시하여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대학의 기본임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학생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현대적 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유능한 공산주의 건설자를 길러내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 전문학교

중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일정한 분야의 기수·준기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는데, 북한은 1946년에 3년제 초급중학교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전문학교, 1955년에 고등중학교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전문학교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기술전문학교는 1959년에 폐지되었으며, 고등전문학교는 오늘날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기사 또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고 한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47조 :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받아들여 일정한 분야의 기사나 준기사,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기관. 우리나라에서는 1946년 7월에 3년제 초급중학교 졸업생들을 받아들인 기술전문학교, 1955년에는 고급중학교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고등전문학교가 창설되었다. 기술전문학교는 1959년에 발전적으로 폐지되었다. 고등전문학교는 오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받아들여 전문교육을 줌으로써 준기사 또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키우고 있다.</p>
-------------	---

○ 장학금

학업을 장려한다는 목적아래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연구생, 박사원생들에게 생활비로 지급되는 돈을 말하는데, 북한은 북한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인 무료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과 연구생, 박사원생들은 장학금을 지급받아 근심걱정없이 공부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47조 :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학업을 장려하는 돈이란 뜻으로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생들과 박사원생들에게 생활비로 쓰도록 주는 돈. 우리나라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전반적인 무료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과 연구생, 박사원생들은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근심걱정없이 공부하고 있다.</p>

○ 사회교육

정규의 학교기관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즉 사회교양기관, 가정과 사회적 환경 등 사람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주는 모든 곳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회교육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여 공산주

의적 인간으로 육성함에 이바지하고, 학교교육의 성과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관계 법 조 항	헌법 제48조 :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학교밖의 사회관계속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교육 교양. 곧 사회교양기관, 가정과 사회적 환경 등 사람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주는 모든 곳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교육은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속에 과학기술지식과 문학예술지식, 체육 기술을 적극 보급하며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사회교육을 안받침하며 학교교육의 성과를 공고히하고 보충하여 준다.

○ 학령전

북한은 197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만5세의 모든 어린이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그들에게 인민학교(만 6세에 입학)에 입학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교육을 시키며, 인민학교부터 10년간의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그후, 1975년 4월 10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의 총화에 대하여」를 결정하여 완전한 11년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헌법의 “학령전”어린이는 인민학교에 입학하기전인 “만5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북한의 인민학교에 입학하는 학령아동의 연령은 “만6세”이다.

관계 법 조 항	헌법 제49조 :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나이로 보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 탁아소

유치원에 입학하기 이전의 연령, 즉 만3세이하의 어린이를 맡아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을 말한다.

북한의 탁아소는 국가 등이 운영·관리하며, 이는 여성을 가정으로 부터 해방시켜 여성노동력을 국가가 이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49조 :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들을 맡아서 보살펴 키우는 보육교양 기관.

○ 유치원

국가의 보육교양기관인 탁아소를 벗어나 인민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의 연령, 즉 만 4세에서 만 5세까지의 어린이들이 2년동안 보육·교양받는 학교전 교육기관을 말한다.

북한은 1973년 4월 9일의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의무교육 실시이후,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1년제 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유치원에 입학한 어린이(만4세와 만5세) 가운데 만5세의 모든 어린이는 1년제 학교전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배우고, 인민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교육을 받게 된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49조 :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탁아소 시기를 벗어나 학교갈 나이까지의 어린이들을 교육·교양하는 학교전 교육기관. 어린이 보육교양기관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2년제인데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운영된다. 모든 어린이들은 학교들어가기 1년전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인민학교에 들어간다.

○ 민족어

민족의 형성·발전과 더불어 발전하여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공통성의 하나로서 민족이 존재하는 전기간에 걸쳐 민족의 전체성원들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며 우리의 표준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문화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확대한 것이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54조 :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책동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민족이 존재하는 전기간에 민족의 전체 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쓰이는 언어. 민족의 형성발전과 함께 발생, 발전하며 민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공통성의 하나이다. 민족어는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 민족어가 없이는 민족에게 고유한 민족문화를 창조할 수도 개화발전시킬 수도 없고 민족자주의식을 높이 발양시킬 수도 없다.

○ 예방의학

국가가 질병발생의 원인을 찾고, 사전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인민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사회주의 의학의 한 분과를 말한다고 한다.

북한의 인민보건법(1980.4.3. 채택, 1980.4.5. 실시)은 제3조에서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을 예방의학이라고 천명하면서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적 방침을 확고히 견지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 제27조에 걸쳐 예방의학적 방침에 의한 인민의 건강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기관을 비롯한 기관·기업소·단체 및 인민들이 위생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며, 위생문화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할 것, 각급 기관·기업소·단체에 충분한 의약품 및 위생보호용구의 비치, 체육대중화, 철저한 면역대책의 수립, 의사담당구역제의 실시 등을 그 내용

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1992년 헌법은 국가가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한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관계 법 조 항	헌법 제56조 :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질병발생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의학의 한 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복무하는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을 이룬다.

○ 무장력

군사무기와 군인을 총칭하는 말이다.

관계 법 조 항	헌법 제5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와 그것을 가지고 적과 싸우는 군인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무장력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직접 적과 싸우는 사람이다. 김일성저작선집(13)(조선로동당출판사, 450면) : ... 비행기, 대포, 군함과 같은 무기와 그것을 가지고 적과 싸우는 사람. 다시 말하여 군인과 지휘관이 무장력을 이룹니다. 여기에서도 사람이 기본적인 무장력이라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 군사규률

법령과 군사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과 질서를 말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61조 :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령과 군사규정으로 제정한 규칙과 질서. 조선인민군의 군사규률은 장병들의 높은 계급적의식에 기초한 자각적인 군사규률이다.</p>

Ⅲ. 公民權編

1. 概要

북한헌법은 제5장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62조 내지 제86조)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부분에 해당되는 조항을 두고 「집회·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소」, 「청원」, 「휴식에 대한 권리」,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 「저작권」, 「남녀평등권」, 「인신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63조에서 “.....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여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국민의 의무로서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의 수호」,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준수」, 「국민의 영예와 존엄의 고수」, 「사회와 인민에의 봉사기풍제고」, 「노동의무의 성실·엄격한 준수」, 「국가 및 공동재산의 보호」, 「국가안전을 위한 투쟁」, 「조국보위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의 의무과다부과는 국민의 기본권리보장을 무색하게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5장 국민권 부분의 주요헌법용어를 분단지향성, 체제유지성, 체제고유성, 언어이질성 등을 반영하는 용어별로 구분하여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2. 分斷指向性を 反映하는 用語

○ 조국보위의무

적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튼튼히 지키는 국민의 헌법적 의무이며 신성하고도 영예로운 의무로서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고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지키며 혁명기지를 튼튼히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한다.

북한은 1949년 7월 15일에 북조선민주청년동맹·북조선농민동맹·북조선민

주여성동맹 등의 사회단체의 공동발기형식으로 「조국보위후원회」라는 어용단체를 결성하여 6.25남침의 준비일환으로 주민들의 현금·귀금속 등의 헌납운동을 전제한 바 있고, 또한 북한은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무력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우는 정의의 전쟁」을 조국전쟁으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6.25남침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86조 : 조국보위는 국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내의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튼튼히 지킬 데 대한 공화국 국민의 헌법상 의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들은 자기 조국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를 수호하기 위해 조국보위에 자각적으로 동원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원수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조국을 튼튼히 지키는 것. 조국을 보위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신성하고도 영예로운 의무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위대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는 것이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보위하는 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113면) : 조국보위는 우리 청년들의 가장 신성하고도 영예로운 의무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하는 것은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얻은 혁명적 전취물을 보위하는 것이며 우리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위하는 것이며 조선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전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담보로 되는 우리의 혁명기지를 보위하는 것입니다.</p>

3. 體制維持性을 反映하는 用語

○ 혁명투사

소위 혁명투쟁(모든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정의되고 있는)에 각별한 공적이 있는 생존자(북한이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성분분석표인 3대 계층 33소계층중 첫번째에 속하여 핵심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를 의미하는데, 「직업적 혁명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제시 항일운동을 했던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서 검거된 김종태를 비롯한 몇몇 주동자들도 '혁명투사'로 일컬은 바가 있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75조 :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로동계급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백적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자각적 투사.

○ 혁명렬사(가족)

소위 혁명투쟁을 위하여 각별히 헌신한 사망자를 의미하는데, 초기에는 사망한 혁명투사(일제시 항일운동을 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8.15해방이전에 소위 '항일유격투쟁'에서 희생된 자 뿐만 아니라 6.25남침때 큰 전공을 세우고 전사한 자·남파간첩 및 무장공비로서 활동하다가 처형된 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3대계층 33소계층 또는 51소계층 분류에서는 보이지 않는 계층이다).

북한은 그들 유자녀들을 위하여 1947년 9월1일에 「혁명가유가족학원」을 개원하였고, 그후 「혁명렬사유자녀학원」으로 개칭되었는데, 혁명렬사의 유자녀들은 동 학원의 기숙사에 수용되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게되고 아울러 동 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진학 및 해외유학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부여되며, 취직하는 경우에는 기밀을 요하는 부문에 배치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8.15해방이전의 경력자 자녀들은 이미 성장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현직 고위간부(혁명경력자)의 자녀와 대남공작요원들의 자녀가 동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 법 조 항	헌법 제75조 :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었거나 빛나는 생애를 마친 투사.

○ 애국렬사(가족)

북한을 위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자를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3대계층 33소계층의 분류에서는 보이지 않고, 3대계층 51소계층의 분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핵심계층으로서 초기의 33소계층 분류에는 혁명투사가족·전사자가족·피살자가족·후방가족·순직자 및 폭사자가족이 포함되는 반면에 1970년대의 51계층 분류에는 혁명가유가족·애국렬사유가족·피살자가족·전사자가족·후방가족·영예군인이 포함되는 것을 비교할 때에 초기의 33계층 분류의 순직자 및 폭사자가족 계층 가운데 6.25이후 인민군 각기관 근무중에 사망한 자가 1970년대의 51계층 분류의 애국렬사의 대상으로 흡수되었다고 평가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75조 :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원수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투사.

○ 영예군인

전쟁 또는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부상을 입고 제대한 북한군인을 말하는데, 이들은 「영예군인학교(영예군인 공업학교·영예군인농업학교·영예군인통계부기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후에 「영예군인공장」 등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북한의 영예군인은 초기의 3대계층 33소계층 분류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1970년대의 3대계층 51계층 분류에서 그 계층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상이군인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평가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75조 :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군사복무기간 부상을 입고 제대되어 국가적 배려를 받는 사람.

○ 인민군후방가족

북한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가족을 의미하는데, 초기의 3대계층 33소계층중 핵심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75조 :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조국보위를 위하여 복무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가족.

○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법규범·공산주의 도덕규범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은 ①이기주의 사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② 사치와 낭비를 근절하며 근검절약하면서 검소한 생활기풍을 확립하고, ③자기 자신과 가정의 「혁명화」

를 통하여 김일성부자를 위해 목숨바쳐 일하는 기풍을 세우며, ④ 조직에 충실하고 집단을 사랑하며 조직의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조직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81조 :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p> <p>민법 제26조 :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p> <p>민법 제27조 :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p> <p>민법 제60조 :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 사회주의적 법규범, 공산주의 도덕규범 같은 것들이 있다.</p>

○ 혁명적 경각성

당과 혁명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 입각하여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고, 비계급적이며 비원칙적인 사상경향에 대하여 날카로운 주목을 돌려 항상 경계하는 정신과 태도를 말한다고 한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85조 :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당과 혁명의 이익을 지키며 온갖 반혁명적이며 반동적인 경향에 대하여 날카로운 주목을 돌려 경계하는 품성 또는 그런 태도.

4. 體制固有性을 反映하는 用語

가. 體制固有性을 反映하는 用語

○ 국 적

사람이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밝혀주는 법적 관계를 말하는데, 북한의 국적법(1963.10.9. 제정)은 북한공민의 요건으로서 북한 창건이전에 조선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 자녀로써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와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북한의 정치적·법적 보호를 받으며, 외국에 거주하는 공민은 자유로이 북한을 왕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북한국적의 취득요건으로서 ①공민간의 출생한 자녀들, ②국내에 거주하는 공민과 외국공민간에 출생한 자녀들, ③국내에서 발견된 자녀로써 그의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를 규정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공민과 외국공민

간에 출생한 자녀의 국적은 부모들의 합의에 의하여, 외국인은 그의 청원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며, 공민은 무국적자와 결혼하여도 그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고,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거나 제적되는 경우에 14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들은 그들의 동의에 따라 국적이 변경되고, 부모의 어느 일방의 국적이 변경되더라도 그 자녀들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6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람이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밝혀주는 법적인 관계. 공민은 자기 나라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국적의 취득은 출생에 의한 것과 귀화에 의한 것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출생에 의하여 국적이 부여될 때 혈연주의원칙과 출생지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공화국 국적법은 혈연주의를 위주로 하면서 해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결합시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은 ①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남녀간에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 그중 한사람이 상대방의 국적을 가지는 경우, ②국적이 없는 사람 또는 국적의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이 새 국적을 가질 것을 신청하여 얻는 경우, ③령토변경시에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국적은 리탈과 박탈에 의하여 상실된다. 국적의 리탈은 사망, 귀화, 국적선택, 외국인과의 결혼 등의 경우에 일어나며 국적의 박탈은 민족반역죄 등 형벌에 의하여 공민권이 상실되는 경우이다. 현대 국제법에서는 그중 국적과 무국적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통일적 규범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적 나라들의 국내법과 쌍방조약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중 국적자의 국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무국적자에 대하여도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하고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람이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밝혀주는 법적인 관계. 국적은 자기나라 공민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징표로 되며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된다.</p> <p>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579~580면) : 우리는 일본정부가 제일 조선공민들을 응당 외국인으로서 대우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그들에 대한 온갖 박해와 탄압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p>

○ 거주지

사람이 생활하며 살고 있는 곳을 말한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6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구역

○ 민주주의적 권리

근로인민대중이 정치·경제·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향유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국가주권행사에 참가할 권리, 노동에 참가할 자유와 권리,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정당의 활동 등에 참가할 자유와 권리들이 해당한다고 한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64조 :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주적인 권리.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사회에서 민주주의적 권리는 국가주권행사에 참가할 권리, 노동에 참가할 자유와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정당, 사회단체활동에 참가할 자유와 권리 등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을 포괄한다.

○ 민주주의적 자유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적 권리를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고 한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64조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적 자유는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 선거할 권리(선거권)

국가주권기관의 대의원을 선거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로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는 이루어진다.

북한의 헌법은 17살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는 북한의 형법상 「선거권박탈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북한형법상 선거권박탈은 부가형의 일종으로서,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을 신설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격박탈속에 선거권박탈을 포함시키지 않고, 북한형법이 선거권박탈형을 계속해서 독립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과 노동자·농민의 주권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반국가적대분자는 국민으로서의 최대의 정치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재판소는 반국가범죄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범죄의 성격, 범죄행위의 정도, 범죄자의 계급적 처지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박탈형을 선고할 것인 지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한다. 박탈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선거권 박탈 기간은 그 노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날 때부터 기산하게 된다. 선거권 박탈형과 재산몰수형은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북한형법상의 선거권박탈형은 우리 형법상의 자격상실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우리 형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선고가 있으면 형벌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면서 상실되는 자격으로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들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그중 선거권박탈만을 반국가범죄에 대한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66조 :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국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국가주권기관의 대의원을 선거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 선거권은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형식의 하나로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기초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실현된다. 김일성저작선집(1)(조선로동당출판사, 119~120면) :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를 받을 수 있으며 선거할 수 있습니다. 정당관계, 재산의 유무, 거주조건, 신앙여하 기타 어떠한 점에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차별을 두거나 제한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p>

○ 선거받을 권리(피선거권)

국가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주권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이 자기의 주권실현에 직접 참가하는 기본형식의 하나로써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더욱 발양시키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피선거권도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17살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피선거권을 가지며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의 경우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66조 :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국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을 수 있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 피선거권은 주권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들이 자기의 주권실현에 직접 참가하는 기본형식의 하나로서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더욱 발양시킨다. 김일성저작선집(1)(조선로동당출판사, 119면) :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를 받을 수 있으며 선거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심리에 기초하여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을 말한다. 북한의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 판결과 판정으로 나누어 지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은 제1심재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실제법상 권리의무와 관련한 문제를 심리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규범을 해석·적용하여 내리는 제1심재판소의 해결을 말하고, “판정”은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절

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내리는 해결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은 사건의 심리에 기초하여 재판원의 표결을 통하여 재판소가 선고하는 것을 말하고, “판정”은 사건기각이나 중지판정등과 같이 재판심리과정에서 판결이외의 결정을 말한다. 특히 형사소송법상의 판결은 ①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②피소자를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 ③피소자에게 대사를 적용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판결, ④피소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데,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판결에 해당하고,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은 14살 이상 17살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거나 피소자의 행위가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처분을 말하며, 대사를 적용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판결은 피소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사면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피소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무죄의 판결에 해당한다.

재판소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손해보상청구에 대하여도 해결하여야 하는데, ①손해보상청구가 정당할 때에는 손해를 보상시키며, ②범죄사실 자체가 없거나 피소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보상청구를 기각하며, ③피소자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을 때에는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지 않고 이 경우에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재판소는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하여도 처리하여야 하는데, 증거물 가운데 소유자에게 환부할 수 없는 것은 몰수하고 그 외의 것은 소유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66조 :</p> <p>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p> <p>군대에 복무하는 국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p> <p>헌법 제152조 :</p> <p>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p> <p>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p>
-----------------------	--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제1심재판소가 공판에서 사실심리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내리는 중국적 결론. 판결은 법령의 일반적 요구를 개별적 재판사건에 구체화함으로써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사법정책을 실현한다. 판결은 반드시 판결서를 작성하여 재판장이 그것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내리며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판결은 상소, 항의가 없이 상소기간을 지난 때, 상소, 항의가 있으나 제2심재판소에서 원심을 지지한 때, 상소할 수 없는 판결을 선고한 때에 확정된다. 우리나라에서 판결은 범죄자들을 정확히 징벌하며 특히 계급적 원수들의 각종 반항을 철저히 진압하는 힘있는 법적수단이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심리에 기초하여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p>
------	---

○ 정 건

정치적 견해 또는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가지는 입장과 견해를 의미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정견”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당의 정책을 비난하는 정견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평가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66조 :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국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정치적 견해 또는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가지는 입장과 주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사회주의 헌법에 의하여 정견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p>

○ 정 당

일정한 계급과 사회집단의 이익을 대표·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상과 이념의 공통성이나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의하여 모인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을 말하는데, 노동계급의 정당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당이라고 한다.

북한은 헌법상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당 1당독재를 실현하고 있으며, 명목상으로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임원들 자체가 노동당 당원들로 구성된 노동당의 지원부대에 불과하다. 예컨대, 「조선사회민주당」은 1945년 11월 3일 평양서 창당된 조선민주당(초대당수 조만식)을 모체로 한 북한노동당의 「우당」으로서 반탁문제로 조만식선생이 사임한 이후로 최용건이 계승하여 1948년 3월 제3차 전당대회에서 조선민주당 당수의 신분으로 노동당의 부위원장 자리를 겸직하기 이르렀고, 1958년에는 조선민주당의 균이하 조직이, 1960년에는 조선민주당의 도조직마저 해체되어 버렸고, 1960년대 이후로는 대담문제와 관련한 성명발표 등의 위장정당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81년 1월 28일 제6차 당대회에서는 당의 명칭을 현재의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개칭하고 10개항의 새로운 당강령을 채택하였으며, 현재는 해외거주 반한교포규합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임원들 또한 노동당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천도교 청우당」은 명목상 유일한 종교단체 정당으로서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와 연계되어 있는데, 「천도교청우당」은 1919년 9월 2일 김기전을 당수로 하여 창당된 이후, 남한에서 1945년 9월 14일 김병청을 위원장으로 「청우당」이 조직되었고,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1일 소군정의 인가를 받아 「천도교북조선총무원」이 설립됐으며, 1946년 2월 8일에는 소군정에 포섭된 김달현이 「북조선청우회」를 창당했는데, 이것이 현 북한의 「천도교청우당」의 모체가 되었다.

그후, 북한의 청우당은 1950년에 월북한 「남조선청우당」을 흡수·통합하여 「조선천도교청우당」을 발족되었으나 1958년말에는 김달현이 숙청되고, 1959년에는 시·군이하의 조직이 해체되었으며, 1960년에는 도당조직까지 해체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후 노동당원인 강장수·정신혁을 내세워 「천도교청우당」을 노동당의 정책발표 또는 중요행사시 지지성명을 내는 단체로 전략시켰고, 1980년의 이후에는 반한 정치망명자인 최덕신을 포섭하여 그를 위원장으로 삼아 대남선전 등에 이용했으나 현재는 최덕신의 사망으로 정신혁을 다시 위원장으로 기용하여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로 이용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67조 :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일정한 계급과 사회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고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상과 리념의 공동성이나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의하여 뭉쳐진 최고 형태의 정치조직. 로동계급의 정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당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정당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고수하기 위한 데 복무하면서 통치계급 내부에서의 정권쟁탈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p>

○ 사회단체

사회의 일정한 계급 및 계층들이 자기들의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며,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북한의 헌법은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현재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직업총동맹」·「농업근로자동맹」·「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예컨대,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은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되어 1951년에 「남조선민

청」과 통합하여 「조선민주청년동맹」이 되었으며, 그후 1964년 5월 제5차대회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한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외곽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산하에는 1946년 6월 6일에 발족한 「소년단」이 있다.

또한 「직업총동맹」은 1946년 11월 30일에 결성된 「북조선직업총동맹」을 모체로 한 근로자단체로서 노동당의 정책을 실천하는 전위대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근로자동맹」은 1946년 1월 31일에 「전국농민조합총연맹」(1945년 12월 8일에 결성된 농민들의 전국적 조직체)의 분맹으로 조직된 「북조선농업연맹」을 모체로 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사회주의농촌업무의 추진, 농촌에서의 사상·문화·기술 등의 3대혁명의 추진, 사상교양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민주여성동맹」은 1945년 11월 18일에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되어 1951년 1월에 개최된 「남북조선여성동맹합동중앙위원회」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통합·개칭된 근로여성들의 대중조직으로서 여성들에 대하여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정치의식과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건설에 한 여성들을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67조 :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의 일정한 계급 및 계층들이 자기들의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고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 국가의 법(국가법)

사회주의하에서 국가의 경제적 기초와 정치적 기초,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 선거제도 등의 국가사회제도의 기본을 이루는 사회적 제관계를 규제하는 법부문을 말한다.

즉, 북한의 국가법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헌법인데, 사회주의적 법체계에서 주도적이며 기본적인 부문으로서 다른 모든 법부문의 기초가 되며, 사회주의

적 토대위에서 노동계급의 영도하에 노동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임과 인민회의가 인민의 의사를 대표·실현하고, 공민이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적극 참가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및 그들의 의무를 규정하며, 또한 국가기관들의 체계와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원칙·그들의 권한과 사명 및 활동절차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81조 :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주권의 실현과정에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을 통털어 이르는 말. 주로 헌법에 고착된다. 헌법을 국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집단주의사상

북한의 집단주의사상은 개인주의사상과 상치되는 개념으로서 자기가 속한 조직과 집단, 그리고 주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견해와 사상관점을 말하는데, 그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공산주의적 개조에서 가장 장애요소로 규정짓고 있으므로 집단주의사상은 사회주의사회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집단주의사상은 1958년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완전철폐와 관련되며 모든 공공재산에 대하여 개인재산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는 것에서 강조되었고, 1970년의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김일성도 「모든 근로자들은 집단과 조국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집단주의사상은 김일성유일사상으로 정치사상적 통일을 기한다는 명분아래 오늘날 모든 생활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은 집단주의교

양의 실습장으로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소년단생활에서부터 사로청생활·직맹생활·여맹생활·당생활등의 조직화된 통제속에서 생활하도록 각자의 개성을 무시한 채, 오직 「집단속의 개인」이라는 가치관 교육을 강요받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82조 :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p> <p>헌법 제163조 :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p>
--------------	---

나. 基本權 一般用語

○ 언론출판의 자유

인민대중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언 어 또는 출판물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리를 말한다.

북한의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언 론·출판이 국가의 통제·독점하에 놓여 있는 북한의 실정에 비추어 당과 국 가의 정책에 벗어난 언론출판의 자유는 기대하기 어렵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67조 :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인민대중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 게(말로 혹은 각종 출판물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일본략탈자들의 통치시대에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보호를 받 지 못하였던 조선인민은 반드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의 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들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까(김일성, “우리 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68면).</p>

○ 집회, 시위의 자유

공민들이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거나 자기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각종 모임 또는 시위를 자유로이 진행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북한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규정에 불과할 뿐 실제적으로 완전한 자유의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p>관계법조</p>	<p>헌법 제67조 :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공민들이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거나 자기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각종 모임 또는 시위를 자유로이 진행할 수 있는 권리. 집회와 시위는 정치활동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근로자들은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공화국 헌법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천명한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에 관한 사상을 구현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공민의 기본권리의 하나로 선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집회, 시위는 근로자들의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열의를 더욱 높이며 인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혁명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p>

○ 결사의 자유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를 조직하거나 그곳에 참가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북한은 노동당 이외에도 민주주의적 정당으로서 “조선사회민주당”·“천도교청우당”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로서 “직업총동맹”·“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농업근로자동맹”·“민주여성동맹”·“소년단” 등이 존재한다고 하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당들은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어용단체에 불과하고, 사회단체들 또한

「노동당」의 외곽단체들로서 노동당의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계 법 조 항	헌법 제67조 :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여러가지 민주적 정당, 사회단체를 조직하거나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 결사의 자유는 다른 모든 권리와 함께 해당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와 민주주의 보장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결사의 자유는 근로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과 업수행에 그들을 자각적으로 동원하도록 하는데 복무한다.

○ 신앙의 자유

종교를 믿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우리와 달리 종교건물의 건축·종교의식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관계 법 조 항	헌법 제68조 :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의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종교를 믿고 받드는 자유. ○ 종교 : 사회적 인간의 지향과 념원을 환상적으로 반영하여 신성시하며 받들어 모시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또는 그 믿음을 설교하는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 (신)이나 (하느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를 믿고 따르며 그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만 온갖 소원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래세에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교한다. 원시종교로부터 시작하여 불교, 기독교, 회교 등 수많은 종교와 그의 크고 작은 류파들이 있다.

○ 신 소

개인 또는 집단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줄 것에 대하여 당과 국가기관, 기업소, 근로단체에 제기하는 인민의 요구로서 공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로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p>관 계 법 조</p>	<p>헌법 제69조 :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신소는 근로자들이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무원들의 직무상 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공민이나 조직체들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 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소제도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며 국가관리에 인민대중을 적극적으로 참가시며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제도의 하나이다. 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511면) : 인민정권기관들로 하여금 인민생활을 항상 깊이 연구하며 자기의 일상적 활동에서 인민대중에게 의거할 줄 알게하며 인민들의 신소와 청원을 책임적으로 제 때에 해결함으로써 인민대중속에서 정권기관의 위신을 부단히 높이도록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까. 신소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줄 데 대하여 당 및 국가기관, 기업소, 근로단체에 제기하는 인민의 요구로서 공화국 공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언제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서면 또는 구두로 신소하며 그에 대하여 제때에 해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신소는 인민대중의 목소리이며 공민은 누구나 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들은 국가기관이나 개별적 일군들에 의하여 자기의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법기관에 신소할 수 있습니다.</p>

○ 청 원

공민이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거나 국가기관·사회협동단체·공무원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청원은 국
 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와 공무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개별적 공민의
 이익침해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신소」와 구별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69조 :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청원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무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개별적 공민의 이익의 침해와는 관계없이 그 사업의 개선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원제도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며 국가관리에 인민대중을 적 극적으로 참가시며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민주 주의적 제도의 하나이다.</p> <p>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511면) : 인민정권기관들로 하여금 인민생활을 항상 깊이 연구하며 자기의 일상적 활동에서 인민대중에게 의거할 줄 알게하며 인민들의 신소와 청원을 책 임적으로 제 때에 해결함으로써 인민대중속에서 정권기관의 위신을 부단 히 높이도록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까. 청원은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요구나 국가기관, 사회협동단 체 및 공무원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기하고 풀어줄 것을 바라 는 것을 말합니다.</p>

○ 로동능력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말하는
 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연령·건강상태·기술지식수준등에 의하여 판단된다
 고 한다.

북한은 16살부터 60살까지(여자는 55살까지) 공민으로서 의학감정에 따라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모두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
 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
 라 직업을 선택하여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력을 보장받으며, 노동의 양과 질
 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70조 :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 노동능력은 일반적으로 연령, 건강상태, 기술지식수준 등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6살부터 60살까지(녀자는 55살까지)의 사람으로서 의학감정에 따라 노동능력을 잃지 않았다고 보는 모든 사람은 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다.</p>

○ 노동(권리와 의무)

물질적,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인민의 목적의식적인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한다.

마르크스가 인간의 본질은 「자유로운 생산적 노동」이라고 정의한 이래로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을 신성시하며, 노동자들을 우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도 그들의 말로는 북한을 「근로자의 천국」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모든 주민들은 노력동원에서 혹사당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천리마운동」, 「속도전」 등 온갖 명목으로 유례없는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독재란 한낱 간판에 지나지 않고 오로지 김일성 1인 독재체제로 변질됨으로써 전통적인 마르크시즘과는 동떨어진 이질적인 체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정책」이란 것도 노동계급의 권익과는 상관없이 김일성 유일체제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세워지고 있다.

북한의 노동제도에 있어서도 현재 16세이상 65세까지(여자는 60세까지)의 주민은 무조건 노동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학생들도 노력동원을 위해 의무노동제를 택하고 있으며, 이밖에 「사회노동」이니 「애국노동」이니 하여 법정휴일마저 노동을 할것을 강요하고 있다. 명목상 1일 8시간 노동과 250시간 이상의 시간외 노동금지, 산전, 산후휴가, 휴가, 휴양제도 등이 법으로

규정돼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한가지도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하루의 노동도 12시간 이상 16시간까지 혹사당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70조 :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헌법 제83조 :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 : 노동능력을 가진 모든 공민들이 자기의 능력과 기능에 맞는 일을 국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또 노동조건이 보장되어 있는 한 반드시 노동하여야 할 헌법적 권리와 의무.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노동 : 물질적,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육체적 및 정신적 활동. 노동은 모든 재부와 행복을 창조하는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단련시키는 힘있는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되고 있다. 김일성저작선집(4)(조선노동당출판사, 14/565~566면) : ○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 : 사회주의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은 전체인 민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며 누구나 다 일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일하면 다 같은 대우와 생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한 가장 영예로운 일입니다.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의 새로운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입니다.</p>

○ 노동조건

노동의 안정성과 생산문화와 위생문화를 규정하는 작업조건 또는 원료·자재·설비·노동보호·물자공급 등의 작업보장조건을 충칭하여 말한다고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70조 :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 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노동의 안정성과 경중성, 생산문화와 위생문화를 규정하는 작업조건 또는 원료, 자재, 설비, 노동보호 물자공급과 같은 작업보장조건을 통털어 이르는 말.</p>

○ 유급휴가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주면서 그 기간동안의 생활비도 지불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71조 :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 휴가를 주면서 그동안의 생활비도 제대로 다 지불하는 제도. 노동법령은 8시간 노동제와 유급휴가제, 사회보험제와 남녀동일임금제 등으로 노동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p>

○ 휴식에 대한 권리

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소모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풀며, 학습과 문화생활조건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북한의 헌법은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노동법도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8시간 노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여 헌법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밖에 시간외노동의 금지, 주 1일 휴식보장, 연간 14일의 정기휴가, 산전·산후휴가, 정휴양시설 등 휴가기간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근로자들은 하루 노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한다라고 하는 등으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당연한 사실의 선언 또는 경제기관·기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노동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전혀 실현불가능한 규정을 선전의 목적으로 선언하여 놓는 등으로 프로그램적 규정의 나열에 불과한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법에서 개인별 계획과제를 초과달성할 것을 규정하고, 그 계획과제 즉 노동기준량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관리질서를 엄격히 하여 분단위의 오차도 불허하며, 3분일과제를 채택하여 인간을 노동기계로 전락시킨 상황하에서 휴식의 보장이나 시간외 노동의 금지와 같은 규정들은 그 공허함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7조 :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소모한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를 풀며 학습과 문화생활조건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138면) : 원래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8시간 노동제 자체가 노동자들의 넉넉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예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쉬고 나머지 8시간은 순전히 학습과 문화생활에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p>

○ 정 양

노동자, 사무원 등의 근로인민이 국가적 비용으로 운영하는 정양시설내에서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문화적인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국가사회보험상의 혜택을 말한다고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노동자, 사무원들이 국가적 비용으로 운영되는 정양시설들에서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문화적인 휴식을 하는 국가사회보험상 혜택의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 사무원들은 노동 년한의 길이에 관계없이 기업소들에 설치된 직장정양소에서 정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직장정양소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요구하지 않고 일하면서 영양료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노동자, 사무원들이 들어간다. 정양자들은 정양기간 국가적인으로 규정된 높은 영양과 의료급식을 보장받으며 자기 취미에 따라 자유롭게 문화적인 정양생활을 보장받는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용히 안정하여 쉬면서 문화휴식도 하고 피로도 풀며 치료도 하면서 건강을 돌보는 것.</p>

○ 휴 양

근로인민들이 국가비용으로 운영되는 휴양시설내에서 문화적인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국가사회보험의 혜택을 말한다고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71조 :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p>
----------------------	---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국가비용으로 운영되는 휴양 시설에서 문화적인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국가사회보험 혜택.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의 휴양을 국가휴양시설들에서 일체 무료로 실현되며 모든 근로자들은 국가휴양소에서 휴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과 협동농장들은 휴양대상자들이 제정된 기일내에 충분히 휴양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보장해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3)(조선로동당출판사, 91면) : 노동자, 사무원들은 유급휴가제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수십만명의 근로자들이 국가비용으로 휴양소 및 정양소들에서 즐겁게 쉬고 있습니다.</p>
-------------	---

○ 료양소

요양을 요하는 공민을 치료하는 치료예방시설로서 자연조건에 따라 광천요양소, 감탕요양소, 기후요양소 등이 있으며, 질병에 따라 다양한 요양소들이 있다고 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72조 :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료양할 사람을 받아 치료하는 치료예방시설. 자연조건에 따라 광천료양소, 감탕료양소, 기후료양소 등이 있으며 질병에 따라 여러가지 료양소들이 있다.</p>

○ 국가사회보험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질병·부상·임신·해산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 때에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를 말하는데, 북한의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의 일반원칙, 사회보험자금, 피보험자, 보험료징수, 일시적 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연월금, 의료상방조, 보험금부의 심사청구·청원 및 소송, 벌칙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실시되는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정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불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함께 기관과 기업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사회보험은 현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능력의 완전상실자나 사망자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모든 근로자들(사무직 포함)은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월급생활자는 매달 기본봉급의 일정비율이 보험료로 공제되어 지급되며, 1년에 한번 추수후 「결산분배」라는 명목으로 노동대가를 지불받는 「협동농장원」 즉 농민들은 그 해 이룩한 총수입(현물과 현금) 중에서 「문화기금」, 「보건기금」, 「교육기금」, 「농기계 사용료」, 「영농자금」 등등과 아울러 「사회보험기금」도 함께 공제된 나머지를 「분배」받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보험료를 지불하는 셈이 된다.

보험료는 수입의 일정비율로 지불하면서도 보험의 혜택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의거 지불되기 때문에 노동재해를 입어도 지불한 액수마저 혜택을 못입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고가 없으면 지불한 보험료는 무효가 된다.

여기에서도 북한공산정권의 선전과는 달리 그들의 노력착취의 수법을 발견할 수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72조 :</p> <p>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p>
-----------------------	---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주의하에서 국가가 근로자, 사무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질병, 부상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었을 때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국가사회보험은 현직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사무원, 협동농장원(장학금을 받는 학생 포함)들에게 적용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질병, 부상, 임신, 해산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었을 때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혜택의 하나이다.</p> <p>김일성저작선집(3)(조선로동당출판사, 133면) : 사회보험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과 연금을 줄 수 있게하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국가 휴양소, 정양소, 야영소들에서 무료로 쉴 수 있게 보장하여 줄 것입니다.</p>
------	---

○ 국가사회보장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에서 근무하다가 노동능력은 완전히 또는 오랫동안 상실하였거나 사망한 경우에 그와 그 유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혜택제도를 말한다 고 한다.

북한의 「국가사회보장제」는 그 대상에 있어서 현직에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현직 노동자, 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72조 :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이 국가적 과업을 수행하다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랫동안 잃거나 사망한 경우에 그와 그 유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예산으로부터 돌려지는 물질적 보장형태.</p>

북한용례	<p>국가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은 혁명투사들과 군인(경비대, 사회안전원, 인민유격대 포함)들, 노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 기타 무의탁한 사람들이다. 국가사회보장은 현직에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현직노동자, 사무원(장학금을 받는 학생 포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회보험과 구별된다. 국가사회보장은 ①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②의료상 방조, ③사회보장보호시설(양로원, 양생원)에서의 보호, ④사회보장대상자의 일자리 보장 등의 형태로 실시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에서 일하다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래동안 잃거나 사망한 경우에 그와 그 유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혜택. 공화국의 국가사회보장제도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건강과 생활향상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인민적 시책의 뚜렷한 표시의 하나이다.</p> <p>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470면) : ... 노동자, 사무원들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 무상으로 되는 정양 및 휴양, 무상치료, 무료교육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p>
------	---

○ 창의고안자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것을 창안해낸 자를 말하는데, 북한의 형법은 창의고안자의 창의고안을 목살 또는 도용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년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113조).

관계법조항	<p>헌법 제74조 :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창의고안을 한 사람.</p>

○ 저작권

외부적 형식으로 표현된 과학, 문학 및 예술의 창작품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가 포함된다.

북한의 형법은 이러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을 목살 또는 도용한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년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113조).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74조 :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p>
<p>북한응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과학, 문학 또는 예술의 창작품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권의 대상은 외부적 형식으로 표현된 과학, 문학 및 예술의 창작품이다. 학술적인 보고, 강의와 같은 말로 된 작품과 서적, 희곡과 같은 서면작품, 조형예술작품, 각종지도와 설계도, 사진작품들은 모두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저작권은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포함된다.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에는 이름에 대한 권리(작품에 자기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작품의 불가침성에 대한 권리(자기 작품을 변경없이 그대로 발표할 수 있는 권리), 작품의 발표에 대한 권리가 속한다. 창작자의 재산적 권리에는 작품을 복제하거나 보급할 수 있는 권리와 작품의 리용에 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제도는 과학, 문학, 예술을 주체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며 창작활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p>

○ 발명권

과학기술적 가치가 높고 인민경제적 의의가 큰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하는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가 포함된다.

북한의 형법은 이러한 발명권을 침해하여 발명을 목살 또는 도용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년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보호하

고 있다(113조).

관계법조항	헌법 제74조 :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발명을 한 사람이 자기 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및 재산적 권리.

○ 창의고안권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새로운 주장(발기)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고안을 한 창의고안자가 자신의 창의고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데, 여기에는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가 포함된다.

북한의 형법은 이러한 창의고안권을 침해하여 창의고안을 목살 또는 도용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년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113조).

관계법조항	헌법 제74조 :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창의 고안을 한 사람이 자기의 창의고안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및 재산적 권리. 창의고안자는 해당한 증서를 받을 권리, 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남녀평등권

여성들이 국가생활 및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평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북한은 1946년 7월 30일에 최초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그 법령에는 선거의 동등권·노동 및 교육의 평등권·강제결혼의 금지·이혼의 자유·축협제도금지·매매결혼금지·창녀제도 및 기생제도의 금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고, 아울러 이 법령 공포일을 소위 「남녀평등권법령 발표기념의 날」이라고 하여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그후 북한의 1948년 헌법 제11조에 헌법적 보장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의 남녀평등권은 문면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에서 여자들도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갖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을 지키는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형식적인 권리로서 여성들이 일반노동 뿐만 아니라 석탄과 광석을 캐내는 유해노동에까지 이용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76조 :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남녀평등권은 녀성들이 국가 및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남자와 동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녀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실현하는 문제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녀성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평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녀성들은 국가법령에 의하여 남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모든 사회활동과 국가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41면).</p>

○ 산전산후휴가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전후 5개월동안 국가로 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받으며 휴식이 보장되는 북한 노동법상의 휴가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보장여부는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에 의문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76조 :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우리나라에서 여성근로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건강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아이를 낳기 전과 후의 일정기간 계속 휴식하도록 보장해주는 로동법상 제도. 여성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의 산전산후 휴가기간은 77일이며 이 기간에 여성로동자, 사무원들은 정액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으며 여성협동농장원들은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해당한 로력 일을 받는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근로여성들이 아이를 낳기전과 아이를 낳은 뒤에 일정한 기간 보조금을 주면서 휴식시키는 로동법상의 휴가. 우리나라에서는 산모들에게 산전산후 5개월의 휴가를 줌으로써 그들과 젖먹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정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p>

○ 결 혼

가정을 이루는 남녀간의 결합을 말하는데, 북한의 가족법은 결혼정령에 이른 남녀가 자유로이 결혼시기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결혼의 권리를 선언하고(제8조), 결혼정령으로서 남자18세·여자17세로 규정하며(제9호), 8촌까지의 혈족과 4촌까지의 인척에 대한 근친간의 결혼을 금지하고(제10조), 결혼은 합의로 성립되며 신분등록기간에 결혼등록을 합의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결혼등록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제11조·제

14조)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족법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할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노동력 착취를 위한 만혼을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77조 :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p> <p>가족법 제2조 :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p> <p>가족법 제8조 :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p> <p>가족법 제14조 : 무효로 인정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자녀 양육문제는 이 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해결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이루는 남녀간의 결합. 결혼은 혁명과 건설에 더 잘 복무하기 위하여 혁명동지로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풀어나가려는 혁명적 리념에서 맺어진 다. 결혼은 공민의 자유로운 합의로 성립되며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평등하다. 결혼전의 성을 그대로 가지며 주소선택과 직업선택에서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결혼전 재산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보존하며 결혼생활 중 얻은 재산은 합동소유를 이룬다. 또한 노동능력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것.</p>

○ 가 정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하는 구성체를 말한다.

북한은 1968년 3월 소위 여맹회의에서 「가정의 혁명」을 제창하였고, 그후

1970년 11월의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가정의 혁명화」를 재차 강조하여 생명의 존엄성,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와 애정을 목살하고 자녀들을 당과 김일성을 위한 결사대·근위대를 육성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가족이 담당하던 사회적 기능을 당과 사회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호적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가정의 개념을 축소시켜 왔다.

그러나 1990년 10월 24일에 새로 제정되어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북한의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대가정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가족부양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축소시키고 있다. 즉, 형제자매의 부양의무(제36조)·조부모의 손자녀부양의무(제35조)·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가정성원의 부양의무(제37조) 등을 규정하고, 계모와 계부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 있어서 부모의 친권행사는 국가에 의해 대단히 제한받고 있는데, 국가가 탁아소·유치원·육아원·애육원을 통하여 직접 아동을 보육·교양함으로써 아동들을 혁명가·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개조하고 있고, 아울러 부모의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7조).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77조 :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p> <p>가족법 제3조 :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p> <p>가족법 제15조 : 가정을 공고히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공민은 가정을 화목하고 명량하게 꾸려야 한다.</p> <p>가족법 제17조 :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p> <p>가족법 제18조 :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p> <p>가족법 제19조 : 남편과 안해는 로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p>
-----------------------	---

<p>관 계 법 조 항</p>	<p>가족법 제25조 :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이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p> <p>가족법 제26조 :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p> <p>가족법 제27조 :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p> <p>가족법 제28조 :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p> <p>가족법 제35조 :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인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한다.</p> <p>가족법 제36조 :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 주어야 한다. 돌볼 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p> <p>가족법 제37조 :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가정성원들 중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함께 사는 가족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p> <p>가족법 제38조 : 이 법 제37조에 지적된 부양자가 없는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가 돌보아 준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사회의 한 세포. 은 사회를 혁명화하는 데서 선차적이며 기초적인 단위로 된다.</p> <p>김일성저작선집(15)(조선로동당출판사, 339면) :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사회의 세포입니다.</p>

○ 결혼등록

북한의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령사대표기관에 하여야 하고, 령사대표기관이 없으면 그 나라의 해당기관에 할 수 있으며, 결혼등록을 하지 않은 결혼은 무효로서 재판소가 무효인정을 하고, 결혼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자녀양육문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미만의 자녀는 모가 양육하고, 그외는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부가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소가 정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가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자녀수에 따라 월 수입의 10~30%범위내에서 재판소가 양육비를 정한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77조 :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p> <p>가족법 제11조 :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p> <p>가족법 제12조 : 다른 나라에서 사는 조선공민들의 결혼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에 하며 령사대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 기관에 할 수 있다.</p>
--------------	---

○ 인신의 불가침

공민이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공민의 기본권리의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원칙 등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인신구속을 수사기관 및 예심원에서 결정하고 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영장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피소자의 인권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의문스럽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78조 :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공민이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것. 공민의 기본권리의 하나이다.

○ 주택의 불가침

공민이 검사의 승인없이 살림집의 수색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공민의 기본권리의 하나라고 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수사일군과 예심원이 검사의 승인하에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색을 할 때에는 수색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영장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78조 :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

○ 서신의 비밀

북한의 「서신의 비밀」은 편지를 비롯한 우편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공민의 권리를 말하고, 인신의 자유에 관한 민주주

의적 권리(북한은 민주주의를 주권을 틀어쥐고 계급이 자기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계급적 독재의 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로서 언제나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서신의 비밀」 보장은 해당 거래자들 사이에서만 알아야 할 개인적 비밀들을 철저히 엄수해줌으로써 화목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민에게는 적용되지만 인민의 원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78조 :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

○ 구 속

수사기관(수사의 권한이 있는 사회안전기관, 국가보위기관의 수사일군 및 수사권한 있는 군관, 내무원 및 노동·세무·상업·소방 등의 모든기관의 감찰원, 그리고 필요에 따른 검사)의 판단 또는 예심의 결정에 따라 피심자(공소 제기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혐의자 및 예심단계에 있는 자)를 감금하는 강제행위를 말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에 회피하거나 사건조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심원이 구속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구속처분의 종류로서는 피심자를 구류하는 구속처분·피심자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피심자를 정해진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사전에 법원의 영장발급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기관 등의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78조 :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수사기관의 판단 또는 예심기관이나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범죄를 감행한 자들을 가두어 두는 강제행위. 구속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한 경우와 예심기관이나 재판소의 구류보전 처분의 결정 및 재판소가 내린 유죄판결의 집행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계급적 원수들과 악질 범죄자들의 책동을 저지시키며 그들의 죄행을 낱날이 밝히고 처벌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된다. 구속에는 구류장에 가두는 구류와 구속되는 자의 집에 가두는 자택구속이 있다. 구속은 반드시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인을 구류장이나 또는 자기집에 가두어두는 것.</p>

○ 체 포

범죄자의 혐의를 받았거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구속하는 수사기관등의 권력적 활동을 말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법에 규정이 없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체포날자와 이유를 알려주어야 하며,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구류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석방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78조 :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헌법 제99조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p>
--------------	---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범죄자의 혐의를 받았거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보전 처분에 앞서 구속하는 권한있는 국가기관 일군의 권력적 활동. 체포의 목적은 반혁명분자들과 기타 악질범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적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체포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일군에게도 부여된다. ①범죄자가 범죄행위를 감행하던 중 또는 그 직후에 발견된 때, ②피해자 또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혐의자를 범죄자라고 가리킨 때, ③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의 흔적이 나타난 때, ④혐의자가 도망치려하거나 혐의자의 주소, 직장 또는 신분이 뚜렷하지 못할 때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와의 투쟁을 전군증적으로 전개할 때 대한 김일성의 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수사, 예심기관의 사업을 현지군증들에게 접근시키는 형식으로 창조된 공개체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공개체포는 노동자, 사무원들의 직장종업원총회 또는 도시와 농촌의 주민총회 같은데서 군중자신이 범죄자를 적발 폭로하고 그를 법적 처리에 넘길 것을 결정한 데 따라 한다. 공개체포는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는 한편 일부 불건전한 사람들에게 강한 자극을 줌으로써 그들을 교양 개조하는 방도로 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자나 범죄혐의자를 붙잡는 것 또는 그 권력적 활동.</p>
-------------	--

○ 수 색

수사기관이나 예심원이 범죄와 관련된 사람을 찾아내거나 증거물을 얻기 위하여 신체·재산·주택 및 그밖의 일정한 장소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수사일군 및 예심원이 검사의 승인하에서 수색할 수 있는데,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으며, 또한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수색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하고, 수색과정에서 알게된 범죄사건과 관련없는 개인적 비밀은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수색을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78조 :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61조 :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범죄자들의 죄행을 밝힘에 있어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나 감추어진 물건 또는 문서를 찾아내거나 체포해야 할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한 예심 또는 수사기관의 권력적 활동.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는 물건 또는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에 대한 공화국 공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데로 부터 나온 것이다. 예심원은 수색에 앞서 수색결정서를 내야하며 수색을 할 때에는 립회인을 참가시켜야 한다. 수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서는 조서를 적어야 한다. 문서 기타의 물건을 압수했을 때는 그 목록을 조서에 붙인다. 수색은 반혁명분자를 비롯한 일체 범죄자를 적발, 체포하며 사건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해결을 보장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논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와 관련된 사람을 찾아내거나 증거물을 얻기 위하여 사람의 몸, 물건, 집 그밖의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일 또는 그 예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활동.</p>

○ 망명은 다른 나라 사람

자기나라에서의 정치적 탄압을 피하여 북한으로 옮겨온 자를 말하는데, 북한의 국적법은 이러한 외국인에 대하여 민족별 및 인종별에 관계없이 그의 청원에 의하여 북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북한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북한의 공민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7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기 나라에서의 정치적 탄압을 피하여 다른 나라로 옮겨온 사람.</p>

○ 국가재산

북한의 국가재산은 국가적 소유에 속하며, 국가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소유권제도는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민법이 소유권의 주체가 국가이든 법인 기타 단체이든 개인이든 구별없이 하나의 소유권 개념으로 규제함에 반하여 그 소유권의 주체에 따라 국가소유권·협동단체소유권·개인소유권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들은 국가소유가 북한의 이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로서 국유화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밖에 국가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제한없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84조 :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적 소유에 속하며 국가의 관할 밑에 있는 모든 재산.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재산은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발전과 전체 근로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복무한다.

○ 공동재산

북한의 공동재산은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모든 성원들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들에게 공동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국가

재산(국가적 소유의 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협동적 소유의 재산)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84조 : 국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모든 성원들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들에게 공동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동재산은 국가적 소유의 재산과 협동적 소유의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계속 늘이는 것은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이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중요한 표현의 하나로 된다.</p>

○ 사회협동단체재산

북한의 사회협동단체재산은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의 재산으로서, 협동단체 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협동경리의 생산물, 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와 문화보건시설,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을 소유할 수 있고, 자기의 소유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리용, 처분할 수 있으며, 자기의 소유재산이 권한없는 자로 부터 다른 협동단체나 국민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협동단체이다.

북한이 이러한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집단적 소유형태로서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헌법제21조는 "...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고 규정하여, 북한의 소유형태는 국가소유

가 원칙이고 단체소유는 과도기적 소유권제도임을 알 수 있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84조 :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

5. 言語異質性을 反映하는 用語

○ 산 원

임신모의 출산을 돕는 보건기관으로서 산과·부인과·갓난아이과 등의 전문 진료과와 보조진단치료시설 및 약무시설(조제실)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76조 :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산모가 순조롭게 몸을 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고 돌봐주는 보건기관. 산과, 부인과, 갓난아이과를 비롯한 필요한 전문치료과들과 보조진단치료시설, 약무시설 등이 있다.

○ 탐오랑비

국가재산이나 사회의 공동재산을 남모르게 빼들려 제것으로 만들거나 함부로

써버리는 범죄적인 행위를 말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84조 : 국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재산이나 사회의 공동재산을 남모르게 빼돌려 제것으로 만들거나 함부로 써버리는 범죄적인 행위.

○ 배 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민족을 저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북한의 형법은 「공화국 국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제47조)」고 규정하여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86조 : 조국보위는 국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민족을 등지고 탄길로 나가는 것. 의리와 신의, 사랑과 믿음, 원칙과 의무, 약속과 동맹관계 등을 어기고 저버리는 것.

IV. 國家機構編

북한헌법은 제6장 「국가기구」(제87조 내지 제167조)에서 ‘최고인민회의’, ‘주석’,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재판소와 검찰소’ 등의 권력구조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지만, 권력간의 견제장치나 헌법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구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 헌법령의 해석권을 부여하며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으로서 사법사업(司法事業)을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존중되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더욱이 헌법 제11조에서 조선로동당을 초헌법적 권력기구로 상정함으로써 권력구조의 민주화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권력구조의 민주화는 기본권보장의 실질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헌법 제6장 국가기구부분은 북한헌법의 반입헌주의적 요소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헌법의 국가기구에 관한 주요헌법용어를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1. 國家機構關聯 憲法用語

○ 국가기구

정치적 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가기관들의 총칭. 즉, 국가기관체계의 총체를 의미하며, 국가기관들은 종합적으로 하나의 국가기관을 이룬다.

이러한 국가기구의 성격과 내용은 그 국가의 계급적 본질과 그 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사회경제제도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6장 국가기구(제87조~제167조)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3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제5절 정무원 제6절 지방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독재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국가기관체계의 총체. 국가기관들은 종합적으로 하나의 국가기구를 이룬다. 국가기구는 직접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체로서 자기 활동에서 법적 수단을 리용한다. 이 점에서 국가기구는 지배계급의 독재체계내의 기타의 인전대들과 주요하게 구별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가기관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국가기구의 성격과 내용은 그 국가의 계급적 본질과 그 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사회경제제도에 의하여 규정된다.</p>

○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인민의 대표인 대의원으로 구성된 최고주권기관 또는 그 회의로서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와 더불어 입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입법기관이라고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임기 5년이며, 헌법 수정·법령의 제정 또는 수정·최고인민회의 채택법의 승인·국가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수립·국가기관(주석·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중앙재판소·중앙검찰소·정무원 등의 선거 또는 소환)의 구성·국가인민경제발전계획 및 실행정형의 심의승인·국가예산과 집행정형의 심의승인·중앙국가기관의 사업정형에 대한 대책수립·조약의 체결 및 비준·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의 결정 등을

그 권한으로 하고, 산하에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외교위원회·통일정책위원회 등을 두며,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과 휴회중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불체포 및 불처벌권을 보장받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p> <p>헌법 제6조 :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p> <p>헌법 제87조 :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p> <p>헌법 제88조 :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행사한다.</p> <p>헌법 제89조 :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p> <p>헌법 제90조 :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헌법 제91조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

<p>관 계 법 조 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최고인민회의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최고립법기관. 1948년 8월에 진행된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총선거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 공민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임기 5년의 인민대표제 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헌법을 승인 또는 수정하며 법령을 채택한다. 또한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며 내각을 조직하며 최고재판소를 선거하고 검사총장을 임명한다. 그리고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을 심의 또는 승인하며 대사권을 행사하는 등 국가의 중요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출한 인민의 대표인 대의원들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주권기관 또는 그가 여는 회의. 임기는 4년이며 립법권을 행사한다.</p> <p>김일성저작선집(1)(조선로동당출판사, 262면) :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우리의 최고주권기관인 조선최고인민회의가 선거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으며 공화국의 중앙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p>

○ 최고주권기관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기관 체계의 최고지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 헌법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최고주권기관이다. 그러나 형식상의 최고주권기관에 불과하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87조 :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최고기관. 국가의 모든 권력을 들어주고 있으며 국가기관체계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이다.

○ 휴 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는데,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 의해 연1~2차 소집되고,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전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며,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상무기관으로 된다.

이러한 최고인민회의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기간을 제외한, 즉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휴회」라고 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87조 :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헌법 제91조제3호: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열렸던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 상무기관

일정한 조직체나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거 또는 임명의 형태로 수권받아 활동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최고인민회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87조 :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일정한 조직체나 기관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따로 선거되거나 임명된 기관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기관.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무기관으로서 의장(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겸임)·부의장(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겸임)·사무장·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결정을 채택하고, 그 임무와 권한으로서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의 심의결정과 현행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으며, 현행법령을 해석하고,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하고,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하며,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87조 :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	--

○ 입법권

북한의 입법은 최고주권기관이 법을 채택·수정·폐기(제정·개정·폐지)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이러한 북한의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가 수행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상무기관인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입법기능을 수행하되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88조 :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행사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최고주권기관의 법제정활동. 우리나라에서 법령의 제정은 오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만이 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립법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에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을 받는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 인민의 최고주권기관인 인민회의를 창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형태입니다. 인민회의는 인민이 직접 선거한 의원들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인민의 리익을 보장하는 모든 법령을 제정하며 이 법령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인민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조직합니다(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59면).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을 채택, 수정 또는 폐기하는 활동. 우리나라에서 법제정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만이 한다.</p>

○ 임 기

선거 또는 임명을 통하여 특정한 직무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사람 또는 기관의 업무수행기간을 말하는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주석·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 등의 국가기관에 대하여 동일하게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지방인민위원회·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임기를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하면서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90조 :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선거되거나 임명된 사람 또는 기관이 맡은 직무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우리나라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이다.
------	--

○ 결 정

국가 또는 주민의 태도와 행동방향 등을 정한 규범을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지방인민회의·지방인민위원회·지방행정경제위원회 등이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와 중앙인민위원회의 결정을 공포할 수 있고, 중앙인민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 등의 결정을 감독하며 그에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을 폐지할 수 있으며, 정무원은 정무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을 폐지할 수 있고,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을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하고,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을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을 폐지할 수 있고, 검찰소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지시, 주석의 명령, 국방위원회의 결정·명령,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결정·지시, 정무원의 결정·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97조 :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	--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02조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헌법 제107조제3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p> <p>헌법 제11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p> <p>헌법 제120조제5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헌법 제121조 :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p> <p>헌법 제126조제9호 :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헌법 제129조 :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헌법 제136조 제8호 :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헌법 제140조 :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p> <p>헌법 제143조제4호·제8호 :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p> <p>헌법 제144조 :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헌법 제149조제2호·제7호 :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	--

<p>관 계 법 조 항</p>	<p>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헌법 제150조 :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헌법 제165조제2호 :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가질 태도나 행동 방향 등을) 정하는 것 또는 정한 그 내용.</p>

○ 수정

북한은 헌법 및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하는데, 북한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이루어지고, 현행법령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심의·채택하여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법령수정안을 채택한 경우에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헌법 제91조제1호·제2호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헌법 제97조 :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p>
--	---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01조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 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본래의 내용이나 상태와는 다르게 고치거나 손대는 것.</p>

○ 법 령

최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제정하고 주석이 공포하는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문건을 말한다.

북한은 종래 법령은 입법제의·법안심의·법안가결·법령공포의 단계를 걸쳐 제정되며 기본법령(헌법)과 보통법령(민법·형법·인민경제계획에관한법령·국가예산에 관한 법령)으로 구분된다고 하여 헌법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있었지만 1992년 헌법에서는 헌법과 법령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현행 헌법은 헌법과 법령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의 수정과 법령의 제정·수정을 할 권한을 가지는데 법령을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되며,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헌법의 제정에 대한 규정은 없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 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여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으며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할 경우에 이에 어긋나는 법규를 폐지하고

현행 법령에 대한 해석을 하며,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을 공포할 권한을 가지고, 중앙인민위원회는 헌법·최고인민회의의 법령 등의 집행정형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이에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의 정지와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를 할 권한을 가지며, 검찰소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최고인민회의의 법령 등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97조 :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p> <p>헌법 제101조제1호·제2호·제3호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 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p> <p>헌법 제107조제3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3.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p> <p>헌법 제120조제5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헌법 제91조제1호·제2호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p> <p>헌법 제165조제1호·제2호·제3호 :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p>
------------------	---

<p>관계법조항</p>	<p>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p> <p>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법의 한 종류로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되는 법 문건. 법령은 오직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채택되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른 법규법적 문건들은 법령에 기초하여 채택되거나 그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우리나라 법령은 립법제의, 법안심의, 법안가결, 법령 공포의 단계를 걸쳐 제정되며 기본법령(헌법)과 보통법령(민법, 형법, 인민경제계획에 관한 법령,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으로 구분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최고립법기관이 제정하고 공포하는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문건. 우리나라에서 법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채택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공포한다. 기본법령과 보통법령으로 구분된다.</p> <p>김일성저작선집(2)(조선로동당출판사, 145면) : ... 법이란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 것만이 아닙니다. 인민경제계획도 법이며 국가재정예산도 법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국가의 정책과 시책들을 법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p>

○ 채택

결의 또는 향후 지침 등을 결정하여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 헌법상의 표현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결정의 채택 및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의 채택,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법안과 현행 법령수정안의 채택을 발견할 수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91조제3호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3.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p> <p>헌법 제96조 :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p>
--------------	---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97조 :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헌법 제101조제1호·제2호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 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결의·결심, 의견 같은 것을) 결정하여 취하거나 앞으로 할 일을 내세우는 것.</p>

○ 승 인

국가기관이 행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 당해 상급국가기관이 인정 또는 허락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조치를 말하는데,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채택한 법 및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91조제3호·제16호: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3.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 무엇을 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것.</p>

○ 제 의

각 국가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구성권을 가진 최고기관에 구성원 후보를 추천 또는 제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주석의 제의에 의해 부주석 또는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위원장·부장·그밖의 정무원 성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91조제6호·제8호·제14호·제15호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의견이나 안을 내는 것 또는 그 의견이나 안.

○ 임 명

상급기관이 특정한 임무 또는 직무(직책)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91조제13호·제15호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5.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일정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어떤 직무를 위에서 맡겨서 하도록 하는 것.

○ 해 임

상급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인에게 부여한 임무 또는 직무(직책)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91조 제13호: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맡긴 직책을 그만두게 하는 것.

○ 정무원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을 말한다.

북한의 정무원은 주석의 제의에 의해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선출(소환)되는 총리와 총리의 제의에 의해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임명되는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 성원으로 구성되며, 정무원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아래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에 따라 주석은 정무원회의를 소집·지도할 수 있으며, 중앙인민위원회는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부를 설치·폐지할 수 있고, 임기는 5년이다.

또한 정무원의 헌법상의 임무와 권한은 각 위원회·부·정무원 감독기관·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의 지도, 정무원 직속기관의 설치·폐지, 국가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대책의 수립,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대책의 수립, 공업·농업 등의 여러 부문 사업의 조직과 집행, 화폐·은행제도의 수립, 조약체결 등의 대외사업수행, 사회질서의 유지·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의 수립, 정무원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이고, 정무원의 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의 토의·결정을 위한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의 토의·결정을 위한 총리·부

총리·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가 있으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내고,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부도 지시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91조제14호·제15호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p> <p>헌법 제107조제2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2.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p> <p>헌법 제120조제2호·제6호·제7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헌법 제125조 :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p> <p>헌법 제126조 :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6.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	---

<p>관계법 조항</p>	<p>헌법 제127조 :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들로 구성한다.</p> <p>헌법 제128조 :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p> <p>헌법 제129조 :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헌법 제130조 :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헌법 제131조 : 새로 선거된 정무원 총리는 정무원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앞에 선서를 한다.</p> <p>헌법 제132조 : 정무원 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 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하며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 정무원은 위원회, 부, 직속기관,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사업을 지도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최고인민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p>

○ 보고

국가기관이 자신의 임무나 과업수행의 정형을 상급기관에 문서 또는 구두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91조제16호·제17호·제18호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받은 임무나 과업수행 정형을 조직이나 웃기관에 문건이나 말로 알리는 것 또는 그런 문건. 사업과 생활에서 나서는 문제를 조직과 웃기관에 알리는 것.</p>

○ 심 의

특정 사안에 대하여 관할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심사·토의하는 것을 말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91조 제16호·제17호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헌법 제69조 :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형법 제26조 :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범죄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다. 재판소는 반국가 범죄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선거권 박탈문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선거권의 박탈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p>

○ 조 약

국가간의 일정한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체결한 국제적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조약체결은 정무원이 주관하고,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는 중앙인민위원회가 담당하며,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의 공포는 주석이 행하고,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의 결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약체결국을 제외한 제3국에는 미치지 아니하는데, 조약의 효력발생은 국제조약 서명시기·비준서 교환시기·조약자체에 지적되어 있는 기타 시기에 발생하고, 국제조약의 예견된 기간이 끝나거나 체결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된다고 한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91조제19호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p> <p>헌법 제107조제5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p> <p>헌법 제120조제9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p> <p>헌법 제126조제7호 :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p>
북한옹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조약을 맺은 나라들에게서 조약에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지키게 하는 구속력. 국제조약의 효력은 조약체약국을 제외한 제3국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국제조약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①국제조약 서명시기, ②비준서 교환시기, ③조약자체에 지적되어 있는 기타 시기에 발생한다. 국제조약의 효력은 예견된 기간이 끝나거나 체약국들이 합의하였을 때에 소멸된다. 국가들의 합의에 의하여 효력이 끝나게 되는 주된 법적 형식은 수정과 폐기이다. 조약의 수정은 체약국들의 합의에 근거하여 조약이 재검토되고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조약의 폐기는 조약에 예견된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조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p>

<p>북한용례</p>	<p>조약의 폐기에는 합의에 의한 것 외에 체결국 일방의 일방적 폐기도 있다. 일방적 폐기는 체결국 상대방이 조약의 본질적 조건을 리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체결국 상대방의 강요에 의하여 불평등적이며 예측적인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서만 합법적인 것이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1992) :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분야에서 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라들 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해서 규정하는 국제적 합의.</p>
-------------	---

○ 조약의 비준

국가의 정권대표가 조인한 조약문건을 최후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조약의 체결은 정무원이 담당하되 비준에 대해서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수행할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된 조약의 비준 결정은 최고인민회의가 수행하고, 조약의 공포는 주석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1972년 헌법은 조약의 체결은 정무원이 담당하되 비준은 주석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2년 현행 헌법은 조약의 비준에 대한 주석의 권한을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에 위임하고, 조약의 공포안을 주석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징을 가지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91조제19호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p> <p>헌법 제107조 제5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p> <p>헌법 제120조제9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p> <p>헌법 제126조제7호 :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p>
--------------	---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최고법법기관이 전권대표에 의하여 서명된 국제조약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의 정권대표가 조인한 조약문건을 최고주권기관이 최후로 확인하는 행위.</p>
-------------	---

○ 국방위원회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최고군사지도기관을 말하는데,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중요 군사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군사칭호의 제정과 장령이상의 군사칭호수여·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할 임무와 권한을 가지며, 위원장·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되고, 결정과 명령을 발하며, 임기는 5년이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할 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국방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 토의할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중앙인민위원회는 국방위원회 결정·명령을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1972년 헌법은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구성하면서 주석이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2년 헌법은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독립시키고, 종래 주석이 가지고 있던 일체 무력의 지휘·통솔권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로 이양하면서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91조제7호·제8호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	---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95조 :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p> <p>헌법 제11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p> <p>헌법 제11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p> <p>헌법 제11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p> <p>헌법 제11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p> <p>헌법 제11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p> <p>헌법 제11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p> <p>헌법 제120조제5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헌법 제165조제2호 :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p>
----------------------	--

○ 국가기관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국가의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 즉 국가에 제기되는 일정한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국가기관들은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전국가적으로는 하나의 통일적인 국가기구체계를 이룬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계급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앞에 나서는 일정한 사업부문을 담당 수행하는 기관. 공화국 국가기관은 내외의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전취물을 존건히 지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로동계급의 권력조직이다. 국가기관들은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일정한 체계를 이루며 전 국가적으로는 하나의 통일적인 국가기구체계를 이룬다. 공화국 국가기관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실현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에 따라 주권기관, 집행기관, 재판 및 검찰기관 체계로 나누어진다. 또한 선거 제기관과 임명제 기관으로도 나누어진다. 국가기관의 성격과 사명은 국가권력을 틀어쥔 계급의 본질에 의하여 규정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국가의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 주권기관, 집행기관, 사법검찰기관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의 국가기관은 우리 당로선의 집행자이며 그 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이다.</p> <p>김일성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97면) : 우리의 국가기관은 우리 당의 총로선의 집행자이며 그 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입니다.</p>

○ 거수가결

회의체의 안건 또는 토의사항에 대한 결정방식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손을 들어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북한의 헌법은 선거제도에 대하여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를 보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흑백합선거」·「단일합선거」를 실시하여 북한정권이 의도하는대로 소위 100%투표에 100%찬성을 획득하고 있

는데, 최고인민회의의 법령과 결정에 대한 가결방식을 대의원의 거수가결방식으로 취하고 있는 점은 최고인민회의를 형식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97조 :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회의에서 손을 들어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안건이나 토의사항에 대하여 가결하는 것.

○ 불가침권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특권의 하나로서 그의 신체·활동이 법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받는 권리이다.

북한의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대하여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하면서 최고인민회의의 승인 또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의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승인하에서만 체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유사하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99조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	---

○ 법안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서 채택 또는 승인을 받

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외교위원회·통일정책위원회 등)이 작성한 법초안을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위원들이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지도하에서 사업을 수행하므로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 법안을 제출하고, 최고인민회의는 이 법안과 현행 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여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91조제1호·제2호·제3호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p>헌법 제98조 :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p> <p>헌법 제101조제1호·제2호·제3호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 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	--

○ 수정안

법령을 개정하고자 제기된 법안을 말하는데, 우리 헌법상의 법률개정안과 유사하다.

북한의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으로서 「헌법의 수정」과 「법령의 수정」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임무와 권한으로서 「현행 법령의 수정안의 심의·채택」과 「법수정안을 채택할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를 폐지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91조제1호·제2호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p> <p>헌법 제101조제1호·제2호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 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본래의 안을 수정하여 고친 안.</p>

○ 법 규

일반적으로 법규범과 규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북한의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한 경우에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헌법과 북한의 최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제정하는 법령을 제외한 그 하위의 법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101조제2호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과 규정 또는 법규범과 규정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p>

○ 법령의 해석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현행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권 해석을 말한다.

북한의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와 상무기관인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면서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 대하여 현행법령의 해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명령·규칙의 위법여부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최종심사하도록 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와 다른 별도의 국가기관에서 위헌·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다르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101조제3호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령>의 뜻과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또는 그 설명.

○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

북한은 법을 제정·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나라의 최고입법기관을 「국회」라고 하고, 그러한 국회의 구성원들이 국제적으로 연합하여 결성한 기구를 「국제의회기구」라고 한다.

북한헌법은 다른 나라 국회와 국제의회기구들과의 대외사업에 대하여 그들의 최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인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101조제10호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나라의 정사를 토의하고 법을 채택하는 국가의 최고법률기관 또는 그 회의. 국회의 명칭은 나라마다 다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어서의 국회는 표면상 일반선거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구성되는 듯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지주, 자본가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합법화하는 도구이다. 미제의 총칼에 의하여 꾸며진 남조선 국회는 미제의 식민지 파쇼통치와 침략전쟁정책을 합법화하는 위장물이며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 자본가, 반동관료배들로 꾸며진 반인민적이며 예속적인 파쇼통치기관이다.</p>
------	--

○ 지 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업무등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명령을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북한의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지방인민위원회·지방행정경제위원회가 지시를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중앙인민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지시와 중앙인민위원회의 지시를 감독하되 그에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며 국가기관의 지시를 폐지하고, 정무원은 자신의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지시를 폐지하고, 지방인민위원회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또한 직근 상급기관의 지시를 집행하되 하급기관의 그릇된 지시를 폐지하며 검찰소는 국가기관의 지시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상위규범 및 지시의 위반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102조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헌법 제120조제5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	---

	<p>5.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헌법 제121조 :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p> <p>헌법 제126조제9호 :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헌법 제129조 :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헌법 제136조제8호 :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헌법 제143조제8호 :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p> <p>헌법 제144조 :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헌법 제149조제2호·제7호 :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헌법 제150조 :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헌법 제165조제2호 :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웃기관이나 조직 또는 웃사람이 아래에 무엇을 하라고 가리켜 요구하는 것 또는 그러한 내용.</p>

○ 주 석

국가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최고지위를 말하는데, 북한은 1972년 이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집단적 대표기관으로 하여 상임위원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내세워 왔으나 1972년 헌법에서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가 되며,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 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행정·군사·외교·입법 등의 국가기관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임기 4년의 절대권력자 지위로서 1인 체제의 주석제도가 창안되었다. 그러나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자 1972년 헌법의 주석권한조항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1992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헌법규정상 「절」로 독립시키고 주석의 권한 중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이양하여 헌법상의 충돌을 해결하게 되었다. 현행 1992년의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가 주석을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고 권한으로는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로서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하며, 정무원위원회를 소집·지도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하며, 특사권을 행사하고, 조약의 비준·폐기를 공포하며, 외교대표의 임명·소환을 발표하고,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하며, 주석의 명령을 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 조 항	<p>헌법 제91조제5호: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헌법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p> <p>헌법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p> <p>헌법 제10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p>
------------	--

<p>관계법 조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 6.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p>헌법 제10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p> <p>헌법 제10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p> <p>헌법 제1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p> <p>헌법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p> <p>헌법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최고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최고령도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수반으로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되며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로서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주석은 국가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하며 명령을 내며 특사권을 행사한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고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p>

○ 국가의 수반

국가주권의 최고대표자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1972년 헌법이전까지는 집단체제를 유지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국가의 최고대표자로서 국가수반의 지위를 보유하였으나 1972년헌법에서 1인체제인 「주석」제도를 창안함으로써 주석이 북한의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최고대표자로서의 지위인 국가의 수반이 되고 있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10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주권의 최고 대표자. 주석, 대통령, 위원장, 황제 등 여러가지 이름을 띤다. 우리 공화국의 수반은 국가기구 총체와 국가활동 전반에 대한 최고의 유일적 령도자로서 공화국의 국가주권을 대내외적으로, 유일적으로 대표한다. 공화국 국가수반은 또한 최고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로서 그 사업을 직접 지도하며 국가의 주권기관과 모든 행정 및 검찰기관들의 사업과 국방사업을 유일적으로 령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수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 권한

국가기관이 적법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107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2.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 6.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권리나 권력 또는 직권이 미치는 범위.

○ 정령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가 채택하고, 주석이 공포하는 법문건(법규범)을 말하는데, 북한의 1972년 헌법이전에는 집단적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공포하였지만 1972년 헌법과 1992년 헌법은 정령의 채택권을 중앙인민위원회로, 정령의 공포는 주석에게 이양하여 규정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107조 제3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헌법 제121조 :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가 채택하고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명의로 공포하는 법문건.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기 이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하고 공포하였다.</p>

○ 공 포

국가기관이 채택·체결한 법문건(법규범)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법령·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 및 조약의 비준·폐기를 주석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107조 제3호·제5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세상에 발표하여 널리 알리는 것.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법)이 토의결정되며 온 세상에 널리 공포되었다.</p>

○ 특사(권)

개별적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형사소추의 중지 또는 전과의 말소 등을 행하는 체포를 「특사」라고 하며, 개별적 범죄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부류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대사」와 구별되고, 이러한 특사를 실시하는 권한을 「특사권」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특사권을 주석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07조제4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4. 특사권을 행사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특별히 지적된 개별적 범죄자의 형벌을 벗겨주는 제도. 특사에는 형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가벼운 형벌로 바꾸거나 형사책임 추궁을 그만두거나 전과를 벗겨주는 등의 문제도 포함된다. 특사는 기본계급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한때 죄를 범하고 그후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친 경우에 적용된다. 흔히 형집행 과정에 있는 개별적 수행자들이 작업에 성실하며 교화소내에서 규율을 잘 지키며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개별적 방법으로 실시된다. 특사는 개별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점에서 일정한 부류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대사와 구별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 범죄자의 형벌을 완전히 벗겨주거나 낮추어주는 것 또는 그 제도.</p>

○ 조약의 폐기

조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정무원이 조약을 체결하고, 중앙인민위원회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행하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를 결정하고, 주석이 조약의 비준·폐기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07조제5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조약, 협정, 법령 등을) 무효로 하고 없애버리는 것. 낡은 반동정권이 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일체 모든 반인민적이며 예측적인 조약을 폐기해 버리는 것은 새로운 자주적 발전의 길에 들어선 제3세계 나라들의 응당한 권리이다.</p>

○ 외교대표

국가의 명의로 일정한 대외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이 파견되는 국가 대표를 말하는데, 그의 지위와 권리는 국제법과 국제관행 및 주재국법에 의해 규정되며, 본국으로 소환되는 경우에 그의 외교활동은 정지된다.

북한의 헌법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주석이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07조 제6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6.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헌법 제120조 제10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국가의 명의로 대외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하는 국가 대표. 외교대표의 지위와 그의 권리 및 임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및 외교대표를 파견하는 나라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외교대표의 직급은 일반적으로 대사, 공사, 대리대사, 대리공사로 나누어지고, 우리나라 외교대표의 직급에는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가 있다. 우리나라의 외교대표의 임무는 ①우리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관철하여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주재국 정부와 여러가지 형태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주재국과 우리나라간의 공식적 관계를 확보하며, ②철저한 반제반미적 입장을 견지하며 미제를 남조선으로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입장을 주재국 인민에게 인식시키고 지지성원을 받으며,</p>

북한용례	<p>③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주재국의 정세를 연구하고 그 자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하며, ④우리나라 국민들과 법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령사사업을 지도하며, ⑤다른 나라 외교대표들과 필요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외교대표의 활동은 본국에 소환되는 경우에 정지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외국에 가서 자기나라의 이름으로 일정한 대외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군.</p>
------	--

○ 주 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에 파견되어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107조제6호 :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일정한 사업상 임무를 받고 어떤 곳이나 지역에 파견되어 머물러 있는 것.</p>

○ 사 신

국가 또는 국가수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파견되는 외교대표를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주석이 다른나라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107조제7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나 국가수반으로부터 전권을 맡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외교대표.</p>

○ 소환장

국가기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자를 불러들이는 조치를 「소환」이라고 하며, 소환을 하는 때에 소환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건을 「소환장」이라고 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107조제7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p> <p>민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소의 부름을 받은 증인은 소환장에 지적된 곳으로 제때에 와야 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상부에서 소환하는 내용을 적은 물건.</p>

○ 명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업무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내리는 지시를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주석과 국방위원회가 명령을 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10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p> <p>헌법 제11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아래기관이나 아래일군 또는 해당한 대상에게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내리는 지시.</p>

○ 국가주권

인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권활동을 직접 실현하는 국가기관의 주권으로서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말한다고 한다.

북한의 헌법은 주권은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고,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며, 최고인민회의를 최고주권기관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하여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중앙인민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11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헌법 제117조 :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①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②정권실현의 한 형식으로서의 주권. 국가주권의 계급적 성격과 사명은 주권을 어느 계급이 틀어쥐고 있으며 주권이 어느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김일성저작선집(32)(조선로동당출판사, 527면) : 국가주권은 정치적 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p>

○ 일체무력

북한군에 대한 군작전·군인사·군사칭호수여·전시상태선포·동원령선포 등의 군령·군정권을 포함한 군통수권을 의미한다.

북한의 1972년 헌법은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국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인민위원회 수위이며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주석이 국가의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 12월에 김정일이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어 헌법조항의 모순이 야기되

었고, 이에 1992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를 독립시켜 주석의 권한중 일체 무력의 지휘·통솔권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로 이양하여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11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	--

○ 국방건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수사업을 발전시키는 일 등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114조제1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외래 침략자들의 침해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며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는 등의 일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 군사간부

군의 중요인사를 의미하는데, 북한의 군사칭호(군계급)는 21종에 이르고, 「중좌」이상의 군관(우리나라 영관급에 해당)을 고급군관이라고 칭함에 비추어 「중좌」이상의 군관·장령(우리나라 장성급에 해당)·차수·원수·대원수를 중요 군사간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헌법은 이러한 중요 군사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에 대하여 국방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114조제2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군대에서 군사관계분야의 간부.

○ 군사칭호

북한군의 위계(우리나라의 계급에 해당)를 말하는데, 1952년 12월31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발표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북한은 1992년 4월 13일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 공동명의로 김일성에게 북한군 최고계급으로서 「대원수」칭호를 수여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스탈린」이후 유일하게 「대원수」칭호를 받은 인물로 기록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군사칭호는 21종에 이르게 되는데, 하전사로서 전사·상등병·하사·중사·상사·특무상사가 있고, 군관으로서 소위·중위·상위·대위·소좌·중좌·상좌·대좌가 있으며(특히, 「중좌」이상을 「고급군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장령으로서 소장·중장·상장·대장이 있고, 원수급으로서 차수·원수·대원수가 있다.

북한의 헌법은 군사칭호의 제정과 장령이상의 군사칭호 수여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114조 제3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군인들의 자격과 상하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하는 칭호. 군인은 군사복무조례에 따라 군사칭호를 받는다. 군사칭호는 견장, 령장, 수장에 표시한다. 군사칭호에서 상하관계의 표식은 일반적으로 군관, 장령, 원수급에 한해서는 별로 나타내며 병사 및 하사관들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표식으로 나타낸다.

○ 장 령

북한의 21종의 군사칭호(계급) 가운데 소장·중장·상장·대장을 통털어 장령이라고 한다.

관계법조	헌법 제114조제3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소장으로부터 대장까지의 군사칭호를 통털어 이르는 말. 일부나라들에서는 준장까지 포괄하기도 한다.

○ 전시상태

국가간에 선전포고 또는 직접적인 군사행동이 취해짐으로써 형성되는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이러한 전시상태의 선포를 국방위원회가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	헌법 제114조제4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선전포고를 하거나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들 사이의 전쟁관계 또는 전쟁관계에 있는 상태. 전쟁이 일어난 것과 관련하여 국가가 대내외 분야에서 일련의 긴급조치와 비상대책을 세운 상태.

○ 동원령

국가간의 선전포고 또는 직접적인 군사행동의 발발로 인하여 형성된 전시상태에서 일정한 사람 또는 물자 등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가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114조제4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주로 전시상태에서 일정한 사람이나 물자 등을 동원하기 위한 명령.

○ 서기장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국가기관과 조직에서 주로 내부사업을 맡으며, 행정사무를 총괄 집행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119조 :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일부기관과 조직들에서 주로 내부사업을 맡고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직위 또는 그 사람.

○ 지방인민회의

북한의 지방주권기관으로서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임기 4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도(직할시)인민회의·시(구역)인민회의·군인민회의가 있다.

북한의 헌법은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으로서 지방인민경제발전과 그 집행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승인하고, 지방예산과 그 집행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승인하며, 해당지역의 국가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과 해당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해당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고, 해당 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

다고 규정하고, 회의는 1년에 1~2차 소집되는 정기회의와 해당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전원의 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구성되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2/3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장을 선거하고, 결정을 발하며 결정의 공포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20조제2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p> <p>헌법 제133조 :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p> <p>헌법 제134조 :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p> <p>헌법 제135조 :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p> <p>헌법 제136조 :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헌법 제137조 :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p> <p>헌법 제138조 :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해당 지역 인민들이 직접 선거한 참된 인민의 대표들인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지방 행정구역단위로 조직되는 우리나라의 지방주권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들이 있다.</p>

○ 사법(기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해석·적용하며, 집행하는 재판기관을 「사법기관」이라고 하며, 그러한 사법기관의 권력적 활동을 「사법」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사법기관의 종류로서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120조제3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3. 사법, 검찰기관 사업을 지도한다.</p> <p>헌법 제152조 :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p> <p>헌법 제153조 :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p> <p>헌법 제154조 :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p> <p>헌법 제155조 :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중사업을 한다.</p> <p>헌법 제156조 :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p> <p>헌법 제157조 :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헌법 제158조 :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p> <p>헌법 제159조 :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p>
-----------------------	--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60조 : 중양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양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중양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p> <p>헌법 제161조 : 중양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계급적 독재실현에 복무하는 법을 해석 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들의 권력적 활동. 사법의 계급적 본질은 주권을 장악한 계급과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르게 결정된다. 사회주의 사법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사법의 중요한 사명은 혁명력량과 혁명의 전취물들을 적들의 침해로부터 튼튼히 수호하며 당 정책을 법적으로 옹호관철하는 것이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해석 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의 권력활동.</p> <p>김일성저작선집(2)(조선로동당출판사, 145면) : 법을 집행하는데는 반드시 높은 정치적 사상성이 요구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립장과 사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법이 바로 집행될 수도 있고 잘못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 법은 전적으로 당의 정책을 실현하며 당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의 령도를 받지 않고서는 법을 옳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p>

○ 검찰(기관)

검찰의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는 기관들을 총칭하여 검찰기관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검찰기관(검찰소)의 종류로서 중앙검찰소·도(직할시)검찰소·시(구역)검찰소·군검찰소·특별검찰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검찰기관은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에 책임을 지는 중앙검찰소(중앙검찰소소장의 임기는 5년)의 통일적인 지휘하에 이른바 「사회주의적 준법정신」의 유일성을 확립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찰기관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의 준범여부와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범죄자 등의 적발 및 처벌을 통하여 북한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생명·재산의 보호를 임무를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20조 제3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3. 사법, 검찰기관 사업을 지도한다.</p> <p>헌법 제162조 :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p> <p>헌법 제163조 :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p> <p>헌법 제164조 :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헌법 제165조 :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p> <p>헌법 제166조 :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중앙검찰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p> <p>헌법 제167조 :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검찰의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통털어 이르는 말. 중앙검찰소, 시(도)검찰소, 군검찰소 등이 여기에 속한다.</p>

○ 정 지

하급기관의 결정·집행이 상급기관의 결정·지시에 위반한 경우에 하급기관의 특정한 권리·권한 등의 행사를 중단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에 대하여 중앙인민위원회가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120조제5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떤 권리나 권한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금하여 막는 것.</p>

○ 행정적 집행기관

국가주권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정무원이며, 정무원의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은 정무원의 위원회와 부이고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지방행정경제위원회이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120조제6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6.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헌법 제124조 :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행정기관을 국가주권의 집행기관으로서 이르는 말. 주권기관의 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하며 그의 지도밑에 사업하는 정무원과 위원회, 부, 각급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가 여기에 속한다.</p>

○ 성 원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의 “구성원”과 동일한 의미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20조제7호·제8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p>

○ 훈장, 메달

공훈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는 국가표창의 하나로서 훈장과 메달이 있는데, 공로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종류와 급수의 훈장·메달이 수여되며,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가 정령으로 수여한다. 이러한 훈장과 메달에 대하여는 증명서사본교부와 패용절차에 대한 정령이 개별법으로 존재하고, 북한의 최고훈장은 1972년 3월 20일에 제정된 「김일성훈장」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20조제11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당의 유일사상체제로 확고히 무장하고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투쟁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많은 공적과 위훈을 세운 사람들에게 김일성의 배려에 의하여 수여하는 공화국의 국가 표창의 한 형태. 공로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종류와 급수의 훈장, 메달이 수여된다. 김일성훈장 1.2급, 군수공업복무영예훈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훈장, 조선인민군 창건20주년기념훈장 등이 있으며 메달에는 군공메달, 공로메달, 중국제병전쟁기념메달, 중국제병전쟁참전기념메달 등이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국가 표창의 한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훈을 세운 개별적인 사람과 집단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 정령으로 수여한다.</p>
-------------	---

○ 대사권

북한의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가 국가적 경축일 등에 유죄판결을 받은 일정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형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게 하거나 가벼운 형벌로 전환시켜주는 제도로서, 주석이 특정인에게 행하는 「특사권」과 구별된다.

<p>관계법조</p>	<p>헌법 제120조제12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2. 대사권을 행사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최고주권기관의 권한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 형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벗겨주는 제도. 대사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여러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점에서 개별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사와 구별된다. 대사의 실시는 전체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기초한 인민정권의 위력의 시위로 되며 우리당 사법정책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것으로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및 민족적 명절이나 기타 역사적 사변을 계기로 중앙인민위원회가 대사를 실시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커다란 국가적 경사나 사변이 있을 때 최고주권기관이 일정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 벗겨주거나 보다 가벼운 다른 형벌로 바꾸어 주는 것. 우리나라에서 대사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실시한다.</p>

○ 행정구역

국가의 지역적인 행정체계에 따라 구분된 지역적 단위를 말하는데, 북한의 헌법은 「행정구역」의 창설과 개칭을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해방이후 수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는데, 그 주된 목적은 중앙집권제에 의한 사회주의적 통제의 강화(기존 4단계 행정구역체계를 3단계로 개편), 남북협상을 통한 남북한총선거의 지역대표제의 대비(도와 군의 수를 대폭 증설), 김일성부자 및 가계의 우상화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20조제13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3.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국가의 지역적 행정체계에 따라 구분된 지역적 단위. 국가정권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사업부문별 기관체계와 지역적 행정체계를 수립하며 그에 적응하여 전국을 일정한 지역적 단위들로 구분한다. 국가의 지역적 행정체계수립과 지역적 단위구분의 원칙은 국가의 계급적 본질과 정권실현의 방법에 따라 각이하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설정의 원칙은 인민정권의 지도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중앙의 통일적 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결합하며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적 발전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체계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로 구분되고 있다. 도는 중앙과 군을 연결시키는 행정구역이다. 도의 행정구역은 시, 군으로 나뉘며, 군의 행정구역은 리(읍, 로동자구, 동)로 나뉜다. 행정구역체계에서 군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의 지역적인 행정체계에 따라 구분된 지역적 단위 또는 그 구획. 우리나라에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등)가 있다.</p> <p>김일성저작선집(4)(조선로동당출판사, 62면) :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은 실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농촌과 로동자구를 직접지도하는 당과 행정의 말단 지도단위이다. 군은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 단위로 되고 있다.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거점이다.</p>

○ 정무원 직속기관

정무원에 직속한 기관으로서 부문별 집행기관인 정무원이 위원회·부로 승격되지 못한 기관을 의미한다. 북한의 정무원은 종전에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인 내각이었으나 1972년 헌법의 개정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어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의 위치에 불과하게 되었는데, 수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1992년 10월) 15개 위원회, 25개 부, 1개 은행, 2개 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무원 직속기관으로는 과학원·중앙은행·중앙통계국·사무국 등의 1원·1은행·2국을 말한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1267조제1호·제2호 :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북한용례	옷단위에 직접적으로 속해있는 기관.

○ 행정경제기관(=지방행정경제위원회)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북한헌법상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시(구역)행정경제위원회·군행정경제위원회를 말한다.

북한의 헌법은 정무원이 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면서 자신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정무원의 결정·지시를 집행하여 자신의 결정과 지시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126조제1호·제9호 :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9. 정무원 결,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147조 :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 기관이다.</p> <p>헌법 제148조 :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p> <p>헌법 제149조 :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p>헌법 제150조 :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헌법 제151조 :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상급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p>
--------------	---

○ 정무원 전원회의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제기되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정무원 성원전원, 즉 정무원 총리 · 부총리 · 위원장 · 부장들과 그 밖의 성원들로 모여서 하는 회의를 말한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의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들로 구성한다.</p>
--------------	--

관계법조항	<p>헌법 제128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소속된 성원전체가 모여서 하게 되어있는 회의의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군급 이상의 당 및 근로단체지도기관과 정무원 등에 전원회의가 있다. 당 및 근로단체 전원회의는 대회와 대회, 대표회와 대표회 사이에서 최고지도 기관으로 된다(예:도당 전원회의, 정무원 전원회의).</p>

○ 정무원 상무회의

정무원 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주요성원들, 즉 정무원총리·부총리·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성원들이 모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127조 :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들로 구성한다.</p> <p>헌법 제128조 :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p>
-------	---

○ 지방주권기관

지역적 범위에서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시(구역)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군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가 해당한다.

북한의 헌법은 주권기관으로서 최고주권기관이며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규정함과 아울러 지방주권기관으로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를 규정하고,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으로 지방인민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33조 :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p> <p>헌법 제134조 :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p> <p>헌법 제135조 :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p> <p>헌법 제136조 :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p>헌법 제137조 :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p> <p>헌법 제138조 :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p> <p>헌법 제139조 :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p> <p>헌법 제140조 :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p> <p>헌법 제141조 :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p> <p>헌법 제142조 :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p>
----------------------	---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43조 :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헌법 제144조 :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헌법 제145조 :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p> <p>헌법 제146조 :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위원회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지방적 범위에서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기관들. 여기에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가 속한다.</p>

○ 인민참심원

형사사건·민사사건의 1심의 재판심리에 직접 참가하는 인민의 대표로서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재판소 구성원을 말한다.

북한의 헌법은 판사 1인과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재판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인민회의가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특히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민참심원제도는 1945년 11월 23일 사법포고 제4호 「재판소조직에

관한 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등록된 명부의 순에 의하여 1년에 14일 동안 각급 재판소에서 1심으로 재판하는 사건에 한하여 재판소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참심원제도를 「인민정권의 본질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며 당이 가리키는 민주주의적 인민공화국 창건의 길에서 민주기지창설을 위하여 정치적 열성과 창발성이 고도로 양양된 인민대중을 국가관리사업에 더욱 광범위하게 인입하여 그들을 나라의 각성된 주인공으로 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민참심원의 선임기관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인민회의임을 고려할 때에 참심원제도는 재판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36조 제7호 :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헌법 제154조 :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p> <p>헌법 제156조 :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재판소 성원으로서는 재판사건을 심리해결하는데 직접 참가하는 인민의 대표. 인민참심원 제도는 국가관리에 인민자신들이 직접 참가하는 형태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재판제도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인민참심원은 1심재판에서만 두사람씩 참가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제1심재판의 각종 증거들을 직접 조사 평가하여 사실의 유무를 확정하고 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2심재판이나 비상상소 등 그후의 수속은 1심재판이 법령의 요구를 지켰는가,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검토와 심리를 할 뿐이다.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부문 종업원들의 집회에서 선거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형사 및 민사사건은 심리해결하는데 직접 참가하는 인민의 대표. 재판에서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재판소성원으로 되는데 1심재판에만 참가한다. 재판의 수속과 그 진행, 재판기관들의 조직과 그 일상적 활동을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하며 재판기관사업에 인민참심원들을 참가시키며 재판장들을 선거하도록 하며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까(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71면).</p>

○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으로서 도(직할시)인민위원회·시(구역)인민위원회·군인민위원회를 말한다.

북한의 헌법은 임기 5년,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로 구성된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으로서 인민회의 소집·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과의 사업·해당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결정집행에 대한 대책수립·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의 지도·하급인민위원회사업의 지도·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 및 결정집행의 정지·인민회의 휴회중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을 규정하면서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141조 :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p> <p>헌법 제142조 :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p> <p>헌법 제143조 :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p>헌법 제144조 :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p>
-----------------------	---

관계법조항	<p>헌법 제145조 :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p> <p>헌법 제146조 :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지방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들이다.</p>

○ 폐지

기존에 효력을 가지고 있던 하급기관의 조치 또는 규범의 효력을 일정한 경우에 상급기관이 소멸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관계법조항	<p>헌법 제143조제8호 :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이미 진행하여 오는 일이나 존재해 오는 제도 풍습등을 더는 존속하지 못하게 그만두게 하거나 없애는 것.</p>

○ 행정경제사업

행정경제기관이 국가법과 행정관리규정에 따라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행정경제기관은 지방행정경제위원회로서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 · 시(구역)행정경제위원회 · 군행정경제위원회를 의미한다.

관 계 법 조 항	헌법 제149조제1호 :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행정경제기관들이 국가의 법과 행정관리규정에 따라 자기 앞에 맡겨진 과업을 조직진행하기 위한 활동.

○ 재판소

북한의 재판소는 국법상 의미의 재판소와 소송법상 의미의 재판소가 있는데, 국법상 의미의 재판소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중심으로 법률상 직접·간접으로 이들을 보좌하는 일체의 직원을 포괄한 사법행정단위의 재판소로서 국가 기관체계의 일부를 이루는 의미로서의 북한헌법 및 재판소구성법 등에서 말하는 일반적 의미의 재판소를 말하고, 소송법상 의미의 재판소는 개개 구체적 소송사건에 현실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기관의 재판소로서 판사 및 인민참심원 또는 판사들만의 합의체로서의 재판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재판소는 국법상 의미의 재판소를 말하는데, 중앙재판소·도(직할시) 재판소·인민재판소·특별재판소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특별재판소는 군사재판소(조선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조직되어 있다)와 철도재판소(철도운송부문에 조직되어 있다)를 말하는데, 특별재판소를 제외한 각급 재판소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임명하는 기관이 동일하나 특별재판소만은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임명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특색이 있다.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군사기관·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기타 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관장하고,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특별재판소의 제1심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은 중앙재판소에서 심리하며, 이 경우 인민참심원의 참여는 배제되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제2심이 최중심인 재판을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52조 :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p> <p>헌법 제153조 :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p> <p>헌법 제154조 :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p> <p>헌법 제155조 :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p> <p>헌법 제156조 :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p> <p>헌법 제157조 :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헌법 제158조 :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p> <p>헌법 제160조 :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지도를 받는다.</p> <p>헌법 제161조 :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p> <p>민사소송법 제2조 :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옹기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p>
----------------------	---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형사 및 민사사건의 심리와 해결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국가기관. 재판소는 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수령과 당을 튼튼히 보위하며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와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온갖 범죄적 및 비법적 현상으로 부터 보호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한다. 재판소 활동의 특성은 인민의 대표가 직접 재판에 참가하며 활동절차와 해결의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으며 사건심리에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가하는 데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형사 및 민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심리해결하는 국가기관.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검찰기관들은 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 집행을 감독하며 특히 우리 국가 사회제도를 해치려 하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모조리 잡아 내며 철저히 진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함께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혁명적 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40면).</p>
-------------	---

○ 군무자 회의

군무자회의는 일반적으로 각 단위부대에서 소집하는 군인총회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재판소의 하나인 군사재판소의 재판에 참가하여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인민대표인 인민참심원을 선거하는 군무자회의를 의미하므로 조선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회의를 말한다.

<p>관계법조항</p>	<p>헌법 제154조 :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군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회의.</p>

○ 종업원 회의

종업원회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관·기업소 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회의를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재판소의 하나인 철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을 선거하는 종업원회의를 의미하므로 철도운송부문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회의를 말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154조 :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일정한 기관, 기업소 등에 소속되어 일하는 성원들의 회의.

○ 공증사업

법적 의미가 있는 문서 또는 사실 등의 진실성여부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재판소가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활동사업을 말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155조제3항 :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민법 제24조 :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를 표시하는 말로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국가가 법률행위,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 또는 사실등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활동.

북한용례	<p>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나 행위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공증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리(읍, 동, 로동자구) 인민위원회가 담당 수행한다. 중요한 위임장 및 법률행위 집행문의 포기, 소재불명자의 인증,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서명의 진실 인증, 증거의 보존 등 행위는 인민재판소에서 한다. 유언, 사소한 위임장, 건물 및 선박과 관련한 계약의 인증, 문서상의 서명 및 등본의 진실성에 관한 증명 등 행위는 리(읍, 동, 로동자구)인민위원회에서 한다. 공증은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적 법질서를 공고히 하며 근로자들의 법적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복무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문건이나 사실, 행위들을 국가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활동.</p> <p>계약서 사본, 위임장, 명판의 진실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증은 인민재판소가 한다.</p>
------	--

○ 피소자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공소제기전에 수사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혐의자 및 예심단계에 있는 피심자와 구별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피소자에 대하여 재판준비절차에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3일 전에 기소장 등본을 피소자에게 송부하며 재판심리날짜를 통보해야 하고, 피소자는 재판조서상 누락된 부분이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어서 정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정당할 때에는 판정으로 조서를 고치도록 하고, 피소자는 재판소 구성원중 배제의 사유가 있는 자가 있을 때에 배제신청을 할 수 있고,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심리가 끝나기 전에 증인이 퇴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심리가 끝난 후 재판소 심리에 더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심리 종료 후 변론을 하고 최종진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소자의 진술은 피소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한 증거로 될 수 있으며 피소자의 신체는 검진의 대상이 되고, 피소자는 소환·구속·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 대상이므로 적법한 소환에 응해야 하며, 피소자가 재판심리에 참가할 것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회피한 경우에는 구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공판기일변경신청권, 진술거부권, 변론의 분리·병합·재개신청권, 보석청구권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57조 :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거나 기타의 범죄를 범한 자로서 공판에 회부되며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 자. 공판준비위원회에서 재판소가 기소된 사건을 공판에 넘기기로 결정하면 피심자는 피소자로 된다. 우리나라에서 피소자는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소송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재판원, 립회서기, 검사, 감정인, 통역에 대한 배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②공판심리의 전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③공판심리에서 심의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④새로운 증인, 감정인을 요구하며 각종 증거의 수집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⑤사실심리과정에 증인, 감정인 및 다른 피소자에게 질문을 할 권리, ⑥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자기가 변호할 권리. 피소자에게 부여된 이러한 권리는 사건의 정확하고도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된 범죄자.</p>

○ 변 호

피소자가 소추에 대하여 자신의 일정한 이익은 지키거나 유리하도록 주장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협력하는 소송활동으로서 헌법상의 권리이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피소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 피소자의 근친자, 소속단체의 대표자,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는 자는 누구라도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공판기일변경신청권, 진술거부권, 변론의 분리·병합·재개신청권, 보석청구권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p>관계법 조항</p>	<p>헌법 제157조 :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건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서 소추에 대한 의견을 말하며 필요한 증거를 내놓음으로써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데 협력하는 소송활동. 변호는 공화국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리의 하나이다. 변호는 재판소의 프로레타리아 독재기능의 수행을 협력하는 것으로서 범죄자의 죄행을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정확하게 확정하는 임무와 통일되어 있다. 변호는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예심에서도 할 수 있다. 예심에서의 변호는 피심자 자신이 한다. 공판에서는 피소자와 그의 변호인이 변호를 맡아 한다. 변호인은 피소자 또는 그의 근친 기타 개별적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다(사선 변호인). 사선변호인을 붙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변호사회를 통하여 변호인을 붙여준다(공선 변호인). 검사가 참가할 경우 피소자가 신체상 지장으로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할 때에는 공판심리에 반드시 변호인을 참가시켜야 한다(의무적 변호). 피소자의 변호권이 보장되지 못하여 공정한 판결의 선고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남을 도와 당사자의 일정한 이익을 지키거나 그에게 유리하도록 주장하고 옹호하거나 변명하는 것. 예심 또는 재판에서 범죄자나 변호인이 범죄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필요한 증거를 내놓음으로써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보장하는 소송행위. 우리나라에서 변호는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p>

○ 검찰소(검찰사업)

기관·기업소·단체 및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감시 통제하는 국가기관을 말하는데, 중앙검찰소·도(직할시)검찰소·시(구역)검찰소·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있다. 이러한 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와 주석, 중앙인민위원회에 책임을 지는 중앙검찰소의 통일적인 지휘하에 이른바 「사회주의적 준법정신」의 유일성을 확립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임기 5년의 중앙검찰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해임하고, 중앙검찰소만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소

의 임무로서는 기관 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고, 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상급기관의 결정·지시등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하며,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62조 :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p> <p>헌법 제163조 :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p> <p>헌법 제164조 :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헌법 제165조 :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p>헌법 제166조 :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중앙검찰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p> <p>헌법 제167조 :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 및 공민들의 국가법규 집행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기본임무로 하는 국가기관. 검찰소의 기본기능은 당의 령도 밑에 감시와 통제의 방법으로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표현한 국가법령이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 및 공민들속에서 정확히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p>

<p>북한용례</p>	<p>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검찰기관들은 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의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 집행을 감독하며 특히 우리 국가 사회제도를 해치려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모조리 잡아내며 철저히 진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혁명적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40면).</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바로 집행하는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기관.</p>
-------------	--

○ 검 사

검찰기관(검찰소)의 구성원으로서 수사권·공소권·국가법령의 준수여부와 재판과정 등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북한의 검사는 중앙검찰소 소장을 제외하고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하며 검사로 임명되는데는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북한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으로서 피심자심문, 기소장작성 등의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예심원에게 위임하고 검사는 예심원을 통제하는 면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하나의 특색을 이루고 있으며, 민사소송진행에도 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매우 대조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64조 :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는 검찰기관 일군. 사회주의 나라에서 검사는 계급적 원수들의 반혁명적 책동과 온갖 범죄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며 국가, 사회 재산과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전조선에선 당의 정치적 보위자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검사는 착취계급의 리익을 보호하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부르주아독재의 가장 악랄한 집행자의 하나이다.</p>

○ 범죄자/범위반자

북한의 법규범을 위반하여 주권·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침해한 행위자를 「범위반자」라고 하고, 그 가운데 북한의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행한 자를 「범죄자」라고 한다.

북한의 형법은 「범죄」를 “국가주권 및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대중에게 위협한 행위인 동시에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발전 및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회주의법을 어기는 위법성있는 행위”로 이해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자」로 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자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책임능력 있는 자연인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형법은 14세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14세이상이 된다고 하여도 자기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별통제할 수 없는 형사무능력자가 사회적 위험행위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보지 않으며 의료처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자연인만이 범죄의 주체로 될 수 있으므로 자연인에는 조선공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며 기업체·기관·협동조합 단체등과 같은 법인은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인이 노동법규를 위반하여도 자연인만이 책임을 지고, 오작품제조의 경우에도 그 기업자체가 아니라 그기업의 책임자중 행정·기술직위에 있는 자로서 죄책있는 자들이 형사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65조 제3호 :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p> <p>형법 제4조 : 국가는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하여 매 범죄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죄를 저지른 자.</p>

2. 其他

○ 돕는다(돕다)

타인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원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북한 헌법 제94조 「부
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의 “돕는다”는 “보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계법 조항	헌법 제94조 :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남의 일을 잘되도록 하기 위하여 거들거나 그 밖에 무엇이나 보탬이 되 는 일을 하다. 뒤에서 받들어주거나 보살피 주다.

○ 내오다

기관·조직체·부서 같은 것을 새로이 조직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 조항	헌법 제120조제6호 :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6.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헌법 제126조제2호: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 (기관, 조직체, 부서 같은 것을) 새로 조직하거나 꾸려 놓다.

○ 계급적 원수

계급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원수」란 용어는 군의 최고 사령관직인 원수(元首)와 구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155조제2호 :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계급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원수.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반동관료배들과 지주, 예속자본가들은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원수이다.

○ 국 장

국가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공식적 상징물을 말하는데, 1992년 헌법에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삽입한 의도는 김일성부자의 적통의식을 명문화하여 상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계법조항	헌법 제16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뿔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의 사명을 체현하고 있는 공식적 표창. 국장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의의로 하여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나 법령으로 규정된다.

第4章

結論：南北韓憲法用語의 體系化 檢討

第4章 結 論 : 南北韓憲法用語의 體系化 檢討

I. 北韓憲法研究의 統一指向性

북한헌법연구에 있어서 북한의 헌법사와 사회주의 헌법이론 및 주체사상론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잖은 성과가 있었으나 통일헌법의 구심력으로 향할 수 있는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북한헌법은 단순한 비교헌법적 연구대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헌법과 독일헌법연구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와 이론들을 착상하듯이 북한헌법에 대한 비교연구 내지 지역연구 또한 특정한 목적지향성이 있어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북한헌법연구는 향후 통일한국을 구상할 수 있는 통일헌법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할 때 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통일헌법에의 구심력으로 향할 수 없는 북한헌법연구의 양산은 오히려 북한헌법의 비교법적 연구의 존재가치마저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수정된 최근의 북한헌법이 공개된 이래로 아직도 헌법개정에 따른 정상적인 부속법령을 갖추지 못한 현행 북한헌법의 현실⁴⁴⁾ 때문에 최근의 북한헌법연구에는 시간

44)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부문에 관한 한 현행 북한헌법 제16조, 제17조, 제37조 등에서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보장,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활동원칙화, 공화국 기관·기업소·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 등과의 기업경영과 합작을 장려'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그 하위 내지 부속법령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92.10.5), 합작법(92.10.5), 외국인기업법(92.10.5), 합영법시행세칙(92.10.16),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93.1.31), 외화관리법(93.1.31), 자유경제무역지대법(93.1.31), 외국인투자은행법(93.11.24),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93.11.29),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93.12.30), 세관법(93.12), 합영법(94.1.20),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94.1.21), 외국인투자기업

및 상황상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 이에 현행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논문⁴⁵⁾ 또한 몇편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북한의 헌법사와 사회주의헌법이론 및 주체사상론적 접근이라는 범주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북한헌법용어를 분석하는 작업은 북한법의 실체를 규명하는 매우 실질적인 접근방법으로서 북한헌법용어의 표현에 있어서 통합적요소를 찾는 작업을 본격화 할 때, 통일지향성을 갖는 북한헌법연구 범위의 확정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헌법용어의 분석은 언어이질적인 차원의 용어통합 경우에 한하여 그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을 뿐, 남북한 통일가치지향의 원리와 구조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북한헌법용어의 체계화를 시도하기 위하여는 또 다른 시도, 즉 남북한헌법의 공통구성원리를 규명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및외국인세금법(94.2.21),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94.3.27), 자유무역항규정(94.4.28) 등을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45) 대표적으로 김영수, “북한사회주의헌법의 주요개정내용과 그 특성”, 현대공법의 제문제, 사영사, 1993, 102~134면; 장명봉, “북한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북한연구 1993년 봄호 제4권 1호, 대륙연구소, 102~125면; 전광석, “북한헌법상 통치조직의 변천-1992년 개정북한헌법상의 통치조직”, 북한연구, 1993년 여름호 제4권 2호, 대륙연구소, 106~121면; 전인영, “헌법개정의 배경과 내용”, 북한의 개정헌법 연구,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1~46면; 김동환, “개정헌법의 구조와 특징”, 북한의 개정헌법 연구,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47~80면; 최영택, “개정헌법과 법문화”, 북한의 개정헌법 연구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81~126면; 장석권, “북한헌법의 성립배경과 그 특성”, 한국헌법의 뿌리, 한국헌법학회 학술논문발표 제1집, 1994, 12; 김승조, “북한의 92년 헌법과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이론에 관한 비교분석의 연구”, 통일원, 1993 등을 지적할 수 있다.

II. 北韓憲法에서의 立憲性

북한헌법에서 남북한의 통일가치지향의 원리와 구조를 직접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통일가치지향의 원리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헌법규범 내지 헌법해석론을 확대·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나, 이는 북한헌법연구에서 비롯된 성과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북한헌법연구의 새로운 시도가 요청되는데, 북한헌법과는 이질적이지만 통일가치지향의 기준으로서 적합한 헌법원리를 도입·적용하는 북한헌법연구의 외재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의 본질적 구성원리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입헌주의(立憲主義)'를 현행 북한헌법의 규범력 해석에 적용하여 북한헌법의 원리와 구조가 '통일헌법으로의 정향성(定向性)'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헌법의 입헌성분석은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헌법의 근본원칙·공민권·국가기구 등에 입헌주의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헌법연구의 기존 성과인 북한의 헌법사와 사회주의 헌법이론 및 주체사상론적 접근 이외의 방법론으로서 향후 통일헌법안 논의에 일조가 되리라 본다.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은 극단적으로 부인될 수 있지만 그 근거를 파악하는 작업은 북한헌법연구의 통일헌법으로서 정향성을 추구하는 의미를 갖을 것이며 동시에 북한헌법용어분석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측면이다.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을 논의할 때 입헌주의에 대한 광의의 개념규정은 필수적이다. 입헌주의의 개념을 좁게 정의하여 입헌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자유주의와 다수결원칙 등을 포함시킬 경우,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 논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입헌주의의 개념은 정치체제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의 확립된 헌법과 법에 의하여 통치하는 것을 요구하는 원리로서 정의내려야 할 것이다.⁴⁶⁾

46) 북한헌법에서 입헌주의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인 기본권보장과 권력의 분립

1. 北韓憲法の 根本原則과 立憲性

북한헌법은 제1장 정치·제2장 경제·제3장 문화·제4장 국방 등에서 61개조문에 걸쳐 근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근본원칙들은 인민주권의 원리·노동당의 권력독점주의·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리·사회주의 소유형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인민주권의 권리와 노동당의 헌법상 지위는 입헌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근본원칙에서의 입헌성 여부를 검토한다.

①북한헌법 제4조 전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와 제7조 후단의 “……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인민주권주의와 인민소환제를 천명하고 있다. 입헌주의를 지나치게 협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인민주권을 시민계급에 의하여 실현된 국민주권의 원리와 엄격히 구분하여 인민주권주의를 반입헌주의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개념은 군주주권(君主主權)과 대비하여 볼 때 그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는 것이지, 인민주권 개념자체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사회주의적 사회발전단계를 거쳐 정립된 원리로 보거나 국민주권에서의 국민대표원리를 유산자계급에게 실질적으로 주권(主權)이 전속되는 것으로 보는 태도는 지나치게 편협하다. 국민주권이나 인민주권이라는 개념자체는 입헌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민의 범위를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 등 기타 근로인민이라는 무산계급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현행 북한헌법의 사회주의적 개념정의가 입헌성의 결여를 초래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치주의의 원리를 소상히 분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특히, 법치주의원리의 분석부문은 헌법정신의 구체적 구현으로서 부속법령은 물론 북한의 법생활 내지 법의식까지 파악하여야 하므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현행 헌법전의 근본원칙·공민권·국가기구 가운데 주요 부분을 채택하여 그 입헌성 여부를 검토·분석하는데 그친다.

②북한헌법의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당의 초헌법적 지위와 당규약 및 교시의 최고규범성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을 희박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복수정당제가 보장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도 정당의 권력통합현상⁴⁷⁾으로 말미암아 권력제한이라는 입헌주의의 본질적 요소의 위기상황을 가져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북한헌법의 정당관련조항은 이를 아예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항은 노동당의 권력집중기능 외에 당규약의 초헌법성을 인정하여 입헌주의의 본질적 요소중의 하나인 법치주의의 원리, 즉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원천적으로 실현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 공산당 내지 노동당의 지위와 역할의 대체적인 특징이지만 결국 체제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참고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사회주의국가군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은 세계사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정당체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경우 사회주의정당이 그 본래의 역할과는 상반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Marx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스스로 독자적인 정당을 조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계급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주장⁴⁸⁾은 사회주의정당의 속성과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회주의정당은 공산사회를 건설하기까지의 전위부대로서 프롤레타리아트 일당독재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본래 의미의 정당과는 전혀 상이하다. 정당이란 대체로 동일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체로 간주되어 이원적 사회조직에 입

47) 이는 집권여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하여 고전적 의미의 삼권분립 제도가 구조적으로 변질되어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오늘날 행정부에 대한 비판 내지 견제는 의회보다 야당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정당의 지나친 권력구조에의 편입현상을 비판하는 것이다.

48)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Oxford: Oxford Univ. Press, 1978) Vol. 1; 박상철 역, 콜라코프스키의 맑시즘(I), 훈겨레 도서출판, 1989, 166면.

각하고 있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복수정당제는 필수 불가결하다. 사회주의국가의 정당은 로동계급이 직접적으로 당면한 목적과 이익의 달성을 위해서 투쟁함을 철칙으로 하고⁴⁹⁾ 공산당이라는 단일정당제는 이들 국가에서 대원칙이며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국가권력을 위한 권력투쟁이 아닌 다만 사회의 정치적 조직의 한 분지로서만 그 존재가 인정되는 위성정당(Satellitenpartei)만이 있을 뿐이다. 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⁵⁰⁾ 제6조의 “소연방공산당은 소비에트사회의 지도적·교도적 세력이며 소비에트사회의 정치체제 및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의 핵심이다”라는 규정이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⁵¹⁾의 전문에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현 단계에서 베트남공산당의 노선을 제도화한 헌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잘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1992년 4월 9일의 개정헌법 제11조(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

사회주의국가군의 정당은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정하에서 군주주권에 대한 대항이데올로기로서의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민주제의 현대적 실현형태와는 거리가 멀어 본래 의미의 정당과는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1987년에 개정된 헝가리공화국 헌법 제3조제1항과 제3항의 전단에서, “정당은 국가기관을 지도하는 권리를 갖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헌법과 합헌적인 법규의 준수를 전제로 정당의 자유로운 결성과 활동만 승인함으로써⁵²⁾ 구헝가리인민공화국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입헌적 태도를 보인 바 있는데, 이는 향후 북한 헌법 제11조의 운명을 예견하게 한다.

49) Marx-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in Marx-Engels, I, Studiaausgabe, I, S.86.

50) 1988년 12월 1일 공포헌법.

51) 1980년 12월 18일 공포헌법.

52) ハンガリー- 共和國憲法, 法律時報 第62卷3號, 1990.3, 92頁.

2. 北韓憲法の 公民權과 立憲性

입헌주의의 구성요소로서의 기본권보장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모든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보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개인적 인권보장의 한계를 정할 때도 반드시 명확한 기준과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그리고 기본권의 보장은 헌법규범의 선언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권력구조의 민주화와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보장기관의 존재 그리고 정치권(政治權)의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권력의 민주화없는 기본권의 보장은 자칫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을 장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하여 입헌주의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관한 한 북한헌법 제5장(제62조 내지 제86조)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반입헌주의적 요소가 다분하다.

①제80조 내지 제86조는 국민의 의무로서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의 수호,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준수, 국민의 영예와 존엄의 고수, 사회와 인민에의 봉사기풍 제고, 노동의무의 성실·엄격한 준수, 국가 및 공동재산의 보호, 국가안전을 위한 투쟁, 조국보위의 의무, 국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의 과다부과는 국민의 기본권리보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②제63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단 및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보장간의 조화에 공평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집단주의원칙은 국가사회와 개인이익의 근본적인 일치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1961년 10월 소련공산당 강령 가운데 공산주의 건설자의 도덕규범 제5조의 ‘각인은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각인을 위하여’의 내용에서 유래⁵³⁾한 것으로서 전체주의(全體主義)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

으며 반입헌주의적 요소로 간주된다.

③기본권보장은 권력의 민주화에서 현실적으로 보장되는데, 북한헌법의 국가기구(제6장)와 제도는 이에 반하는 내용이 많으며 이외에도 노동당의 초헌법적 지위로 인하여 권력장치의 민주화를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북한헌법이 그 규범력 여부와는 무관할지라도 제64조 내지 제79조에서 여러가지 시사받을 만한 기본권리의 내용들은 규정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본권 보장에서의 입헌성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3. 北韓憲法의 國家機構와 立憲性

헌법에서의 권력구조부문은 어떠한 시대에도 존재하였으며 나라마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규범력이 상실될 때에는 또 다른 권력구조에 의하여 즉시 대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권력구조는 지나친 권력집중현상이나 기본권보장장치의 불비(不備)가 아니면 그 입헌성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게 된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가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있고, 헌법보호장치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북한헌법의 경우, 제6장의 국가기구에서 최고인민회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지방행정경제위원회·재판소와 검찰소 등의 권력구조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헌법보호장치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구에 대하여 언급이 없고, 제101조제3호에서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 현행법령의 해석권을 부여하며, 제120조제3호에서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으로서 사법사업(司法事業)을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존중되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특히, 제152조에서 재판소의 판결을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도록 명문화하여 사법적용의 이념배제적 기능에 한계를 설정하

53) 福島正夫,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 日本評論社, 1974, 44頁.

고 있다. 이와 같은 권력구조의 미분화 및 비민주성은 입헌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의 전반에 걸쳐 그 입헌성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북한헌법연구에 있어서의 입헌주의라는 북한헌법체계에는 이질적인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 여하를 검토하였다. 개략적인 분석이었지만 북한헌법 전반에 걸쳐 반입헌주의적 요소가 다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헌법연구가 통일헌법으로의 정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실정이 있어야 한다는 구상에서 비롯된 하나의 시론에 불과하지만, 북한헌법의 연구목적의 가시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헌법의 연구가 단순히 북한헌법의 역사와 사회주의의 특성을 밝히는 데 그친다면 오히려 북한헌법의 이질화를 재촉하여 평화적 통일과 헌정의 안정을 꾀하려는 북한헌법연구의 궁극적 목표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향후 북한헌법연구는 현행 남북한헌법이 지향하는 공통원리를 찾는 데 부단한 노력을 쏟는 것에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Ⅲ. 統一憲法典의 展望

북한헌법용어의 특수성과 고유성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양헌법전에서 법률용어의 통합적인 요소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헌법연구에 있어서 '입헌주의'라는 북한헌법체계에서는 이질적인 우리의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헌법상에서의 입헌성여하를 검토하였지만, 북한헌법전반에 걸쳐 반입헌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함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시도와 결과가 곧 남북한 통일헌법전이란 결국 우리나라 헌법전이나 기본원리의 확대 내지는 확산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직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통일헌법안의 구상이 반드시 북한헌법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않지만, 북한헌법용어에서 통합적 요소를 찾거나 북한헌법의 반입헌주의적 부문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북한헌법연구에 있어서 북한헌법이 갖는 특성과 구조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행 북한헌법이 통일헌법으로의 정향성을 갖도록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서구중심적이고 통일외면적인 기존 헌법학의 분석틀을 벗어나 북한 헌법자체의 용어를 분석한 결과와 우리 헌법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본원리를 비롯 이질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과 북한헌법체계에 과감히 적용한 중요한 시도가 된다. 특히, 북한헌법용어분석에서 나타난 우리 헌법용어와의 이질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경우 통일시기를 전후하여 나타날 수 있는 법문화의 갈등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통합가능한 조항만큼은 최대한 존치함으로써 남·북한 헌법간의 상호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헌법전을 전망함에 있어서 통일헌법의 구상은 바람직한 통일관에 근거한 통일논의의 다양한 전개 속에서 사회경제구조와 연계된 통일정책의 도출에서 비롯되어질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통일헌법안이 없이도 생산적인 통일논의와 통일정책의 수립은

가능하지만 '왜 통일을 하고자 하는가', '통일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통일이 가능할까' 등의 원점회귀적인 우문에 통일가치추구의 현명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통일헌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필수적이다.

흔히들 통일헌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통일가치의 최고성으로 간주하고, 이에 관한 한 통일목표를 향한 최소한의 방어적 진지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기능주의적 타협도 용납되지 않게 된다. 현재 정부의 통일헌법안 구상 또한 이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기본적 가치로서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존엄성을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 의미의 외연을 무한정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주의할 대목은 통일의 기본적 가치의 담보에 대한 확신과 통일을 통하여 통일시대이전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존엄성의 확대를 보장하는 비전이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현 단계에서의 통일헌법의 논의는 특정의 통일관이나 통일정책의 반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헌법용어를 비롯한 각 분야의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실체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접근수단의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통일정책의 구체적인 구상 및 실현과 통일헌법전 마련에 있어서 유용한 전망과 비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부록 I : 大韓民國憲法과 北韓의 憲法

○ 大韓民國憲法	351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1948)	375
○ 1948年 北韓憲法의 第1·2·3·4次 改正部門	391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1962)	393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1972)	407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1992)	427

大韓民國憲法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

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외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 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

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장 정 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

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

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

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 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 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

(1948.9.8)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 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 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수운,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본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기업, 기업소, 중소기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장려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성분·신앙·거주기간

· 재산· 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군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자기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간 로동일 및 유급 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로쇠(老衰),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國費制)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국가는 모성 및 유아를 특별히 보호한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인신의 불가침을 보장 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죄악이며 엄중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회의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장 국가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국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

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들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6. 상 들
 - 1) 민족보위상
 - 2) 내무상
 - 3) 외무상
 - 4) 중공업상
 - 5) 경공업상
 - 6) 화학건설공업상
 - 7) 농업상
 - 8) 교통상
 - 9) 재정상
 - 10) 상업상
 - 11) 교육상
 - 12) 체신상
 - 13) 사법상
 - 14) 문화선전상
 - 15) 노동상
 - 16) 보건상
 - 17) 무역상
 - 18) 전기상
 - 19) 수산상

20) 무임소장

내각은 그에 직속하는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상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부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역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있어서 해답을 주어야 한다.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부문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성의 수위(首位)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

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제5장 지방주권기관

-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사업을 집행한다.
-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국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3. 사회질서의 유지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 사업의 지도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

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용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 국가예산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 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살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황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 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1948年 北韓憲法の 第1·2·3·4次 改正部門

○제1차 개정(1954년 4월 23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7차 회의에서 헌법 제37조 8항<<도·시·군·면·리구역의 신설변경>>을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변경>>으로 개정하여 면을 폐지, 그외 58조의 내각구성조항의 일부 개정.

○제2차 개정(1954년 10월 30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 회의에서 지방정권기관의 의결기관인 각급<<인민회의>>, 그 집행기관인 각급<<인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여 제5장과 이에 관련된 전 조항을 수정. 그외 제36조에서 대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개정.

○제3차 개정(1955년 3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9차 회의에서 제2차 헌법개정에 따르는 각급 지방정권기관의 권한변경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조항 및 내각구성조항의 개정. 그외 제53조의 내각권한에 대한 자구수정(지시를 명령으로)하여 개정.

○제4차 개정(1956년 11월 7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에서 제12조 1항의 선거권, 피선거권의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개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

(1962.10.18)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 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 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수운,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의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장려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18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성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군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 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무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간 로동일 및 유급 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이 로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국가는 모성 및 유아를 특별히 보호한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인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 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 의무인 동시에 최대 영예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죄악이며 엄중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인구 3만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회의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가 채택한 주요한 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입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에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명령을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된 결정 및 명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국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副相),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

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 상
2. 부수상 약간명
3. 상 들
4. 위원회 위원장 약간명

내각구성법은 따로 정한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상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부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 하는데 자기의 모든 역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

한 부문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상의 수위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구역)·군·리(읍·로동자구)에 있어서의 지방주권기관은 해당 인민회의이다.

제69조 각급 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도인민회의는 4년, 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 인민회의는 2년의 임기로 선거한다.

각급 인민회의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지방 각급 인민회의는 해당지역 내에서 법령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며 경제·사회 및 문화적 부문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며 지방예산을 채택하며 국가 및 사회재산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 및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71조 지방 각급 인민회의는 법령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결정을 채택한다.

제72조 도·시·군(구역)·리(읍·로동자구)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집행기관이며 지방의 국가행정기관이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기관의 결정·지시에 의

- 거하여 자기 관할지역 내에서 모든 국가행정사업을 수행한다.
-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해당 인민회의 및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모든 인민위원회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를 받으며 그에 복종한다.
- 제76조 상급 인민위원회는 하급 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하급 인민회의의 결정을 폐지할 수 있다.
- 제77조 상급 인민회의는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가 경과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제79조 도·시·군(구역)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 제80조 도·시·군(구역)인민위원회 부서 책임자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가 속하는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위원회의 동종 부서 및 해당 성에 복종한다.
- 제81조 각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는 자기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의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국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 제89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국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용하는가를 감시한다.
- 제92조 검찰소의 수위(首位)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 제93조 도·시·군 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 국가예산

-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 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 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 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

(1972.12.28)

제1장 정 치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1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

제12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경제

·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2장 경 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

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물질적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역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들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로동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인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

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시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고등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8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5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1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만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

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3조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 노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9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화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2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방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64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 수 없다.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67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조국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제69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돕는다.

제8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이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제9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10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 기관이다.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검찰기관 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8장 정무원

- 제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서 사업한다.
-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 제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정무원 직속기관·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11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정무원 상무회의는 정무원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2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13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4조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115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17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의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22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2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2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8조 도(직할시)·시(구역)·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29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0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3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3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3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범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 올려 검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

이 있고 그 아래 위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

(1992.4.9)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6조 균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

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의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郡)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 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

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
-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
-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책동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 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 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 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 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 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6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78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7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제81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2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제88조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

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1. 최고인민회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6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 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04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앞에 책임진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2.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
6.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0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10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3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제1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제1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제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기관 사업을 지도한다.
4.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2. 대사권을 행사한다.
 13.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 제12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제12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5절 정무원

- 제124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 제125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26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

한다.

6.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29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회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 총리는 정무원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앞에 선서를 한다.

제132조 정무원 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 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립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립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9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제1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 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제14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48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50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상급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제152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3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54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5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6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57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59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62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63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4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65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제166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중앙검찰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16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땀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는 1대2이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부록 Ⅱ :北韓憲法用語 索引

北韓憲法用語 索引

○ 가 정	251
○ 개인부업경리	164
○ 개인소유(권)	165
○ 거수가결	287
○ 거주지	223
○ 검 사	331
○ 검찰(기관)	309
○ 검찰소(검찰사업)	329
○ 견결하다	206
○ 결사의 자유	234
○ 결 정	271
○ 결 혼	250
○ 결혼등록	254
○ 경 제	179
○ 계급로선	144
○ 계급적 원수	334
○ 계급적 차이	171
○ 계급해방	82
○ 계획경제	180
○ 계획의 세부화	115
○ 계획의 일원화	115
○ 공동재산	260
○ 공민(중)	150
○ 공산주의(사회)	172
○ 공산주의적 인간	191

부록 II.北韓憲法用語 索引

○ 공장/기업소	161
○ 공증사업	328
○ 공 포	297
○ 공화국	125
○ 공화국 북반부	81
○ 관병일치	124
○ 관세정책	188
○ 교육체계	192
○ 구 속	256
○ 국 가	136
○ 국가관리(기관)	149
○ 국가기관	287
○ 국가기구	264
○ 국가사회보장	245
○ 국가사회보험	243
○ 국가소유(=전인민적 소유)(권)	158
○ 국가예산	183
○ 국가의 법(국가법)	231
○ 국가의 수반	295
○ 국가재산	260
○ 국가주권	302
○ 국가주권기관(=주권기관)	133
○ 국방건설	303
○ 국방위원회	285
○ 국 장	334
○ 국 적	221
○ 국제법	146
○ 군(郡)	202

○ 군 대	198
○ 군무자 회의	325
○ 군민일치	124
○ 군사간부	303
○ 군사규률	214
○ 군사칭호	304
○ 군중규률	123
○ 군중로선	99
○ 권 리	145
○ 권 한	296
○ 근로인민	129
○ 기술교육	192
○ 기술혁명(=공업화)/기술개조/기술혁신(운동)	109
○ 기업적 방법	205
○ 기초과학	207
○ 남녀평등권	249
○ 내오다	333
○ 농업지도체계	179
○ 농촌경리	204
○ 농촌기술혁명(=농업의 공업화)	111
○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	291
○ 대사권	313
○ 대안의 사업체계	112
○ 대외무역	185
○ 대외정책	148
○ 대의원	136
○ 대 학	208
○ 돕는다(돕다)	333

○ 동원령	305
○ 동 지	96
○ 령 도	96
○ 로동(권리와 의무)	238
○ 로동계급	140
○ 로동계급화	141
○ 로동규률	174
○ 로동능력	237
○ 로동시간	175
○ 로동조건	239
○ 로동조직	173
○ 료양소	243
○ 립법권	269
○ 망명 은 다른 나라 사람	259
○ 명 령	301
○ 무장력	213
○ 문화적 침투	118
○ 문화혁명	117
○ 민족어	212
○ 민족해방(운동)	83
○ 민주주의	177
○ 민주주의적 권리	223
○ 민주주의적 자유	224
○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130
○ 발명권	247
○ 방 조	202
○ 배 반	263
○ 벌리다	199

○ 범죄자/범위반자	332
○ 법	154
○ 법 규	290
○ 법 령	274
○ 법령의 해석	291
○ 법 안	288
○ 법 인	186
○ 변 호	328
○ 보 고	281
○ 복고주의	119
○ 부림집승	201
○ 불가침권	288
○ 사람 중심의 세계관	87
○ 사법(기관)	308
○ 사상의식	104
○ 사 신	300
○ 사회과학	207
○ 사회교육	209
○ 사회단체	230
○ 사회제도	91
○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	180
○ 사회주의 국가	125
○ 사회주의 교육학	189
○ 사회주의 법무생활	102
○ 사회주의 분배원칙	167
○ 사회주의 사회	168
○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79
○ 사회주의적 문화	116

○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154
○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220
○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189
○ 사회주의적 소유	184
○ 사회주의 제도	98
○ 사회협동단체재산	261
○ 산 원	262
○ 산전산후휴가	250
○ 3대붉은기쟁취운동	101
○ 3대혁명(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	93
○ 상무기관	268
○ 상속권	162
○ 생산수단	157
○ 서기장	306
○ 서신의 비밀	255
○ 선거받을 권리(피선거권)	226
○ 선거(원칙)	131
○ 선거자	135
○ 선거할 권리(선거권)	224
○ 성 원	312
○ 세 금	105
○ 소 환	135
○ 소환장	301
○ 수 색	258
○ 수 정	273
○ 수정안	289
○ 승 인	277
○ 신 소	236

○ 신앙의 자유	235
○ 실업	109
○ 심의	282
○ 압박	91
○ 애국렬사(가족)	218
○ 언론출판의 자유	233
○ 영예군인	219
○ 예방의학	212
○ 외교대표	299
○ 유급휴가제	240
○ 유치원	211
○ 은행	157
○ 의무교육	193
○ 의사담당구역제	194
○ 인민(대중)	84
○ 인민경제	106
○ 인민경제계획	181
○ 인민군후방가족	219
○ 인민민주주의 독재	143
○ 인민정권	94
○ 인민참심원	319
○ 인신의 불가침	254
○ 일반교육	191
○ 일체무력	302
○ 임기	270
○ 임명	278
○ 자립적 민족경제	103
○ 자연부원	201

○ 자원적 의사	202
○ 자위적 군사로선	121
○ 자유(≠자유주의)	86
○ 자주노선(=자주적 대외정책)	92
○ 자주성	89
○ 장 령	304
○ 장 성	200
○ 장학금	209
○ 재정통제	183
○ 재판소	323
○ 저작권	247
○ 적대분자	97
○ 전문학교	208
○ 전반적 무상치료제	195
○ 전시상태	305
○ 전취물	121
○ 정 견	228
○ 정 당	229
○ 정 령	296
○ 정무원	279
○ 정무원 상무회의	317
○ 정무원 직속기관	315
○ 정무원 전원회의	316
○ 정 양	242
○ 정 지	311
○ 제국주의	74
○ 제 의	278
○ 조국광복	75

○ 조국보위의무	215
○ 조국통일	78
○ 조선로동당	142
○ 조 약	283
○ 조약의 비준	284
○ 조약의 폐기	298
○ 종업원 회의	326
○ 주권(=정권)	127
○ 주 석	294
○ 주 인	90
○ 주 재	300
○ 주 체	120
○ 주체사상	88
○ 주택의 불가침	255
○ 지방인민위원회	320
○ 지방인민회의	306
○ 지방주권기관	317
○ 지 시	292
○ 집단주의	139
○ 집단주의사상	232
○ 집체적	205
○ 집회, 시위의 자유	234
○ 착 취	138
○ 창 발	204
○ 창의고안권	248
○ 창의고안자	246
○ 채 택	276
○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98

○ 청 원	236
○ 체 포	257
○ 최고인민회의	265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269
○ 최고주권기관	267
○ 축 적	206
○ 탁아소	211
○ 탐오랑비	262
○ 토 지	161
○ 특사(권)	298
○ 판 결	226
○ 평화통일	76
○ 폐 지	322
○ 피소자	327
○ 학령전	210
○ 합병기업	186
○ 합작기업	187
○ 해 방	76
○ 해 임	279
○ 행정경제기관(=지방행정경제위원회)	315
○ 행정경제사업	322
○ 행정구역	314
○ 행정적 집행기관	311
○ 혁명렬사(가족)	217
○ 혁명적 경각성	221
○ 혁명적 문화	106
○ 혁명적 문화예술	121
○ 혁명정권	85

○ 혁명투사	217
○ 혁명투쟁	73
○ 협동농장	170
○ 협동단체소유(권)	155
○ 호 상	200
○ 환경보호	196
○ 훈장, 메달	312
○ 휴식에 대한 권리	240
○ 휴 양	242
○ 휴 회	268

연구보고 95-6 北韓法律用語의 分析(I) - 憲法編

1995년 12월 25일 印刷

1995년 12월 30일 發行

發行人 白 南 辰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10,000 원

